2011년도 사업안내 영양플러스⁺

2011. 1. 14



제 1장 영양플러스사업 총괄

I. 사업 개요/1
1. 영양플러스사업이란? 1
2. 사업목표1
3. 사업진행경과 2
4. 2011년 사업 대상 보건소 및 사업 기간4
Ⅱ. 사업내용 요약/5
1. 대상자 선정방법 및 기준5
가. 대상자 선정기준 개요 5
나. 소득 기준
다. 영양위험요인 기준6
라. 보충식품비 자부담 대상 판정 및 적용 8
2. 대상자 자격 관리9
가. 대상자 등록9
나. 우선순위 적용9
다. 추가 우선순위
라. 대상자격 인정 기간
마. 대상자 졸업 및 대상자격 취소 10
3. 영양플러스 서비스 내용11
가. 영양교육 및 상담 서비스11
나. 보충식품공급13
다. 영양평가15

제 2장 영양플러스사업 세부 내용

I. 대상자 선정/18

	1. 대상자 자격기준	• 18
	가. 대상구분 기준	. 19
	나. 소득기준	. 19
	다. 영양위험기준	· 25
	2. 대상자 선정 주기 및 방법	. 33
	가. 선정주기	. 33
	나. 대상자 수	. 33
	다. 홍보 ·····	• 34
	3. 우선순위 적용	· 35
	가.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경우	· 35
	나. 우선순위의 적용	. 35
	4. 보충식품비 자부담 대상 판정	. 37
	가. 보충식품비 자부담 비율 적용대상	. 37
	나. 자부담 적용 대상자 판정	. 39
	다. 자부담 입금 방법	. 39
	라. 자부담금 입금일	. 39
	마. 자부담 금액 산정	
	바. 자부담 미납에 대한 처리	• 40
	사. 자부담 관련 기타 사항	• 40
]	Ⅱ. 대상자 관리/41	
	1. 대상자 자격 인정기간	• 41
	가. 대상자격 인정기간	
	2. 대상자 자격인정 직후 실시할 조사·교육 내용 ···································	
	3. 대상자 자격변화 관리 및 영양상태평가	
	U. TIOM MATERIAL TO A GOODINAL	-11

기) [기]] Q (AA
가. 평가내용
나. 자격재평가
다. 사업 중간평가
라. 대상자의 졸업 및 퇴록52
마. 퇴록한 대상자의 재등록
바. 타 지역으로의 연결53
4.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54
Ⅲ. 영양교육 및 상담/55
1. 영양교육 실시의 원칙55
가. 개요 55
나. 단체교육 ······ 56
다. 개별상담 58
라. 가정방문교육 59
2. 영양교육 및 상담의 내용 60
가. 영양교육 및 상담의 주요 내용60
나. 영양교육 도구 자료74
3. 타 사업 등과의 연계76
가. 의료기관에의 연계 76
나. 타 기관 및 타 사업과의 연계 76
IV. 보충식품의 공급/ <i>7</i> 8
1. 보충식품 패키지 78
가. 보충식품패키지의 종류 78
나. 보충식품패키지 적용 세부사항 79
다. 관리 영양소별 주요 급원식품 81
라. 식품별 제공량 83
마. 식품 배송 주기87

2. 식품별 관리기준
가. 조제분유(식품패키지 1, 2) ······ 88
나. 시판분말이유식(식품패키지 2) ····· 89
다. 조제분유 및 시판분말이유식 공통사항90
라. 우유 91
마. 달걀
바. 당근, 감자 및 귤93
사. 기타 식품
3. 보충식품의 검수방법
가. 보충식품의 검수주기94
나. 보충식품의 검수방법 95
4. 보충식품의 전달방법%
가. 보충식품 전달방법%
나. 보충식품 수령 및 교환
다. 위생관리를 위한 확인서 98
5. 식품공급업체의 선정 및 관리 99
가. 보충식품공급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99
나. 보충식품 공급업체 관리
6. 보충식품 관련 기타사항101
가. 예외적 적용 ····· 101
V. 예산 및 행정/103
1. 사업추진체계103
가. 사업수행기관 간의 추진체계도 103
나. 사업수행기관 및 담당업무103
2. 사업수행 보건소의 인력105
가. 전담영양사 수105
나. 전담영양사 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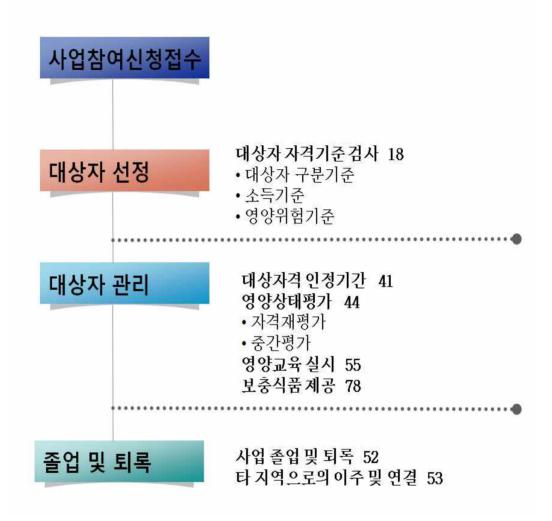
다. 근무 조건	ó
라. 전담영양사 채용 보고	7
3. 사업 수행 보건소의 역할105	8
가. 사업수행 보건소의 사업 추진 내용 10%	8
나. 기타 사업 수행 보건소의 역할109	9
다. 담당자 교육 및 훈련109	9
4. 예산 ···································	0
가. 시·도 사업비 ······· 110	0
나. 보건소 사업비11(0
다. 보건소 사업예산 관련 기타 사항	3
5. 사업보고113	3
가. 사업실적 보고(시·도) ·······113	3
나. 사업실적 보고(시·군·구) ······114	4
다. 사업 데이터 관리	5
Ⅵ. 기타사항/116	
1. 사업지침의 적용116	6
가. 사업지침의 적용시점116	6
나. 지침적용의 예외	6
2. 해당 시도 보건소의 사업지원117	7
가. 인력지원 및 기타 117	7
나. 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117	7
3. 개인정보 보호119	
기 케이지나 스키 미 키키	o.
가.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ブ
기: 개인정보 구십 및 관리 ··································	ブ

3.	대상자격유지 및 대상구분변화	123
4.	식품패키지 관련	125
5.	영양 교육	127
6.	영양 평가	128
7.	데이터 관리	130
8.	기타	130

Ⅷ. 관련서식/131

IX. 실적보고 양식/169

■ 대상자 참여 흐름도에 따른 목차



□ 2011년 영양플러스사업 주요 개정

분야		2010년도	2011년도
사업 내용	사업수행 보건소	○ 전국 16개 시·도 - <u>250개</u> 시·군·구 보건소 ※ 미참여 시·군·구: 인천 옹진군, <u>경북 봉화군</u> , 울릉군	○ 전국 16개 시·도 - <u>251개</u> 시·군·구 보건소 ※ 미참여 시·군·구: 인천 옹진군, 경북 울릉군
대상자 선정	대상자 판정	 ○ 직장가입자 중 자동차 배기량 2500cc급 이상 또는 3,000만원 이상 (구매가격)의 고급 승용・승합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 ○ 자동차가 두 대 이상인 경우 <u>합산 하지 않으며</u>, 상기한 차량 보유 여부만 확인함. <신설> ○ 기타서류: 영유아 보육료 지원확인서 혹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대상증명 ○ 자격 재평가시가 아니더라도 소득의 변화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소득 재심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가구원의 범위 - 2촌의 개념은 해당 대상자 및 배우자(영유아의 경우 해당 대상자 부모 혹은 보호자)를 기준으로 함. - 대상자나 배우자의 형제자매(또는 영유아 부모・보호자의 형제자매)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고 건강보험증에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만 가구원 수에 포함 - 대상자나 배우자의 부모(영유아의 경우 조부모)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는 가구원에서 제외 	사업 대상증명

분야		2010년도	2011년도
	대상자 판정	○ 대상자가 가정위탁을 받는 경우 - 아이가 단독가구로써 기초생활 보장수급 혹은 차상위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 현재 보호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대상자격을 얻을 수 있음 - 대상자가 가정위탁보호를 받는 영유아일 경우에는 현재 보호자의 소득으로 판정하도록 함	수급 혹은 차상위 대상으로 되어 있는
대상자 선정	영양위험 판정	○ 생화학적 검사 <신설> -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u>대상별로</u> 2회 반복 검사하는 것이 권장됨. ※ 특히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 검사 결과가 9g/dl 미만인 경우 반복	○ 생화학적 검사 - 보건소 내 검사실이 있는 경우, 검사실과 연계하여 빈혈판정을 실시할 것을 권장함 대상자의 빈혈 검사결과에 대해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야 함. ※ 빈혈측정기에 헤모글로빈 검사 결과 출력기를 연결하여 검사 결과를 출력한 후 대상자의 확인서명 후 보관 ※ 출력기가 없는 경우, 즉시 측정결과를 용지에 기록한 후 대상자의 확인서명 후 보관 -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 검사결과가 9g/dl 미만인 경우 및 기타 필요시 반복 검사 실시
		검사 실시 <신설> <신설>	○ 영양섭취상태조사 ※ 단, 유아의 경우 영양섭취상태조사에 의해 영양소의 섭취부족으로 판정 하는 것은 '2007 소아 및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에 근거한 연령별 신장, 연령별 체중, 신장별 체중 또는 BMI가 10~25th percentile에 속하는 대상자의 경우만으로 제한하여 적용 할 수 있음. ○ 타 기관 검사자료 적용 - 유아의 병력 때문에 철분제 등을 복용 하여 헤모글로빈수치가 정상으로 측정

분야		2010년도	2011년도	
대산자	영양위험 판정		되는 경우, 대상자 선정 시 한달 이내의 의료기관·보건기관의 진단서 혹은 검사 결과지를 근거로 빈혈위험요인 기준 충족여부 판정 가능	
선정	우선순위	○ 추가 우선순위 적용 가능 -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미혼모가정 등에 더 높은 우선순위 부여	○ 추가 우선순위 적용가능 -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미혼모가정, <u>3인</u> 이상 다자녀가구, 다문화가정 등에 더 높은 우선순위 부여	
	영양상태 평가	○ 사업 중간 평가 - 대상자 선정 시 빈혈이 아니었던 대상의 경우, 중간평가에서는 혈 중 헤모글로빈 검사는 생략할 수 있음.		
대상자 관리	재등록 및 이사	 ○ 퇴록한 대상자의 재등록 - 퇴록 후 영양문제가 다시 악화되면, 보건소의 여건에 따라 1회에 한해 대상자로 재등록할 수 있음. ○ <u>타 지역으로의 연결</u> - 공문을 통하여 대상자의 사업관련 서류 전송 - 이전된 지역의 사업운영규칙에 따름 	 ○ 퇴록한 대상자의 재등록 - 퇴록 후 영양문제가 다시 악화되면 해당 보건소의 대기자 접수상황 및 보건소의 여건에 따라 1회에 한해 대상자로 재등록할 수 있음. ※ 타 지역 보건소 참여경력을 포함 하여 재등록 횟수를 산정함. ○ 타 지역과의 연계 - 대상자가 타 지역으로 이사 온 후 해당 보건소에 대상자격 신청 - 해당보건소에서는 공문을 통해 이사 전 지역의 보건소에 대상자 관련서류 요청 - 이사 전 지역의 보건소에서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관련 서류를 송부하여 이전된 대상자가 즉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예산 및 행정	딤당업무	○ 사업수행기관 및 담당업무 - 시·도 : 지역별 자문위원단 운영	○ 사업수행기관 및 담당업무 - 시·도 : 지역별 자문위원단 운영 ※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포함 하여 운영할 수 있음.	

분야		2010년도	2011년도
	예산	<신설> ○ 여비 및 기타 운영비 - 항목: 여비, 회의비, 인쇄비, 강사료, 검사재료비, 장비구입비, 차량 임 대·유지비·시도자문위원 회의비/ 자문비 등 ○ 담당자 교육비 - 국비교부액: 보건소 당 500,000원	검사재료비, 장비구입비, 차량 임대· 유지비, 시도자문위원 회의비·자문비, 교육자료 제작비, 회의준비비 등 이 담당자 교육비
	인력	○ 담당 인력 수 - 사업 대상자 수가 <u>100명 및 그 이하인</u> <u>경우 담당자 최소 2인</u> 확보	○ 전담 영양사 수 - 사업 대상자 수가 <u>100명 및 그 이하인</u> 경우 담당자 최소 1인 확보
보고	사업 보고	<신설> ○ 시·군·구 월별보고 - <u>매월 말까지 시도로 제출</u> ※ 모든 보고에 대해 시도에서는 취합하여 <u>익월 5일</u> 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출	○ 시・도 사업실적 보고 - 각 시・도에서는 예산사용 내역 및 사업수행내역을 연 2회(6/30, 12/31)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및 한국건강 증진재단(영양사업팀)에 제출하여야 함. ○ 시・군・구 월별보고 -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5일 까지 시・도로 제출 ※ 시・도에서는 해당 시・군・구의 자료를 취합하여 익월 10일까지 보건 복지부(건강정책과) 및 한국건강증진 재단(영양사업팀)으로 제출

제 1장 영양플러스사업 총괄



I. 사업 개요



1. 영양플러스사업이란?

영양플러스사업은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영양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상에게 일정기간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영양섭취상태를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임. 특히,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영양 측면의 위험 집단인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따라서, 영양플러스사업은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또는 구호 측면의 지원과는 구별되며, 건강과 관련된 위험요인(health risk)을 가진 국민에 대해 그 위험인자를 감소시키거나 제거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공공보건 향상 차원의 사업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태아의 단계부터 관리하여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평생건강관리형 영양지원제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음.

2010년 제정된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에서 영양취약계층에 대한 영양관리사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영양플러스사업 수행에 대한 명확한 법적기반이 마련되었음.



2. 사업목표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앙문제(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해소
- ㅇ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 증진 도모



3. 사업 진행경과

○ 본 사업은 2004년 '취약계층을 위한 국가영양지원제도 도입연구'에서 사업안이 개발 되었으며, 2005-2007년 3개년에 걸쳐 실시된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 적용 가능성 및 지역에 따른 적용방안이 검토되고 사업안이 수정·보완되었음.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08년부터 전국단위 본 사업이 도입되었으며, 2009년에는 전국 253개 보건소 중 245개 보건소에서, 2010년에는 250개 보건소에서 사업이 실시되었음.

표 1. 영양플러스 사업진행경과

년도	내용	보건소 수	연 수혜 대상자 수 ¹⁾
2004년	취약계층을 위한 국가영양지원제도 도입연구 - 사업안 마련	-	-
2005년	1차 시범사업 실시 - 사업의 적용가능성 검토 및 사업안의 수정/보완	3개 보건소	1,404
2006년	2차 시범사업 실시 - 지역에 따른 사업적용방안 검토 - 사업안의 수정/보완	11개 시·도 15개 보건소	6,908
2007년	3차 시범사업 실시 - 보다 확대된 지역에서, 효과적인 사업운영방안 검토 - 사업안의 수정/보완	13개 시·도 20개 보건소	11,162
2008년	전국단위 본사업 실시: "영양플러스"로 명칭 변경 - 상반기 108개 보건소 사업참여 개시 - 하반기 45개 보건소 추가 참여	16개 시·도 153개 보건소	46,047
2009년	전국단위 본사업 확대 실시	16개 시·도 245개 보건소	74,406
2010년	전국단위 본사업 확대 실시	16개 시·도 250개 보건소	78,923 ²⁾
2011년	전국단위 본사업 확대 실시	16개시도 251개 보건소	-

- 1) 수혜 대상자 수 : 해당연도 누적 수혜 대상자 수
- 2) 2010년 1월 1일 ~ 10월 31일 수혜 대상자 수

- 1, 2, 3차 시범사업 실시 및 2008년~2010년 본 사업 결과, 다음과 같은 영양상태 개선 효과가 나타남.
 - 수혜 대상자의 빈혈유병률 감소
 - 영유아의 저체중 비율 감소
 - 영양섭취상태 향상
 - 영양지식과 건강행태 개선

표 2. 2005년-2010년 영양플러스사업 수혜대상자의 빈혈유병률 개선 효과(%)

지 표	빈혈유	변화율	
시 표	사업 참여 전	사업 참여 후	민작골
2005	45.4%	34.7%	25.0% 감소
2006	45.9%	29.9%	34.9% 감소
2007*	51.65%	29.57%	42.7% 감소
2008*	55.43%	28.96%	47.8% 감소
2009	56.92%	29.57%	48.0% 감소
2010	58.50%	20.49%	65.0% 감소

- ※수혜대상자의 빈혈유병률: 사업 참여 전·후 혈중헤모글로빈 측정을 통해 판정
- * 6개월 이상 사업 참여자만 포함.

표 3. 2005년-2010년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의 평균 영양섭취적정도 개선 효과

지 표	평균 영양	 변화율	
시 표	사업 참여 전	사업 참여 후	민화뀰
2005	0.75	0.88	17.3% 향상
2006	0.76	0.88	15.8% 향상
2007*	0.74	0.87	17.6% 향상
2008*	0.76	0.88	15.8% 향상
2009	0.74	0.87	17.6% 향상
2010	0.75	0.87	16.0% 향상

- ※ 수혜대상자의 평균영양섭취적정도(MAR): 사업참여 전·후 식품섭취조사를 통한 판정 MAR(Mean Adequacy Ratio, 평균영양섭취적정도): 단백질, 칼슘,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및 비타민 C 섭취량을 대상별 권장섭취량(RI)과 비교한 영양섭취 적정도의 총괄 적인 평균 적정도, 1점 만점
- * 6개월 이상 사업 참여자의 결과임.



4. 2011년 사업 대상 보건소 및 사업 기간

가. 2011년 사업수행 보건소

1) 전국 16개 시·도 251개 보건소

나. 2011년 사업수행기간

1) 사업수행기간

○ 보충식품 및 영양교육 서비스의 제공 기간: 2011년 1월-12월 (12개월)

표 4. 2008-2011년도 사업 수행 보건소

시·도	2008년 총 참여 보건소 수	2009년 총 참여 보건소 수	2010년 총 참여 보건소 수	2011년 총 참여 보건소 수	2011년 신규참여 보건소
서울	24	25	25	25	
부산	4	16	16	16	
대구	7	8	8	8	
인천	9	9	9	9	
광주	5	5	5	5	
대전	1	5	5	5	
울산	1	5	5	5	
경기	17	45	45	45	
강원	9	18	18	18	
충북	13	13	13	13	
충남	11	16	16	16	
전북	10	14	14	14	
전남	11	22	22	22	
경북	13	18	23	24	봉화군
경남	12	20	20	20	
제주	6	6	6	6	
총계	153	245	250	251	

비. 사업내용 요약



1.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가. 대상자 선정기준 개요

- 1) 대상 분류: 만 6세(72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2) 거주 기준: 사업운영 보건소별 관할지역 내 거주
- 3) 소득 수준: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
- 4) 영양 위험요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나. 소득기준

- 1) 대상자 소득기준 원칙
 - 가구의 실제소득이 가장 최근에 발표된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0% 미만인 경우
- 2) 소득기준 적합여부 판정 방법
 -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의 합산액으로 판정함.
 -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가구 건강보험유형별 건강보험료 기준치 미만인 경우에 대상 자격 부여

※ 건강보험료 기준치는 최저생계비 20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산출한 것임.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 가입자 가구, 혼합(직장 +지역) 가구 세 유형에 대해 가구원 수 별로 기준치를 제시함.

다. 영양위험요인 기준

1) 개요

- ㅇ 대상자 선정을 위한 영양위험요인 기준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영양위험요인(nutritional risk)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평가방법을 사용함.

○ 영양위험요인 평가

- 신체계측: 신장, 체중
- 혈액검사: 빈혈 검사(혈중 헤모글로빈 농도)
- 영양섭취상태조사: 24시간 회상법
-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

2) 영양평가 종류 별 영양위험요인 판정 기준 요약

가) 신체계측

- ㅇ 영유아: 저체중이나 저신장, 성장부진 등으로 분류된 경우
 - 질병관리본부 · 대한소아과학회 · 소아청소년 신체발육표준치 제정 위원회에서 발표한 '2007 소아 및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에 근거하여,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 연령별 신장 백분위수가 10th percentile 미만
 - · 연령별 체중 백분위수가 10th percentile 미만
 - · 신장별 체중 백분위수가 10th percentile 미만

- · 연령별 BMI 백분위수가 10th percentile 미만
- 표준체중에 대한 비율이 80% 미만
- 임신·출산·수유부: 저체중으로 판정된 경우(BMI 18.5미만)

나) 빈혈검사

- ㅇ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에 의해 빈혈로 판정된 경우
 - 빈혈판정 기준은 WHO 기준을 사용
 - · 6~59개월 영유아: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 5세 유아: 헤모글로빈 11.5g/dl 미만
 - · 임신부: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 출산수유부: 헤모글로빈 12g/dl 미만
 - ※ 6개월 이하 영아의 경우 혈액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모체의 위험요인을 적용할 수 있음

다) 영양섭취상태조사

-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영양소 섭취부족으로 판정된 경우
 - 영양소 섭취상태에 의한 영양위험판정은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한국인 영양섭취기준(DRIs, 2010)에 근거
 - ·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EER)의 75% 미만이거나
 - · 단백질, 칼슘, 철, 비타민A,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티아민, 비타민C 중 한 가지라도 섭취량이 평균필요량(EAR) 미만인 경우
 - 기타 상담에 의해 부적절한 식품섭취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

-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항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 저체중아, 조산, 사산, 유산, 기형아 출산 경력이 있는 출산부 혹은 저체중으로 출생한 영아의 영양위험요인 상호 적용 등(p32 표7. 기타 영양위험 요인 참고)

라. 보충식품비 자부담 대상 판정 및 적용

1) 자부담 대상

- 가구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대비 120% ~ 200%인 경우 보충식품비의 10%를 자부담하도록 함.
 - ※ 자부담 금액: 식품패키지 별 연평균 월 단가의 10%로 매월 동일한 금액을 납부

2) 보충식품비 자부담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
- 차상위 계층
- 가구 건강보험료가 최저생계비 120%에 준하는 기준치 미만인 경우※ 최저생계비 대비 12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기준치와 비교

3) 자부담 대상자 판정 시점

○ 대상자 등록 시 및 자격재평가 시 소득 재판정과 함께 실시함.

4) 자부담금 입금 방법

- 대상자의 자부담금은 식품공급업체에 직접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CMS계좌이체방식 등을 통해 자체입금관리가 가능한 보건소의 경우
 보건소에 납부하도록 하여도 무방함.
- 대상자는 자부담금을 매월(월 1회)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1차 식품발주일 10일 전까지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자부담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해당 월의 보충식품 공급을 중지할 수 있음.
-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지방비(시·도, 시·군·구비), 후원금 및 기타 기금에 의해 자부담료를 대체하도록 지원할 수 있음.



2. **대상자격 관리**

가. 대상자 등록

○ 대상자격이 있음이 판정된 경우, 대상자 등록 서명용지의 내용을 확인한 후 등록 서명함으로써 등록이 완료됨.

나. 우선순위 적용

○ 확보된 예산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모든 신청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 순위를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 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대기자로 관리・운영할 수 있음.

구분	기준
우선순위 1	기초생활수급자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
우선순위 2	영양의학적 위험이 있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우선순위 3	임신기에 수혜대상이었던 여성의 영아 임신기에 영양의학적 위험이 판정되었지만 대기자로 있었던 여성의 영아
우선순위 4	영양의학적 위험이 있는 유아
우선순위 5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우선순위 6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유아
우선순위 7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을 가진 산후 여성(6개월까지)

- ※ 영양의학적 위험: 빈혈, 저체중, 저신장 등 신체계측이나 혈액검사를 통해 판정된 영양위험 및 임신/출산경력관련 사항 등 식사요인 외의 영양위험요인
- ※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 한 가지 이상의 영양소 섭취불량으로 판정된경우 및 기타 식생활 요인과 관련된 영양위험요인을 말함.

다. 추가 우선순위

- 소득수준이 더 낮은 대상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음 ※ 예) 최저생계비 대비 120% 혹은 150% 미만 대상자 우선선정
- 다음과 같이 같은 우선순위 안에서 추가 우선순위 부여할 수 있음.
 - 유아 중 1-2세 유아에게 더 높은 우선순위 부여
 -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미혼모가정, 3인이상 다자녀가구, 다문화가정 등에 더 높은 우선순위 부여

라. 대상자격 인정기간

○ 영앙플러스 사업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자격기간 동안에만 사업에 참여함.

78	되거기기
구분	자격기간
영아	- 생후 만 12개월까지
유아	- 생후 만1세-만6세 미만(72개월 미만) - 6개월 간격으로 자격재평가
임신부	- 출산 후 6주까지
출산부	- 출산 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부	- 출산 후 12개월까지 - 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단, 혼합수유부의 경우 출산 후 7개월째부터 보충식품은 우유만 공급

마. 대상자 졸업 및 대상 자격 취소

- 1) 대상자가 사업에서 졸업하는 경우
 - 대상자가 자격재평가 결과 영양위험요인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대상자격 인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 영아와 임신부의 경우 자격인정기간 만료 시, 자격재평가를 통해 영아→유아. 임신부→출산·수유부로 전환하여 대상자격 유지 가능

2) 대상 자격 취소

-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될 경우 대상자는 현재 자격인정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 참여를 중단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 3회 이상 사전 연락 없이 영양교육이나 보충식품을 받지 않는 경우
 - 소득을 허위로 보고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 관할 보건소에서 제공받은 식품에 대해서 자(타)의로 식품을 판매한 경우



3. 영양플러스 서비스 내용

- 영양플러스 주요 서비스 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보충식품 공급
- 정기적 영양평가
 - ※ 대상자 선정 후 대상에 맞는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제공

가. 영양교육 및 상담 서비스

- 1) 영양플러스 사업의 영양교육 목표
 - ㅇ 대상자 개개인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대상자가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함.
 - ※ 영양플러스 사업에서는 영양교육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

2) 교육 원칙

- 방법: 개별 상담, 집단 교육, 가정방문교육
- 보건소 별 지역특성 및 대상자 특성에 따라,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한 적절한 영양교육 계획 수립
- 최소한 1개월에 1회 이상 대상자와 접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부득이한 경우 최소 2개월에 1회 이상 대면 교육을 실시
- 중앙배포 교육자료를 바탕으로 교육
- 3) 영양교육 주요 내용
 - 대상범주 및 영양위험요인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식생활 관리 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
- 4) 영양교육 유형별 유의사항
- 가) 단체교육
 - ㅇ 소그룹 교육을 권장함.
 - 이론교육과 함께 대상자가 참여하는 활동 포함.
 - 개인상담을 병행할 것을 권장함.
 - ㅇ 직장인 대상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

나) 개별상담

- ㅇ 맞춤형 영양지도를 위해 개인상담을 활성화하는 것이 적극 권장됨.
- 상담 시작 전에 이전 상담시의 상담 내용을 살펴본 후 해당 월의 대상자별 상담의 목표를 설정하도록 함.

다) 가정방문 교육

- 대상자 선정 후 가능한 최소 1회 이상 가정방문을 실시
- 우선적 방문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
- 보충식품의 보관·이용에 대한 교육 및 기타 맞춤형 식생활 관리 교육 실시

- ※ 방문 시에는 식품보관 상황을 기록할 수 있는 기록 용지 사용.
- ※ 교육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 적극 활용 권장

라) 대상자 연계

○ 필요한 경우 타 사업 혹은 의료기관에의 연계를 실시함.

나. 보충식품공급

1) 보충식품이란?

- 일상적인 식사에서 부족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공급하는 식품을 의미
- 보충식품만 먹으면 모든 영양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식품과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교육함.

2) 보충식품 내용

- 대상 구분 및 특성에 따라 6가지 패키지 중 처방
- 대상 별로 처방된 패키지에 따라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참치통조림, 귤/오렌지주스 등의 식품을 공급

3) 보충식품 전달방법

- 보충식품은 가정배달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지역특성에
 따라 보건지소 등에서 대상자가 직접 식품을 수령하는 방식과 병행할수 있음.
- 식품공급업체는 각 시·도별로 일괄 선정하는 것을 권장하나, 지역 상황에 따라, 보건소 별로 별도의 식품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배달시, 식품공급업체는 반드시 대상자로부터 수령확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보건소에 보고하여야 함.

□ 보충식품패키지별 식품 제공량 (1인 1일 환산치)

기본 식품패키지							
식품명		식품패키지 1 (영아, 0-5월)	식품패키지 2 (영아, 6-12월)	식품패키지 3 (유아, 만1세-만6세미만)	식품패키지 4 (임신· 수유부⁴)	식품패키지 5 (출산부)	식품패키지 6 (완전모 유수유)
조제분유	1)	필요량의 1/2까지	필요량의 1/2까지				
쌀			45g	45g	90g	90g	90g
감자			25g	25g	50g	50g	50g
달걀 ²⁾			50g(노른자) ³⁾	50g	50g	50g	50g
당근			18g	18g	35g	35g	35g
우유				4 00mℓ	400 mℓ	200mℓ	400ml
검정콩				10g	15g	15g	15g
김				3g	3g	3g	3g
미역					2.5g	2.5g	2.5g
참치통조	림						30g
귤・오렌지주스							귤 중 1개 주스 200㎡
대체식	 뚴						7 — 200 lik
식품명	대체식품명	식품패키지 1 (영아, 0-5월)	식품패키지 2 (영아, 6-12월)	식품패키지 3 (유아, 만1세-만6세미만)	식품패키지 4 (임신· 수유부)	식품패키지 5 (출산부)	식품패키지 6 (완전모유수유)
22].	현미		_5)	30g	45g	45g	45g
쌀	보리		_5) 	30g	45g	45g	45g
감자	국수		_5)	100g/주	200g/주	200g/주	200g/주
[삼사	고구마		_5)	25g	50g	50g	50g
	시리얼			30g	30g	30g	30g
검정콩	참치통조림			10g	15g	15g	_6)
	붉은 팥			10g	10g	10g	10g
당근	애호박 서양호박		18g	18g	35g	35g	35g
영아용 생식품	이유식(분말)		필요한 경우 하루표준량의 1/2이하				

- 1) 모유수유를 우선적으로 권장하며, 필요량에 따라 제품에 표기된 권장섭취량의 1/2까지 제공함.
- 2) 달걀 50g은 달걀 1개로 계산하여 공급함.
- 3) 전란을 지급하되, 영아는 노른자만 먹도록 교육함.
- 4) 혼합수유부의 경우 출산 후 7개월째부터 보충식품은 우유만 제공.
- 5) 영아에서는 대체 불가
- 6) 식품패키지 6에서는 참치통조림이 기본 패키지 식품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검정콩의 대체 식품으로 참치통조림 적용 불가

4) 식품공급업체의 관리

- 식품공급업체 선정 후 식품 배송, 대상자의 식품 수령 · 보관 과정에서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며, 식품공급업체로부터 위생관리를 위한 확인서를 받도록 함.
- 사업 담당자가 식품공급업체를 방문하여 식품배송 준비 과정을 점검 함으로써 배달 식품의 검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다. 영양평가

- 1) 영양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약 3개월에 1회 실시 권장
 - 대상자 선정 시(사업 참여 전)
 - 자격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 ㅇ 사업종료 시
 - ㅇ 정기적 중간평가

2) 영양평가 내용

- 대상자 선정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평가함.
 - 신체계측: 신장 및 체중
 - 생화학적 검사: 빈혈 판정(혈중 헤모글로빈)
 - 영양섭취상태조사: 24시간 회상법
- ㅇ 그 외 대상자의 영양지식, 태도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
- 평가 결과에 따라 맞춤형 영양교육 실시

제 2장 영양플러스사업 세부내용



본 장에 수록된 사업 내용과 관련된 특이사항 및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및 한국건강증진재단 영양 사업팀과 협의.

Ⅰ. 대상자 선정



1. 대상자 자격기준

영양플러스사업의 대상자는 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의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면서 대상자 구분기준, 소득 기준 및 영양위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하며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의 참여 신청 접수 후 자격 여부를 판정함.

○ 자격기준

분류	기준
대상자 구분기준	 영아(생후~만 12개월까지) 유아(만1세-만6세(72개월) 미만) 임신부 출산・수유부
거주기준	• 보건소 관할지역 내 거주
소득수준	•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 미만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

가. 대상자 구분기준

영아, 유아(만1세-만6세미만, 72개월 미만), 임신부 및 출산・수유부

- 1)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가구를 포함시킬 수 있음.
 - ※ 국제결혼자의 경우 부부 중 1인은 한국 국적이어야 함
- 2) 유아의 경우 사업 참여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므로 대상자 선정 시만 66개월 이하인 유아로 대상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 영유아의 연령을 만6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근거는 학교급식으로 영양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학동기연령(만 6세 이상) 미만의 유아를 모두 포함하고자 하는 것임.
- 3) 유산 혹은 사산한 여성도 출산부의 범주에 포함됨.
- 4) 본 사업은 가정단위에 대한 지원이 주 내용이므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제외함.

나. 소득 기준

1) 소득 판정 기준

□ 대상자격 판정을 위한 소득기준

○ 가구의 실제소득이 가장 최근에 발표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정한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0% 미만인 경우

□ 대상자격 판정방법

- 건강보험료 납부액(본인부담금)으로 판정
 -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건강보험료 기준치 미만인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 건강보험료 기준치: 최저생계비 20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가)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표 5에 제시된 금액 미만인 경우에 대상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

표 5. 2011년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최저생계비 대비 200%)

기기이 스 ¹⁾	최저생계비	건	강보험료 본인부담금	H(원)
가구원 수 ¹⁾	20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065,166	30,079	17,029	30,610
111	1,000,100	$(32,049)^{2)}$	(18,144)	(32,615)
2인	1,813,660	51,745	48,132	52,349
2 i	1,013,000	(55,134)	(51,285)	(55,778)
30]	2,346,242	66,835	72,242	67,595
3 ti	2,340,242	(71,213)	(76,974)	(72,022)
4인	2,878,826	81,478	93,800	82,268
41	2,070,020	(86,815)	(99,944)	(87,657)
50]	2 /11 //00	97,191	116,772	98,474
311	3,411,408	(103,557)	(124,421)	(104,924)
6 <u>0</u>]	3,943,990	111,861	134,990	113,360
01	3,943,990	(119,188)	(143,832)	(120,785)
7인	4,476,574	126,395	151,730	128,321
/ 긴	4,470,374	(134,674)	(161,668)	(136,726)
80]	5 000 156	143,421	172,148	146,103
0단	5,009,156	(152,815)	(183,424)	(155,673)
9인	5 5/1 729	158,264	188,816	161,825
기년	5,541,738	(168,630)	(201,183)	(172,425)
10인	6.074.220	171,296	206,967	179,263
10년	6,074,320	(182,516)	(220,523)	(191,005)

- 1) 가족 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존ㆍ비속으로 한정
- 2) 괄호 안은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6.55%)를 합산한 금액이므로 합산고지서 제출 시 괄호 안 기준 참조. 관리프로그램에는 합산금액 입력
- * 본 기준은 단일화된 건강보험료 판정기준 적용을 위한 보건복지사업 기준 심의위원회 (2010.12.7) 심의 결과에 따른 산정방식임.
 - 나) 상기 가)에 의해 대상자격이 인정되는 직장가입자 중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대상자격을 얻을 수 없음.
 - ① 승용ㆍ승합차 평가액이 3000만원 이상인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

- ②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가구
- 다) 상기 나)에 명시된 승용·승합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소유 자동차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면 대상자로 선정 가능함.
 - ①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출퇴근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은 제외)
 - ② 질병, 부상, 장애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
- 라) 승용 · 승합차가 두 대 이상인 경우 평가액이 높은 차량을 기준으로 확인함.
- 2)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

□ 가족수 확인을 위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G4C 이용)

□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건강보험증
-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 (직장가입자) 자동차보험증권

□ 기타 서류

○ 임신·출산여부 증빙서류: 산모수첩, 의사진단서·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중 1개 이상

가) 건강보험료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

- ① 건강보험증 및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원본)으로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확인한 후, 사본을 개인파일에 보관함.
- ②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이 포함된 월급명세서 또는 납부확인서도 건강 보험료 확인을 위한 서류로 이용할 수 있음.
 - ※ 체납자는 납부 후 영수증 제출 시에만 가능

- ③ 건강보험증과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의 대조를 통해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료가 조사되도록 하여야 함.
 - ※ 국제결혼자의 주민등록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제출
- ④ 세대 내 가입자(피부양자 제외)가 2인 이상인 경우 보험료 합산
 - 동일 가입유형(모두 직장 가입자 또는 모두 지역 가입자)인 경우 : 합산액을 직장 혹은 지역 보험료 기준치와 비교
 - 다른 가입유형(직장+지역 가입자 가구)인 경우 : 합산액을 혼합 (직장+지역) 보험료 기준치와 비교
- ⑤ 건강보험료 감면대상자의 경우 소득판정 시 감면된 금액을 적용함.
 - ※ 건강보험료 감면대상자: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록장애인 세대 (국가유공자중 상이),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사업장 화재, 부도, 재산경매, 압류), 농어업인 경감, 도서·벽지경감, 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

나) 건강보험료의 변동에 대한 처리

- ① 최근 건강보험 유형이나 직장의 변화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유형 혹은 납부액이 변화한 경우에는 변화된 건강보험 가입유형 및 납부액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②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 휴직증명서 제출 시 휴직상태의 가구소득을 인정할 수 있음.
 - 단,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한함(6개월 미만은 휴직자는 휴직 직전 보험료로 산정).
- ③ 가구원이 퇴직한 경우
 - 퇴직증명서 제출 시 변화 내용을 인정할 수 있음
 - 단, 다음 월 변화된 지역·직장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을 다시 확인
- ④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경우(예: 군인)

- 신청 월 직전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
- ⑤ 연말정산 등으로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달의 경우
 - 최근월분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나, 평상시의 건강보험료와 상이할 경우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액(혹은 평상시의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다) 차량소유여부 및 평가액 판정을 위해 평가액이 포함된 자동차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함.
- 라) 자부담 여부 판정 및 소득판정의 편의를 위해 다음 사항에 관련된 증명 서류가 있는 경우 반드시 이를 확인하여 기록하도록 함.
 - ①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여부
 - ② 차상위 대상자 여부

마) 기타 서류

- ① 건강보험료만으로 소득을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한 경우 다음의 자료 중 한 가지 이상의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하여 참고자료로 이용할 수 있음.
 - ※ 이는 필수 확인 서류가 아니며, 건강보험료로 정확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이용함.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증명
 -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미과세 증명, 소득금액 증명원,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 사본, 월급명세서, 고용주가 발행하는 고용・임금발행서 등의 증명서 등
- ② 임신부의 경우 임신여부 확인을 위해 다음의 증빙서류 중 1개 이상을 제출하도록 함.
 - 산모수첩, 의사진단서 · 소견서(출산 전), 출생증명서(출산 후)
 - ※ 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출생증명서를 제외하며 보건소에 이미 등록된 임산부는 자료제출 생략가능

바) 가구원 수 산정

- ① 가구원의 범위
 -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직계존ㆍ비속 및 배우자
 - 이 때 2촌의 개념은 해당 대상자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함.
 -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 대상자나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고 건강보험증에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
- ② 태아도 가족 수에 포함시킬 수 있음
- ③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2촌의 범위에 속하지 않은 자가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가구원에 포함 시킬 수 있음.
 - ※ 포함된 모든 가구원의 소득을 합하여 소득기준(건강보험료 기준)을 만족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가족 수에 근거하여 판단.
- ④ 영유아가 단독가구로써 기초생활보장수급 혹은 차상위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 현재 보호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대상자격을 얻을 수 있음. (가정위탁 아동 포함)
 - ※ 가정위탁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함. (아동복지법 제2조)
- ⑤ 사업 담당자는 가족 수 및 가구원의 확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 (G4C)를 통하여 주민등록정보 및 전산 호적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

사) 소득관련 기타 사항

① 소득판정 및 자부담 대상 판정을 위해 읍·면·동사무소 및 시·군·구청 사회복지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② 긴급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나 증명서류로 파악되지 않는 지원자가 있을 경우
 - 읍·면·동사무소 및 시·군·구청 사회복지사의 협조를 의뢰할 수 있음.
 - ※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사 또는 보건소장의 서면 추천 확인이 필요함. 또한, 이 지원자에 대해서도 다른 지원자와 같이 영양위험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대상자격을 판정함.
- ③ 대상자의 자격재평가 시에 소득을 재판정하여 자격 여부를 재판정함.
 - 사업에 참여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 소득재판정도 자격재평가 유보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 최초 사업 참여일로부터 6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자격재평가를 유보하고 대상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상세내용은 대상자관리 - 자격재평가와 관련한 사항(47쪽) 참조).
- ④ 자격재평가 시기가 아니더라도 허위로 소득을 신고하였거나, 소득의 변화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소득재판정을 실시할 수 있음.

다. 영양위험 기준

□ 영양위험판정(nutritional risk)

생리학적 조건, 거주조건 및 소득수준을 만족하는 대상자 중에서 다음의 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영양위험 판정

- ㅇ 신체계측
- ㅇ 생화학적 검사
- 영양섭취상태조사
- 기타 영양위험조항
- 이중 단 한 가지만 해당되어도 영양위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

1) 신체계측

가) 판정기준

- ① 영아 및 유아의 경우 연령별 신장, 연령별 체중, 신장별 체중 또는 BMI가 10th percentile 미만 혹은 이상체중 대비 비율이 80% 미만인 경우 영양위험요인을 보유한 것으로 판정.
 - ※ '2007 소아 및 청소년 표준성장도표(질병관리본부·대한소아과학회· 소아청소년 신체발육표준치 제정위원회)'에 근거하여 판정함.
- ② 임신·출산·수유부의 경우 현재 신장과 체중에 의한 BMI가 18.5 미만인 경우 영양위험요인을 보유한 것으로 판정.

나) 신체계측 시 유의사항

- ① 여름과 겨울의 옷 무게에 따라 체중 측정값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겉옷과 신발 등을 벗고 속옷(또는 가벼운 옷)만 착용한 상태에서 체중을 측정하도록 함.
- ② 영유아의 체중계측 시 기저귀와 옷 무게로 인한 차이를 최소화하여야 함. 특히, 반드시 기저귀가 젖지 않은 상태에서 체중을 측정하여야 함.

□ 영양평가 종류 별 영양위험요인 판정 기준 요약

신체계측

- 영유아에서 저체중, 저신장, 성장부진 등으로 분류된 경우
 - 질병관리본부 · 대한소아과학회 · 소아청소년 신체발육표준치 제정위원회에서 발표한 '2007 소아 및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에 근거하여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 ·연령별 신장 백분위수가 10th percentile 미만
 - ·연령별 체중 백분위수가 10th percentile 미만
 - ·신장별 체중 백분위수가 10th percentile 미만
 - · 연령별 BMI 백분위수가 10th percentile 미만
 - •표준체중에 대한 비율이 80% 미만
- 임신·출산·수유부에서 BMI에 의해 저체중으로 판정된 경우(BMI 18.5미만) BMI = 체중(kg)/(신장(m))²

빈혈검사

- ㅇ 혈중 헤모글로빈 검사 시 빈혈로 판정된 경우
 - 빈혈판정 기준은 WHO 기준을 사용
 - ·6~59개월 영유아: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 5세 유아: 헤모글로빈 11.5g/dl 미만
 - ·임신부: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출산·수유부: 헤모글로빈 12g/dl 미만
 - 6개월 이하 영아의 경우 혈액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모체의 위험요인을 적용 할 수 있음

영양섭취상태조사

-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문제 영양소의 섭취부족으로 판정된 경우
 - 영양소 섭취상태에 의한 영양위험판정은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된 한국인 영양 섭취기준(DRIs, 2010)에 근거
 -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EER)의 75% 미만이거나
 - · 단백질, 칼슘, 철, 비타민A,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티아민, 비타민C 중한 가지라도 섭취량이 평균필요량(EAR) 미만인 경우
 - 기타 상담에 의해 부적절한 식품섭취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

-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항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 2) 생화학적 검사
 - 가) 유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혈중 헤모글로빈 검사결과 빈혈로 판정된 경우 영양위험요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함.
 - 나) 빈혈 판정 기준은 WHO 기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함.
 - ※ WHO 빈혈판정 기준: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를 기준으로 함
 - ·6-59개월 영아 및 아동은 11a/dl 미만
 - · 5세 아동은 11.5g/dl 미만
 - ·임신부는 11g/dl 미만
 - ·출산부 및 수유부는 12g/dl 미만
 - ※ 6개월 이하 영아의 경우 혈액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모체의 위험요인을 적용할 수 있음.

- 다) 보건소 내 검사실이 있는 경우, 검사실과 연계하여 빈혈판정을 실시할 것을 권장함.
- 라) 대상자의 빈혈 검사결과에 대해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야 함.
 - ※ 빈혈측정기에 헤모글로빈 검사 결과 출력기를 연결하여 검사 결과를 출력한 후 대상자의 확인서명 후 보관
 - ※ 출력기가 없는 경우, 즉시 측정결과를 용지에 기록한 후 대상자의 확인서명 후 보관
- 마) 헤모글로빈 측정방법(휴대용 헤모글로빈 측정기 사용 시)
 - ① 손가락의 채혈할 부위를 먼저 가볍게 맛사지하여 손을 따뜻하게 함.
 - ② 채혈하기 전 채혈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닦음. 이때 정확한 검사를 위해 소독을 위해 바른 알코올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림.
 - ③ 채혈침(Lancet)을 사용하여 채혈할 때에는 정확한 검사를 위해, 검사에 충분한 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혈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여 혈액을 짜내는 방식으로 채혈하지 않도록 함.
 - ④ 처음 나오는 혈액은 마른 솜으로 닦은 후, 그 다음 나온 혈액을 큐벳에 채움. 이때 반지를 착용한 손가락에서는 채혈하지 않도록 함.
 - ⑤ 혈액이 큐벳 겉면에 묻지 않도록 혈액을 채운 큐벳의 아래쪽을 마른 솜으로 닦아줌.
 - ⑥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 검사결과가 9g/dl 미만인 경우 및 기타 필요시 반복 검사 실시.
- 바) 휴대용 헤모글로빈 측정기 사용 시 유의사항
 - ① 측정기의 전용 채혈침(Lancet)을 사용하도록 함.
 - ② 테스트 큐벳은 습도에 민감하므로 반드시 지정된 통에 보관하고 뚜껑을 꼭 닫아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여야 함.
 - ③ 장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컨트롤 큐벳을 이용하여 장비 시리얼번호와의 일치여부를 장비 사용 전에 반드시 점검하도록 함.

컨트롤 큐벳은 반드시 지정된 상자에 보관하고 만약 컨트롤 큐벳 수치가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 장비 구입 업체에 연락하여 문의 하도록 함.

- ④ 테스트 큐벳의 optical eye는 측정 시 센서가 통과하는 부위이므로 절대 손으로 만져서는 안되며 이물질이 생긴 큐벳은 사용하지 않도록 함.
- ⑤ 헤모글로빈 측정 후 측정기의 광학센서 부분을 면봉으로 잘 닦아 관리함.

그림 1. 휴대용 헤모글로빈 측정기를 이용한 헤모글로빈 측정 방법









3) 영양섭취상태조사

- 가)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영양소의 섭취부족으로 판정된 경우나 기타 상담에 의해서 부적절한 식품섭취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상자격이 주어집.
 - ※ 대상에 따라 하루의 섭취량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2일 혹은 3일간의 영양섭취상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영양 섭취상태 조사 시 실물크기 모형 및 책자 활용

나) 영양섭취 부족 판정기준

- ① 영양소 섭취상태에 의한 영양위험 판정은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한국인 영양섭취기준(DRIs, 2010)에 근거함.
- ②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EER)의 75% 미만이거나, 단백질, 칼슘,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비타민 C 중 한 가지라도 그 섭취량이 평균필요량(EAR: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영양섭취부족으로 판정함.
- ③ 이에 의한 영양소 섭취판정 기준은 표 6과 같음. 각 해당 기준 미만을

섭취하는 경우에 영양위험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함.

※ 단, 유아의 경우 영양섭취상태조사에 의해 문제 영양소의 섭취 부족으로 판정하는 것은 '2007 소아 및 청소년 표준성장도표에 근거한 연령별 신장, 연령별 체중, 신장별 체중 또는 BMI가 10~25th percentile에 속하는 대상자의 경우만으로 제한하여 적용할 수 있음.

다) 영양섭취량 산출을 위한 프로그램 이용

- ①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 내의 영양플러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웹기반의 영양솔루션을 이용함.
- ②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 사용이 불가하여, 기존의 대상자 관리프로그램 (wic3.0)을 사용하는 경우 영양섭취량 산출은 한국영양학회의 CANPro 3.0 프로그램에 의해 실시함.

라) 영아의 영양섭취결과 입력

- ① 조제분유의 섭취량 입력
 - 분유섭취량 입력 시에는 영양솔루션·CANPro의 DB에 포함된 조제분유 성분을 확인한 후 입력
 - ※ 대부분의 경우 분말의 양으로 입력하도록 되어있음.
 - 영양솔루션 · CANPro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있는 조제분유 중 대상자가 섭취한 분유의 종류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선택하거나, 상품에 표시된 영양성분 값으로 별도의 식품코드를 생성하여 이용함.
- ② 모유수유의 섭취량 입력
 - 영양솔루션·CANPro에 모유수유의 양을 입력하는 것은 생략하며, 모유수유를 제외한 나머지 식품의 섭취내용만 입력함.
- ③ 4)의 기타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경우를 대상자격 판정에 이용. 그러나 영양 교육·상담을 위해 다른 대상과 마찬가지로 식품섭취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표 6. 대상별 영양섭취 판정기준

대상	연령	임신	열량 <kcal></kcal>	단백질 <g></g>	칼슘 <mg></mg>	철분 <mg></mg>	비타민 A <re></re>	리보플라빈 <mg></mg>	나이아신 <mg></mg>	비타민 C <mg></mg>
분류		구분	EER 75% ¹⁾				EAR ²⁾			
유아	1-2세		750	12	390	4.8	200	0.5	5	30
TT Y	3-5세		1,050	15	470	5.4	230	0.6	5	30
		전기 ³⁾	1,500							
	15-18세	중기 ³⁾	1,755	40	890	20.7	490	1.3	14	85
		후기 ³⁾	1,838							
		전기	1,575							
임신부	19-29세	중기	1,830	40	760	18.6	510	1.3	14	85
		후기	1,913							
		전기	1,425							
	30-49세	중기	1,680	35	740	18.3	500	1.3	14	85
		후기	1,763							
	15-18세		1,500	40	660	12.9	440	1.0	11	75
출산부	19-29세		1,575	40	530	10.8	460	1.0	11	75
	30-49세		1,425	35	510	10.5	450	1.0	11	75
모유	15-18세		1,740	60	970	12.9	790	1.4	14	110
	19-29세		1,815	60	840	10.8	810	1.4	14	110
수유부	30-49세		1,665	55	820	10.5	800	1.4	14	110

- 1) 필요추정량(EER): 필요추정량을 평가기준으로 이용함에 있어 필요추정량의 75%미만을 판단 기준점으로 정하여 미치는 못하는 값을 영양부족으로 판단한다.
- 2) 평균필요량(EAR): 대상 집단을 구성하는 건강한 사람들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일일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값
- 3) 임신부의 임신구분은 전기 1-12주, 중기는 13-26주, 후기는 27-40주로 구분하여 적용함.

4)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

가) 빈혈, 신체계측, 영양섭취조사 외에 표 7와 같은 영양위험요인을 적용할 수 있음.

5) 타 기관 검사자료 적용

- 가) 대상자 신청 시 한 달 이내에 빈혈여부나 신장, 체중에 대해 타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에서 측정한 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첨부하면 이를 영양 위험요인 판정을 위한 측정치로 인정할 수 있음.
 - ※ 측정방법의 차이 등으로 보건소에서 다시 검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 측정한 결과를 이용함.

- 나) 임신부에서 빈혈로 진단받고 철분제를 처방받은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위험요인 보유로 인정함.
- 다) 유아의 병력 때문에 철분제 등을 복용하여 헤모글로빈수치가 정상으로 측정되는 경우, 대상자 선정 시 한 달 이내의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의 진단서혹은 검사결과지를 근거로 빈혈위험요인 기준 충족여부 판정 가능

표 7. 기타 영양위험요인

□ 기타 영양위험요인

영양학적요인

- (임신부) 조산, 사산, 자연유산, 저체중아 혹은 선천성기형아 출산 경력이 있는 경우
- (출산·수유부) 저체중아 출산경력이 있는 경우
- (임신·출산·수유부) 다태아 이상을 임신 혹은 출산한 경우
- (영아) 미숙아(체중이 2.5kg 미만이며, 재태기간 37주 미만)
- (영아) 저체중아로 출생한 경우(출생 시 몸무게 2.5kg 미만)

식생활요인

- (생후 3개월 미만 영아) 이유식 도입한 경우
- (생후 6개월 이상 영아) 이유식 도입하지 않은 경우
- (영아) 12개월 이전에 시유를 먹이는 경우
- (영아) 신장, 체중, 신장별 체중 혹은 BMI가 10~25th percentile에 해당하는 영아 중 월령에 비해 수유횟수나 양이 적은 경우

모유	유수유아	조제유아		
개월	개월 기준치		기준치	
생후 2개월미만	8회 미만/24시간	생후 0-3개월	600ml 미만/24시간	
생후 2-6개월	6회 미만/24시간	생후 4-6개월	780ml 미만/24시간	

기타 예외조항

- (모유수유아) 어머니가 영양불량으로 판정된 경우 ※ 이 경우 영아는 어머니와 같은 우선순위군으로 적용
- (수유부) 영아가 영양불량으로 판정된 경우 ※ 이 경우 수유부는 영아와 같은 우선순위군으로 적용
- (영아) 어머니가 임신 중 사업에 참여하였을 경우(우선순위 3)
 - ※ 이 경우 영아 본인의 영양위험요인에 의해 판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로 인해 수유부가 자동으로 대상자격을 얻을 수는 없음.
- (기타) 담당영양사의 상담에 의해서 부적절한 식품섭취를 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이의 판정을 위해 식품군별 섭취 상태나 중앙에서 배포하는 식생활 체크리스트 시트지를 참고로 할 수 있음.
- ※ '기타 영양위험요인'에 해당하는 항목은 초기 대상자격 판정에만 적용됨.(단, 영아관련 조항인 식생활 위험 요인이 남아있는 경우 자격재평가시에도 적용 가능)



2. 대상자 선정 주기 및 방법

가. 선정주기

- 1)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격 판정은 지속적으로 실시함.
 - ※ 보충식품 공급은 1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월별 1차 발주가 끝난 후, 대상자로 등록되면 등록된 다음 달부터 보충식품을 공급함.

나. 대상자 수

- 1)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 월 평균 관리대상자 수가 최소한 당해 연도 예산배정과정에서 계획하여 협의된 대상자 수와 동일하거나 혹은 그 이상이 되도록 함.
- 3) 기 계획된 대상자 수를 초과함으로써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함.

- 4) 한 가구 내에 대상자격이 있는 가구원을 모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보건소별로 한 가구당 참여대상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나, 이를 적용할 경우 가구 내 모든 대상에 대해 영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 하여야 함.
- 5) 대상구분별로는 우선순위가 높은 영아나 임신부 및 모유수유부가 우선적으로 선정되도록 하여야 함. 총 대상자 중 유아의 비율은 50%를 넘지 않도록 선정하는 것이 권장됨.
 - ※ 적정 대상구분별 비율 예시: 유아 약 50%, 영아 약 25%, 임신부및 출산·수유부 약 25%

다. 홍보

- 1)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자격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 2) 홍보를 위한 방법의 예는 다음과 같음.
- 가) 방송, 신문, 홈페이지,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
- 나) 보건소 이용자에 대한 홍보(타 사업과의 연계)
- 다) 관내 산부인과 및 소아과의 협조를 얻어 의료기관에 유인물을 비치하고, 의료 기관 이용자에 대해 홍보
- 3) 읍·면·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가능한 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대상자 명단을 확보하고, 적극적 연락을 통해 사업 참여를 독려함. 특히,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여야 함.



3. 우선순위 적용

- 1) 우선 순위 1 기초생활수급자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
- 2) 우선 순위 2 영양의학적 위험(빈혈, 저체중, 저신장 등)이 있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 3) 우선 순위 3 임신기에 수혜대상이었던 여성의 영아 혹은 임신기에 영양 의학적 위험이 있었으나 대기자로 있었던 여성의 영아(6개월 까지 인정)
- 4) 우선 순위 4 영양의학적 위험(빈혈, 저체중, 저신장 등)이 있는 유아
- 5) 우선 순위 5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영아, 임신부, 수유부
- 6) 우선 순위 6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유아
- 7) 우선 순위 7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을 가진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출산부(6개월까지)
- ※ 영양의학적 위험은 빈혈, 저체중, 저신장 등 신체계측이나 혈액검사를 통해 판정된 영양위험 및 임신·출산경력관련 사항 등 식사요인 외의 영양위험 요인을 말함.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은 한 가지 이상 영양소의 섭취불량으로 판정된 경우 및 기타 식생활 요인과 관련된 영양위험요인을 말함.

가.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경우

1) 대상자 선정기준 즉 거주기준, 생리학적 기준, 소득 기준 및 영양위험기준의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수혜 자격이 인정되지만, 확보된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모든 신청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기자 명단을 확보하고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적용함.

나. 우선순위의 적용

1) 지역 여건에 따라 추가 우선순위를 적용할 수 있음. 그 예는 다음과 같음.

- 가) 소득수준이 더 낮은 대상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음
 - ※ 예) 최저생계비 대비 120% 혹은 150% 미만 대상자 우선선정.단, 영양위험요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
- 나) 필요한 경우 같은 우선순위 안에서 추가 우선순위 부여할 수 있음.
 - 유아 중 1-2세 유아에게 더 높은 우선순위 부여
 -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미혼모가정, 3인이상 다자녀가구, 다문화가정 등에 더 높은 우선순위 부여
- 2) 대기자 명단 관리 시 동일 우선순위 내에서는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우선 순위가 부여됨.
 - ※ 대기자 수가 많은 경우, 대기자 등록일에 따라 일정 기간(예: 분기별, 혹은 상·하반기 등)으로 나누어 우선순위를 적용할 수 있음.
- 3)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미 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 중 우선순위의 재판정은 실시하지 않으며, 대상자별 자격 만료 기간까지 대상자격이 유지됨.
- 4) 임신부가 출산한 영아의 우선순위 적용은 표 8과 같음.
- 5) 대기자 명단에 등록된 유아나 출산·수유부가 대상자 등록 시점에 이미 자격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대상자로 등록하지 않음.
- 가) 영아나 임신부의 경우 유아나 출산 · 수유부로 전환하여 등록할 수 있음.
- 나) 또한 대기자로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난 경우, 대기자 등록 당시 영양 평가를 실시하였더라도 대상자 등록을 위해 자격재평가가 필요함.
 - ※ 대기자 접수 시 우선순위 원칙을 설명하고, 대기 중 자격기간이 만료되면 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 (대기자 등록양식 참조)

표 8. 사업참여 임신부가 출산한 영아의 우선순위 적용

구분		영양상태		우선순위		
1 4		000-11	O	병아	출산수유부	
		영양의학적 위험 보유	생후 6개월 미만	2	2	
	, , , ,	(빈혈, 저체중 등)	생후 6개월 이후	2 ²⁾	2	
ロのクのか	수유부 영양상태에	시계하이처미 ㅂㅇ	생후 6개월 미만	3	5	
모유수유아	-뉴아 영양상태에 근거 ¹⁾	식생활위험만 보유	생후 6개월 이후	5 ²⁾	3	
			영양위험이 없는 경우	생후 6개월 미만	3 ³⁾	티ㄹ
		· 경상기업이 없는 경구	생후 6개월 이후	자격재판정 결과적용	퇴록	
조제유아		-	생후 6개월 미만	3 ³⁾		
(생후 6개월 이전에 자격	후 6개월 영아	영양의학적 위험 보유 (빈혈, 저체중 등)	생후 6개월 이후	2	퇴록	
재평가를 근거	식생활위험만 보유	생후 6개월 이후	5	퇴록		
한 경우)		영양위험이 없는 경우	생후 6개월 이후	퇴록	퇴록	

- 1) 모유수유아의 경우 엄마의 위험요인 적용 가능. 그러나, 영아의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적용할 수 있으며, 엄마와 영아의 평가결과가 다른 경우 더 높은 우선순위 적용 가능.
- 2) 이 경우 영아는 생후 만 12개월까지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
- 3) 엄마에게 영양위험이 없더라도 생후 6개월까지 별도의 영양평가 없이 자동적으로 우선순위 3순위 적용.
- ※ 사업참여 임신부가 출산한 영아라고 할지라도 예산 상 즉시 대상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대기자로 분류할 수 있음.



💋 4. 보충식품비 자부담 대상 판정 및 적용

가. 보충식품비 자부담 비율 적용대상

- 1) 가구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대비 120%-200%인 경우에 대해 보충식품비의 10%를 자부담하도록 함.
 - 가) 최저생계비 대비 12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기준은 표 9와 같음

# O	자부단	대산	파전 응	위하	건강보험료	기주	(친 저 샌 계 비	대비	120%)
1/ 1/	/\! I 🖂		\frown		1'0	- I II	(もつ) (つ) ロコ	911 9 1	17 (1/01

				7/01)				
가구원 수 ¹⁾	최저생계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711년 1	12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639,100	18,168 (19,358) ²⁾	3,304 (3,520)	19,504 (20,782)				
2인	1,088,196	31,008 (33,039)	17,029 (18,144)	31,020 (33,052)				
3인	1,407,745	39,961 (42,578)	29,119 (31,026)	40,532 (43,187)				
4인	1,727,296	49,255 (52,481)	44,156 (47,048)	49,814 (53,076)				
5인	2,046,845	58,097 (61,903)	59,253 (63,134)	58,801 (62,652)				
6인	2,366,394	66,835 (71,212)	72,242 (76,974)	67,595 (72,023)				
7인	2,685,944	76,023 (81,003)	85,981 (91,613)	76,667 (81,688)				
8인	3,005,494	84,793 (90,347)	99,460 (105,975)	85,817 (91,438)				
9인	3,325,043	94,738 (100,943)	113,361 (120,786)	95,875 (102,155)				
10인	3,644,592	102,778 (109,510)	125,640 (133,869)	105,393 (112,296)				

- 1) 가족 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존 · 비속으로 한정
- 2) 괄호 안은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6.55%)를 합산한 금액이므로 합산고지서 제출 시괄호 안 기준 참조. 관리프로그램에는 합산금액 입력
- * 본 기준은 단일화된 건강보험료 판정기준 적용을 위한 보건복지사업 기준 심의위원회 (2010.12.7) 심의 결과에 따른 산정방식임.
 - 2) 보충식품비 자부담 비율 적용 제외대상
 - 가) 기초생활수급대상
 - 나) 차상위 계층
 - 다) 가구 건강보험료가 최저생계비 120%에 준하는 건강보험료 기준 미만일 경우

나. 자부담 적용 대상자 판정

- 1) 자부담 적용 대상자 판정은 대상자 등록 시 및 자격재평가 시 소득 (재)판정과 함께 실시함.
- 2) 자부담 적용 대상자 판정 후 다음 판정 시까지는 기 판정된 결과를 적용하며 자부담 적용 대상 변화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다. 자부담금 입금 방법

- 1) 대상자의 자부담금은 식품공급업체에 직접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식품공급업체와의 계약 시 자부담금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2) 식품공급업체에서 대상자로부터 자부담금을 수령하기 위해 CMS 계좌이체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나, 수령 방식은 시·군·구 보건소와 식품공급 업체와의 협의 하에 다른 방식을 이용할 수 있음.
- 3) 단, CMS계좌이체 또는 대량출금업무 이용계약 등을 도입하여 자체입금 관리가 가능한 보건소의 경우 보건소에서 자부담금을 관리 하여도 무방함.

라. 자부담금 납부일

- 1) 자부담 적용대상자는 자부담금을 매월(월 1회)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 납부일은 1차 식품발주일 10일 전까지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식품공급업체와 협의가 가능함.

마. 자부담 금액 산정

1) 식품패키지별 월 단가의 10%를 자부담금액으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 식품패키지 단가가 월별로 변화하는 경우
- 가) 동일한 패키지 내에서 단가가 변화하는 경우, 각 패키지별 연평균 월 단가를 산정함.
- 나) 패키지 1, 2의 경우에는 수유형태(모유수유·혼합수유·조제유) 별로 연평균 금액을 산출함.
- 다) 분유종류 등 세부 식품선택에 따라 대상자 개인별 총 식품비가 달라지는 경우, 개인별 자부담금액 산정에 반영하지 않고, 평균가를 산출하여 패키지별· 수유형태별로 동일한 금액을 산정함.
- 라) 패키지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예: 2→3 패키지로 변동) 변동된 패키지에 따른 자부담금액을 적용함.
- 3) 식품패키지 별 월 단가 산출 시, 배송비 등 보충식품비로 지출되는 모든 금액을 포함할 수 있음.

바. 자부담 미납에 대한 처리

- 1) 자부담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해당 월의 보충식품 공급을 중지할 수 있음.
- 2) 자부담금이 미납된 대상에 대해 사전 공지하여 입금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함.
- 3) 사전 공지 후 1차 식품발주일 5일 전까지 자부담료를 입금하지 않으면, 해당 월의 보충식품 공급을 중지할 수 있음.

사. 자부담 관련 기타 사항

- 1)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지방비(시·도, 시·군·구비), 후원금 및 기타 기금 등에 의해 자부담을 대체하도록 지원할 수 있음.
- 2) 자부담 대상인데 자부담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일부 물량을 조정할 수 있음.

비. 대상자 관리



1. 대상자격 인정기간

가. 대상자격 인정기간

1) 대상자격 인정기간은 다음과 같음.

구분	자격기간
영아	- 생후 만 12개월까지
유아	- 생후 만1세-만6세 미만(72개월 미만) - 6개월 간격 자격재평가
임신부	- 출산 후 6주까지
출산부	- 출산 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부	- 출산 후 12개월까지 - 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단, 혼합수유부의 경우 출산 후 7개월째부터 보충식품은 우유만 공급

2) 장기 참여 대상자에 대한 처리

- 가) 사업 참여 후 영양상태가 향상되지 않거나 대상구분이 변화되어 동일한 대상자가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보건소에 따라 최대 사업 참여 기간을 제한하거나 보충식품 공급기간을 제한할 수 있음.
- 나) 단, 퇴록 이전에 집중관리 및 타 기관·전문가 연계를 통해 장기 참여 대상자의 영양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 3) 영아와 임신부의 경우, 최소 6개월 사업 참여 가능
- 가) 영아와 임신부가 늦게 사업에 참여하여 상기한 자격기간까지의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 경우, 자격재평가 없이 최소 6개월간은 대상자격을 지속할 수 있음(구분변화 시 영아 → 유아, 임신부 → 출산수유부로 전환하여 참여).
- 나) 그러나 유아나 출산·수유부의 경우는 6개월 이하로 참여하였더라도 자격 만료일에 대상자격을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 '대상구분기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유아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즉 대상자 선정 시 만 66개월 이하인 유아로 대상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2. 대상자 자격인정 직후 실시할 조사 · 교육 내용

- □ 등록절차 완료
 - ㅇ 대상자 등록 서명용지에 확인 서명
- □ 대상자 교육 내용
 - ㅇ 영양교육의 중요성과 참여 의무 및 방법
 - 보충식품 이용 시 주의사항
 - ㅇ 기타 사업 관련 중요 공지사항
- □ 기본 조사
 - ㅇ 영양지식 및 태도 설문지
 - 1) 대상자 등록 절차
 - 가) 담당자는 반드시 대상자 서명용지의 각 항목에 대해 대상자에게 설명
 - 나) 대상자는 각 항목을 읽고, 각 항목에 확인 표시
 - 다) 서명용지 밑에 대상자와 담당자의 서명을 하여야 대상자 등록이 완료됨.
 - 2) 사업 참여 전·후의 비교를 위해 사업 참여 전에 실시해야 하는 조사를 실시함(영양지식과 태도 평가 등).

- 3) 모든 대상자나 보호자에게 영양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함을 알리고, 첫 교육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어야 함.
- 4) 대상자에게 보건소와 식품공급업체간의 약속된 식품 배달일을 알려주고, 보충식품 이용 시의 주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함. 특히 다음의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함.
- 가) 식품을 배달받았을 때 식품의 유통기한과 상태를 잘 살피고 이상이 있는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함.
- 나) 시유와 달걀, 당근은 반드시 받는 즉시 냉장 보관하도록 하며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교육함.
- 다) 멸균우유와 오렌지주스도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하도록 하며, 기타 식품도 위생적으로 보관하도록 교육함.
- 라) 분유의 공급 때문에 모유수유 대신 조제유를 선택하지 않도록, 모유수유를 우선적으로 권유함
 - ※ 완전모유수유부의 경우 보충식품 수혜기간이 더 길고, 식품 패키지 내용이 추가됨을 알려주어야 함.
- 마) 사업에서 제공하는 분유가 이전에 사용하는 분유와 다른 종류인 경우
 - 처음에는 새로운 분유를 기존의 분유에 소량만 첨가하여 사용하며,
 반응을 살피면서 점차 배합 비율을 달리하면서 새로운 분유에 적응할수 있도록 함.
 - 이상 반응을 보이는 경우 공급을 일시 중단하고, 일주일 후에 다시 소량을 시도하도록 하며, 계속해서 이상 반응을 보이는 경우 해당 보건소로 보고하도록 함.
 - ※ 이러한 적응 기간 중에는 분유의 양을 본래 공급해야 할 분량의 1/2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 바) 6-12개월 영아용 식품패키지 2에서 달걀은 전란을 공급하되, 영아에게는 반드시 노른자만 주도록 교육하여야 하며, 노른자도 소량씩 서서히 도입 하도록 함.

- 사) 시판분말이유식은 가능한 한 공급하지 않음.
 - 가정에서 이유식을 만들어 먹일 수 있도록 쌀, 달걀, 당근 및 감자를 공급하도록 대상자를 최대한 설득하여야 함.
 - 시판분말이유식의 경우 여러 가지 재료가 섞여 있는 것이므로 한 번에 많은 양을 줄 경우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음을 교육함.
- 아) 시판분말이유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쌀, 달걀, 당근 및 감자를 공급하지 않음.
 -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판분말이유식을 공급하되, 제품에 표시된 기준량의 1/2이상은 공급할 수 없음.
 - ※ 이 경우 가정식 이유식에 섞어 영양소를 보충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임을 설명하여야 함. 한 숟가락만 시도하고 반응을 살핀 후 점차 양을 늘려 나갈 것을 개인별로 교육하여야 함.



3. 대상자 자격변화 관리 및 영양상태평가

가. 평가내용

- 1) 영양상태 평가
 - 가) 영양·건강상태의 평가는 대상자 선정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실시함.
 - ① 신체계측: 신장 및 체중
 - ② 생화학적 검사: 빈혈 판정(헤모글로빈)
 - ③ 영양섭취상태조사: 24시간 회상법

- 2) 대상자의 영양지식 및 태도조사
- 가) 첨부된 설문양식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영양지식 및 태도를 사업 전 및 종료 후에 조사함.
- 3) 대상자의 만족도 조사
- 가) 첨부된 설문양식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개선방안을 모색함.
- 나) 각 보건소별로 첨부된 양식 이외에 대상자의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 4) 평가시기에 따른 조사 항목 요약

조사항목	조사 분류						
조사영국	사업 전 평가	사업 중 평가 ¹⁾	자격재평가 ²⁾	사업종료 평가			
신체계측							
생화학적 검사 (빈혈 판정)		생략가능					
영양섭취상태조사							
영양지식태도조사			영이→유아로 대상구분이 바뀌는 경우 조사				
만족도조사							

- ※ 기계기 :필수 조사 항목, 선택 조사 항목
- 1) 사업 중 평가는 보건소 자율에 따라, 교육·상담의 목적으로 약식으로 진행가능
- 2) 자격재평가 결과 사업종료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료 평가 항목 모두 조사

나. 자격재평가

- 1) 자격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가) 임신부가 출산수유부로 전환되거나 영아가 유아로 전환될 때, 자격재평가를 실시.
 - 대상구분 변화 시 식품패키지 변화 적용 방법은 '표 11 출산부 식품 패키지 적용방법(p80)' 참조
 - ※ 영양위험요인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신부가 출산·수유부로 전환되는 경우, 혹은 영아가 유아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대상구분 변화로 인해 우선순위가 변화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대상자격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예) 영아에서 유아로 전환되고 빈혈인 경우 우선순위는 2순위에서 4순위로 내려가지만, 우선순위 2나 3인 대기자가 있다고해도. 기존에 참여하던 대상자는 계속 대상자격이 유지됨.
- 나) 유아는 6개월 간격으로 자격재평가를 실시함.
- 다) 우선순위 3의 영아(엄마가 임신기에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사업참여 자격이 있어 자동으로 대상이 된 영아)는 생후 6개월까지만 자격이 인정되므로, 그 이전에 자격 재평가를 실시하여 자격지속 여부를 판정.
 - ※ 이 경우 엄마에게 더 이상 영양위험요인이 없거나 참여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엄마는 사업을 졸업하게 됨.
- 라) 위의 경우를 제외한 영아, 임신부 및 완전모유수유부에 대해서는 정해진 자격 만료기간까지는 자격재평가 없이 대상자격이 유지됨.
 - ※ 출산·수유부의 수유방법 변화로 패키지가 변화되는 경우 별도의 자격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마) 유산 또는 사산한 임신부에 대한 처리
 - 사업에 참여 중이던 임신부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별도의 영양평가
 없이 출산부로 패키지를 변화하여 출산 후 6개월까지 대상자격이 유지됨.

-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이 출산부로 참여하다가 임신을 한 경우에는 자격 재평가를 통해 임신부로 전환하여 등록할 수 있음.
- 2) 자격재평가와 관련한 사항
- 가) 자격만료일 이전 한 달의 기간 동안 자격재평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격재평가를 자격 만료일부터 한 달 이후까지 연기할 수 있음.
 - ※ (예) 임신부 자격재평가 기간은 출산 후 6주 이내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산후조리 등의 이유로 만나기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최대 출산 이후 10주까지 연기 가능함.
- 다) 사업에 참여한지 6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 최초 사업 참여일로부터 6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자격재평가를 유보하고 대상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 ※ 임신부의 경우 구분변화 시 출산·수유부 패키지로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자격재평가에 따라 졸업 및 자격연장을 검토함.
- 라) 약 3개월 간격의 중간평가 실시 권장 원칙에 따라 다)에 해당되어 자격재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라도, 대상구분 변화 이전의 사업 참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자격 구분 변화 시점에 중간평가를 실시할 것이 권장됨.
 - ① 임신기간 동안의 영양상태 향상을 파악하기 위해 자격재평가와는 별도로 출산 전에 중간평가를 실시할 것이 권장됨.
 - 가능하면 32~40주 사이에 실시하되, 대상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평가시기 결정
 - 임신부로서의 참여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생략가능
 - ② 영아에서 유아로 전환되는 경우에 영아로서 참여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전환 시점에 중간평가를 실시할 것이 권장됨.
- 마) 자격재평가 시기로부터 한 달 이내에 의료기관 혹은 보건기관에서 측정한 검사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자격재평가를 위한 측정치로 인정할 수 있음.

- 바) 정기적인 중간평가 일자와 자격재평가 일의 차이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반복 검사를 피하기 위해 별도의 중간검사를 생략함.
- 사) 영아에서 유아로 대상구분 변화 시 실시되는 자격재평가의 영양지식 및 태도 조사는 영아용, 유아용 2가지 설문지를 모두 조사함.

※ 즉, 영아의 사업 후 평가, 유아의 사업 전 평가를 동시에 실시

3) 자격재평가 평가 결과에 따른 처리

가) 대상자의 졸업

- ① 대상자격 만료 시의 최종평가 결과나 자격재평가 결과가 영양상태가 향상 되고 식생활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정되는 경우, 대상자는 사업 에서 '졸업'하게 됨.
- ② 대상자격 만료 기간까지 사업에 참여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관계없이 프로그램을 졸업하게 됨. 단, 평가결과 영양위험이 남아 있는 경우 1회(6개월간)에 한해 영양교육에는 참여하도록 할 수 있음(대상자격인정기간 p41참고).
- ③ 앞서 '대상자격 인정기간'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상자의 영양상태가 향상되지 않아 참여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길어지는 경우, 보건소에 따라 총참여기간을 제한할 수 있음.
 - ※ 필요한 경우 보건소 진료실 및 의료기관 연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 권장됨.

나) 자격재평가 결과로 대상자격 지속

- ① 자격재평가 결과 영양문제가 남아있는 경우 대상자격을 유지하며, 평가 결과를 이후 영양교육·상담에 반영하여 재인정기간 내에 영양위험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함.
- ② 충분한 기간 동안 사업에 참여하였는데도 영양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그 예는 다음과 같음.

- 문제 해결을 위한 집중관리 및 상담
-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과의 연계
- ③ 자격재평가 결과 영양위험요인이 해소된 경우라도, 식생활 개선 정도가 충분치 않거나, 즉시 퇴록하면 영양문제를 다시 갖게 될 것으로 판단 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격기간을 1회(6개월) 연장하거나 교육에 참여 하도록 할 수 있음.

다. 사업 중간 평가

- 1) 대상자 영양상태 변화를 파악하여 교육 및 상담에 참고 하기 위해, 약 3개월의 간격을 두고 보건소 자율에 따라 사업 중간 평가를 실시할 것을 권장함.
- 2) 총 사업 참여 기간이 만 5개월 미만인 경우는 사업 중간 평가를 생략할 수 있음. 즉, 대상자의 영양상태 향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정기적인 중간 검사 일자와 자격재평가일 또는 최종 평가일의 차이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반복 검사를 피하도록 별도의 중간검사를 생략함.
- 3) 중간평가는 대상자 선정 시 각 대상자가 가지고 있었던 영양문제를 중심으로 측정함.
- 가) 중간평가에서는 혈중 헤모글로빈 검사는 생략할 수 있음.
- 나) 영양섭취상태조사는 모든 대상자의 중간평가에 포함하여 식생활의 문제점을 파악할 것이 권장되며, 약식으로 조사할 수 있음.
- 4) 중간평가 결과는 대상자 교육 및 상담에 반영하여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맞춤형 교육이 되도록 함.

□ 영유아 및 임신부의 대상자격 및 자격재평가 일정

대상		40	사업 참여개월 수
구분	대상상세구분	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환
0	사업 전	대상구분	영아 → → → → → → → → → → 유마 · 생후 12개월까지 자격인정
	자격재평가를 거쳐「영아」로	인정기간	
NI AI	참여	자격재평가	1 1 가 유아로 전환 시 자격재평가
영아	대상자로 참여한	대상구분	영아 → → → → → → → → → → → 유아 · 생후 6개월까지 자격인정
	임신부가 출산한	인정기간	영양위험'판정 시 생후 위형 12개월까지 자격인정 시 자격재평가로 영양위험
	「영아」(우선순위॥)	자격재평가	생후 6개월 내 1회 1 요인 판정 시 생후 12개월까지 자격인정
	사업 전 영양평가에	대상구분	유아 → → → → → → → → → → → → 6개월 간격 마다
	의해 「유아」로	인정기간	'영양위험'판정 시 위치 자격재평가 실시 자격재평가 실시 나는 72개월에 자격 소멸
유아	대상자 선정	자격재평가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गण	영아로 6개월 미만	대상구분	영아 → → → 유아 → → → → → → → → → · 참여일로부터 6개월
	참여 후 [영아 -#	인정기간	'영양위험'관정 시 위함 시절까지 자격재평가 사건
×	유어로 전환된 자	자격재평가	1 사격재 반성 /영어중료평가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사업 전 임신부 「임신부」로	대상구분	- 출산 후 6주까지 임신기간 → → → → → → → → 출산이후 자격인정 - 임신기간 끝나기 전
임신부		인정기간	위협판정 중간영양평가(임신부 세 종료평가) 실시
	대상자 선정	자격재평가	↑ ★ ↑ 중간 명가 <mark>자격재 명가 실시 ↑ 출산 후 6주(늦어도 8주) 안에 자격재평가 실시 ↑ 출산 후 6주(늦어도 8주) 안에 자격재평가 실시</mark>

※ 중간 평가 일정은 표시하지 않았음

: 기본 자격인정기간

'영양위험' 판정 시 다음 *개월 자격인정 , ^{위험 판정 시}: 자격재평가 결과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는 기간

↑ 또는 ^{자격 재평가}: 자격재평가 기간 (기간 중 1회 자격재평가 실시)

↑: 자격재평가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사업종료평가 또는 중간영양평가

□ 출산수유부의 대상자격 및 자격재평가 일정

대상			사업 참여개월 수			
구분	대상상세구분	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환	비고		
Tlot X3		대상구분	모유수유부 → → → → → → → ● 퇴록	· 출산 후 12개월까지 자격을 부여함 · 혼합수유부: 출산 후 7개월째부터 식품은		
사업 전 「완전모유수유부나 혼합수유부」로	「완전모유수유부나 혼합수유부」로	인정기간		우유만 공급 · 자격지평가 없음 · 사업종료평가 실시 · 참여기간이 6개월이		
	대상자 선정	영양평가	1 1	되지 않아도 자격 만료기간이 되면 자동 퇴목됨		
	사업 전	대상구분	출산부→ → → → 회록	·출산부 : 출산 후 만 6개월까지 자격을		
	「출산부」로 대상자	인정기간		부여함.		
	선정	사업종료평가	1 1	· 자격재평가 없음 · 사업종료평가 실시		
	임신부로 3개월 미만	대상구분	임신 기간 출산이후 → → → → → → → →	· 사업 참여일로부터 6개월까지 자격		
	함면구도 3개월 이런 참여 후 I임신부 +* 수유뷔로의 전환자	인정기간	'영양위함' 판정 시 자격 인정	지평가 있다. 지평가 연기 가능 · 수유부 자격만료 시 사업종료평가 실시		
		자격재평가	1 자격재평가			
출산		대상구분	임신 기간 출산이후 → → → 퇴록			
수유부		인정기간	위험 완정 시	· 사업 참여일로부터 6개월까지 자격 재평가 연기 가능		
	출산뷔로의 전환자	자격재평가	1 자격재평가 1			
	임신부로 3개월이상	대상구분	임신기간 $ ightarrow$ 출산이후 $ ightarrow$ $ ightarrow$ $ ightarrow$	· 자격지평가결과 영양 위점요인 보유시 모유		
	6개월미만 참여 후 임신부 ->> 출산	인정기간	'영양위함' 편정 시 자격 인정	수유부는 출산후 12개월 까지(출산부는 6개월		
	수유뷔로의 전환자	자격재평가	1 ↑ 지역 중건 (재野)	까지) 자격인경 · 출산수유부 자격종료시 종료평가 실시		
	사업 중	대상구분	모유수유부 → 출산부 퇴록	· 출산 후 만 6개월 이전 전환시는 만 6개월까지		
IS 출	완전수유부 ->	인정기간		선완시는 안 6개월까지 자격인경 · 출산 후 만 6개월 이후		
	출산뷔로의 전환자	사업종료평가	1 1	전환시는 즉시 자격 소멸		
	사업 중	대상구분	완전모유수유부 → 혼항모유수유부 퇴록	· 혼합수유부: 출산 후		
	완전수유부 → 혼합수유부]로의	인정기간		7개월째부터 식품은 우유만 공급 관계관평리 작용		
	전환자	사업종료평가	1	· 자격재평가 없음 · 사업종료평가 실시		

: 기본 자격인정기간

'영양위험' 판정 시 자격 인정 , ^{위험 판정 시}: 자격재평가 결과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는 기간

 자격

 또는
 재평가
 : 자격재평가 기간 (기간 중 1회 자격재평가 실시)

↑: 자격재평가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사업종료 시 영양평가

라. 대상자의 졸업 및 퇴록

- 1) 사업에서 졸업하게 되는 경우
 - 가) 대상자의 자격재평가 결과 영양상태가 향상되고, 더 이상 식생활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정되는 경우
 - 나) 대상자격 기간이 만료된 경우
 - ※ 영아나 임신부의 경우 자격만료기간이 되었을 때 자격재평가 결과에 따라 졸업, 혹은 영아→유아, 임신부→출산·수유부로 전환.
 - ※ 유아나 출산·수유부의 경우 대상 자격만료일까지 사업에 참여한 경우,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퇴록. 단, 평가결과 영양위험이 남아있는 경우 1회(6개월간)에 한해 영양교육에는 참여하도록 할 수 있음.
- 2) 기타 대상 자격의 취소
- 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격인정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
 - ① 본인이 사업 참여를 중단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 ※ 본인의 희망 등에 의해 사업 중간에 대상자격이 취소되는 경우,3개월 이상 사업에 참여한 경우라면 사업종료평가를 실시
 - ② 3회 이상 사전 연락 없이 보충식품이나 영양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 ※ 단, 자격 취소 이전에 연락을 취하여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설득하여야 함.
 - ③ 3회 지각을 1회 결석으로 간주하는 등 지각에 대한 규칙 적용 가능
 - ④ 자격재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 ⑤ 소득을 허위로 보고하여 대상자격을 인정받았음이 밝혀진 경우
 - ⑥ 관할 보건소에서 수혜받은 식품에 대해서 자(타)의로 식품을 판매한 경우
- 3) 졸업ㆍ퇴록 시의 처리
- 가) 대상자 자격유효기간 만료의 통보
 - 자격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졸업ㆍ퇴록이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혜

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함.

나) 졸업·퇴록 시에는 영양평가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마. 퇴록한 대상자의 재등록

- 1) 퇴록 후 영양문제가 다시 악화되면 해당 보건소의 대기자 접수상황 및 보건소의 여건에 따라 1회에 한해 대상자로 재등록할 수 있음.
 - ※ 재등록하기 위해서는 퇴록 후 최소 6개월 이상이 경과되어야 함.(예시) 수유부로 퇴록한 대상자가 재임신하는 경우, 퇴록 후 6개월이 경과되고 영양문제가 발견되면 재등록 가능
 - ※ 타 지역 보건소 참여 경력을 포함하여 재등록 횟수를 산정함.

□ 퇴록 처리 시의 예외조항

- 퇴록예정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회(6개월간)에 한해 영양 교육에는 참여하도록 할 수 있음.
- 대상자격만료일까지 영양위험이 남아있는 경우
- 영양위험요인이 해소되었으나, 즉시 퇴록하면 영양문제를 다시 갖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퇴록자의 재등록 조건

- 퇴록 후 6개월 이상이 경과되어야 함
- 1회에 한해 대상자로 재등록 가능
- ㅇ 영양위험요인 등 대상자격여부 재판정

바. 타 지역과의 연계

- 1) 주소지가 관할 보건소 외의 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 가) 이사 온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에서 동 사업을 수행 중이라면 이사 온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에서 대상자격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연계

- 나) 타 지역에서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가 해당지역으로 이사 온 후 영양 플러스사업의 참여를 신청한 경우, 해당보건소에서는 공문을 통해 이사 전 지역의 보건소로 대상자 관련 서류를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관련서류를 송부하여 이사 온 대상자가 즉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 ※ 예산상의 이유로 즉시 참여시키기 어려운 대상은 대기자 명단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여야 함.
- 다) 이사 여부와 관계없이 이사 전 지역의 소득판정 및 영양평가결과를 유지하여, 당초의 사업 참여개시일 및 구분변화 일정에 맞추어 소득재판정 및 자격 재평가를 실시함.
- 라) 기타 자부담 적용을 비롯한 모든 규정은 이사 온 지역의 사업운영 원칙을 따르도록 함.



💋 4.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 1) 자격기준에 사용된 서류나 결과자료를 개인별로 파일에 보관하고 대상자 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함.
- 2) 대상자 개인자료의 기록을 위해서는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그러나 해당 내용을 모두 포함되는 한 보건소 별로 세부사항을 추가 •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 3) 대상자 개인에 관한 자료는 사업 대상자격 판정 및 사업진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며, 개인 자료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Ⅲ. 영양교육 및 상담



1. 영양교육 실시의 원칙

가. 개요

- 방법: 개별 상담, 집단 교육, 가정방문교육
- 보건소 별 지역특성 및 대상자 특성에 따라,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한 적절한 영양교육 계획 수립
- 최소한 1개월에 1회 이상 대상자와 접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부득이한 경우 최소 2개월에 1회 이상 대면 교육을 실시
 - 1) 영양플러스사업의 영양교육 목표 및 내용
 - 가) 영양교육·상담을 통해 대상자 개개인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대상자가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함.
 - 나) 대상범주 별로 바람직한 식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방법과 모유수유를 촉진 ·지원 하기위한 내용이 포함됨.
 - 2) 영양교육 대상
 - 가) 프로그램의 대상자격이 있는 임신부, 수유부 및 출산부
 - 나) 영아 및 유아의 부모・보호자
 - 다) 교육이 가능한 유아의 경우 가능한 한 유아 대상자 본인까지 포함

3) 영양교육 방법

가) 영양교육은 개별 상담과 집단 교육 및 가정방문교육을 적절히 병행하여 실시하며 각 보건소에서는 사업 초기에 이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한 영양 교육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4) 영양교육 주기

- 가) 최소한 1개월에 1회 이상 대상자와 접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나) 단, 지역사회의 상황을 감안할 때 이의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소 2개월에 1회 이상 대상자와 접촉하도록 함.

5) 기타 영양교육 원칙

- 가) 영양교육의 제공 및 참여 상황에 대하여 기록하고, 개인별 파일에도 영양 교육 및 상담의 참여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함.
- 나) 영양교육 및 상담은 모든 대상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함.
- 다) 대상자의 행동 변화를 촉진하는 피교육자 중심의 교육이 되도록 함.
- 라) 효과적인 영양교육을 위해 연간 교육 계획 및 각 교육별 교육안을 작성하여 체계적인 교육이 되도록 함.

나. 단체교육

- 소그룹 교육을 권장함.
- 1회 교육 시간은 20-30분 정도가 적당.
- 이론교육과 함께 대상자가 참여하는 activity 포함.
- 개인 상담을 병행할 것을 권장함.
- 직장인 대상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
- 1) 단체교육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사람을 한 번에 교육하기보다는, 가능한 여러 회로 나누어서 실시함으로써 소그룹에 대한 영양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함.

- 2) 직장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야간이나 주말교육 실시 등 직장인을 위한 교육 이나 상담시간이 계획되어야 함.
- 3) 모든 대상자가 영양교육에 참여하도록 하며, 참여하지 않는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 ※ 대상자가 사전에 연락 없이 무단으로 3회 이상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대상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 4) 1회의 교육시간은 강의시간이 약 20-30분, activity가 약 20분 정도가 되도록 계획하는 것을 권장함.
- 5) 교육 및 상담에 의한 전반적 대상자 관리는 보건소의 본 사업 전담영양사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1회성의 교육이 아닌, 사업기간동안 지속성을 갖고 진행되는 교육이 되도록 함.
- 6)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초빙강사를 이용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그 예로는 모유수유, 이유식 조리실습, 유아 구강교육 등이 포함됨.
- 7) 단체교육과 더불어 개인 상담을 병행하여, 개별 대상의 영양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
- 8) 1회의 교육에서 대상자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양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사전에 계획하여,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며, 반복적인 교육이 되도록 계획함.
- 9)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보다는 대상자의 반응을 유도하고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소그룹 활동을 포함하도록 계획하여야 함. 소그룹 활동에는 식단·이유식 계획, 학습내용 실천상의 어려운 점, 토의 등이 포함됨.
- 10) 교육 시 대상자와 시선을 맞추고 대상자의 반응을 고려하면서 양방향의 교육이 되도록 배려하여야 함.

- 11) 매 회 교육에 대상자가 꼭 기억해야 할 주요 정보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교육을 끝맺기 전에 이를 다시 한 번 강조하도록 함.
- 12) 참가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과 언어로 교육하며 참가자의 영양적 요구와 흥미, 교육 정도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함.
- 13) 자녀를 동반하여 참석하는 경우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하여야 함.
- 14) 교육 전에 교육 리허설을 실시하고 교육 방법에 대해 담당자들 간 의견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함.
- 15) 안전한 교육이 되도록 사전에 교육장소를 점검하여야 함(p118 참고).

다. 개별상담

- 1) 대상자의 식생활 변화를 촉진하고 대상자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영양지도를 제공하기 위해, 단체교육 위주의 영양교육보다는 개인 상담을 활성화하는 것이 적극 권장됨.
- 2) 개별상담은 사업 전담영양사에 의해 실시되어야 함. 상담의 경험이 없는 영양사의 경우, 사전에 경험 있는 영양사에 자문을 구하거나 상담에 참관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함.
- 3) 정기적 개별상담시간을 사전에 공지하고 대상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함.
- 4) 개인상담의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함.
- 5) 개별상담은 대상자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되고 조용한 환경에서 실시하여야 함.
- 6) 상담 시작 전에 이전 상담시의 상담 내용을 살펴본 후 해당 월의 대상자별 상담의 목표를 설정하도록 함.

- 7) 상담 시에는 일방적인 정보의 전달이나 대상자의 잘못을 지적하는 태도 보다는 대상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보임 으로써, 편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함.
- 8) 매 회 상담을 시작할 때 부드러운 대화가 되도록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한 후 먼저 대상자 주변 환경의 변화나, 영양상태의 변화, 혹은 식생활 패턴의 변화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파악하고 나서 상담을 시작하도록 함.
- 9) 상담 시에는 「인사말 → 대상자 상태 파악 → 대상자와 함께 이 달의 목표 설정 → 목표 달성을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 → 이 달의 목표 재확인 → 다음 상담일자 계획」의 순서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함. 단, 대상자의 필요에 맞게 조정하여 진행함.

라. 가정방문 교육

- 1) 대상자 선정 후 가능한 최소 1회 이상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가정의 상황을 파악하고 보충식품의 이용에 대한 교육 및 기타 개별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권장함.
- 2) 방문 시에는 '보충식품 보관 및 이용실태 기록지' 및 그 외 교육에 필요한 도구를 지참함.
- 3) 가정방문은 보건소 타 부서 및 지역 내 대학, 기타 인력 등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함.
 - ※ 즉, 타 인력을 통해 정해진 양식에 따라 기본적인 식품보관상황 등을 조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의 경우 전담영양사를 포함한 본 사업 담당자가 재방문하는 방식도 고려될 수 있음.
- 4) 가정방문교육 담당자(비정규직 영양사 포함)의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기준에 근거하여 지급하여야 함.



2. 영양교육 및 상담의 내용

가. 영양교육 및 상담의 주요 내용

- 1) 각 보건소에서는 영양교육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지침 내용을 바탕으로 영양 교육을 실시함.
- 2) 중앙배포 교육자료의 내용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며, 이와 배치되는 내용을 교육하지 않도록 함.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및 한국건강증진 재단(영양사업팀)과 협의함.
- 3) 영양플러스 사업의 교육에 포함하도록 권장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영양플러스사업 참여 방법에 대한 교육
 - ② 보충식품 이용 방법에 대한 교육
 - ③ 대상구분별 식생활・영양관리
 - •영아 이유식 도입 및 진행방법
 - ·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의 식생활·영양관리
 - ·대상별 식생활지침
 - ④ 영양문제 해소를 위한 식생활관리
 - 빈혈, 저체중, 비만, 편식
 - ⑤ 식사계획방법(식사구성안 활용)
 - ⑥ 모유수유 촉진
 - 가) 다음에 제시하는 교육 내용 중 필수 항목은 반드시 교육 및 상담에 포함 되어야 할 내용이고, 선택 항목은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한 내용임. 단체 교육과 상담을 적절히 이용하여 필수항목이 교육되도록 함.
 - 나) 모유수유 촉진을 위한 교육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며, 모유수유 전문가의 연계에 의한 대상자 교육 및 대상자 상담을 추진하는 것이 권장됨.

다) 한 주제에 포함된 내용을 한 번의 교육에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1회의 교육 내용은 너무 길지 않도록 적절한 분량으로 계획하여야 함.

□ 교육내용 별 권장 교육 방식

분 류	교육 내용	교육 방식(필수/선택)
기본교육 (모든 대상)	1 영양플러스 사업 참여방법 2 보충식품을 이용한 음식 3 식사계획방법(식사구성안) 4 식품위생	(필수) 단체교육 (필수) 단체교육(배포자료 이용) (필수) 단체교육+실습 (선택) 단체교육
주요 영양문제별 교육	1 빈혈 (모든 대상) 2 저체중(영아, 유아) 3 비만 (영아, 유아) 4 편식 (영아, 유아)	(필수) 소그룹 단체교육+activity (필수) 소그룹 단체교육+activity (필수) 소그룹 단체교육+activity (필수) 소그룹 단체교육+activity
임신부 식생활/ 영양 관리	 임신부 식생활 지침 임신 시 변화 임신 시 체중변화/영양관리 임신 중 위험요인 모유수유 산후조리 	(필수) 단체교육+소그룹 토의, 개인상담 (선택) 단체교육 (필수) 개인상담+일부 단체교육 (필수) 단체교육 (필수) 전문가 단체교육+개인상담 (선택) 단체교육
출산부 및 영아 식생활/ 영양관리	 1 수유부 및 영아 식생활 지침 2 모유수유 3 이유보충식 도입 원칙 "우리 아이 무엇을 얼마나 먹일까?" 4 이유식 만들기 	(필수) 단체교육+소그룹 토의, 개인상담 (필수) 전문가 단체교육+개인상담 (필수) 개인상담+일부 단체교육 (필수) 단체교육+조리실습
유아 식생활/ 영양관리	1 어린이 식생활 지침 2 유아 영양관리 3 우리 아이 간식으로 무엇이 좋을까? 4 우리 아이 좋은 식습관 만들기 5 치아 관리	(필수) 단체교육+소그룹 토의, 개인상담 (필수) 개인상담+단체교육 (필수) 개인상담+단체교육 (필수) 개인상담+단체교육 (선택) 타 사업 연계/전문가 초청교육
4-5세 유아용 교육자료(예시)	1 식품 이름과 유래 알기 2 식사구성탑 알기 3 식품위생-손씻기 4 기타(간식, 편식, 식사예절 등)	단체교육+실습활동

□ 기본 교육 (모든 대상)

주제	1.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필수)
교육대상	모든 사업 대상자 및 보호자
교육내용	 임산부와 영유아 영양의 중요성 및 사업개관 설명 영양플러스사업 대상 자격 보충식품 패키지 내용 보충식품 전달 방법 보충식품 이용관련 주의사항 보충식품을 받았을 때 하여야 할 일 영양교육 및 상담의 중요성 보건소별 영양교육 계획 및 참여방법 정기적인 영양평가 참여 방법 대상자 서명용지 내용 설명 끝맺음
중앙배포 교육자료	· 파워포인트 자료· 홍보용 동영상,· 사업소개 소책자/사업내용 소개 간지· 대상자 등록 서명용지

주제	2. 보충식품을 이용한 음식 (필수)
교육대상	모든 사업 대상자 및 보호자
교육내용	보충식품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음식
중앙배포 교육자료	· 파워포인트 자료

주제	3. 식사계획방법 (식사구성안 익히기) (필수)
교육대상	모든 대상
교육내용	1. <1차교육> 균형있는 식사의 의미와 식품군 알기 □ Activity: •나의 밥상 차리기(퀴즈) • 빙고게임(곡류군, 어육류군, 야채 및 과일군) • 식품구성탑 모형으로 식품군 알기 퀴즈 • 식단 구성하기(음식종류만) 2. <2차교육> 식품군별 1회 분량 익히기 □ Activity: •식품군별 1회분량 퀴즈 •식단 구성하기(음식종류만) 3. <3차교육> 하루에 먹을 양 알기와 식단구성하기 □ Activity: •시트지 이용 식단 작성(분량까지 계획) • 맛있는 밥상을 차려볼까요?, 맛있는 간식을 골라볼까요? ※ 약 3회에 나누어 교육하며, 설명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간단한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중앙배포 교육자료	 · 식사구성안 교육 kit(교안 + 파워포인트 자료 + 소책자(리플렛) + activity 자료) · 식단계획을 위한 시트지 · 기타 식사구성안 상담/실습용 자료 ※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형 및 기타 보조자료를 적극 이용함. ※ 한국영양학회에서 2010년 한국인의 영양섭취기준에서 발표한 식사구성안을 기준으로 교육

주제	4. 식품위생 (선택)
교육대상	모든 사업 대상자 및 보호자.
교육내용	가정에서 식품을 다룰 때의 식품위생관리 ※ 여름철, 혹은 영아 이유식 조리 교육에서 특히 중요
중앙배포 교육자료	· 파워포인트 자료

□ 주요 영양문제별 교육

주제	1. 빈혈 (필수)
교육대상	빈혈이 있는 대상자 및 보호자는 필수 모든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권장
교육내용	1 소개 및 개관: 빈혈이란? 2. 빈혈의 원인 및 증상 3 빈혈의 예방·관리를 위한 식생활 □ Activity: • 다음 식단에 들어가면 좋을 음식은? • 빙고 게임(철, 비타민 C가 풍부한 식품 찾기) • 빈혈에 좋은 식단 짜보기
중앙배포 교육자료	· 주요 영양문제별 교육 kit(교안 + 파워포인트 자료 + 소책자(리플렛) + activity 자료)

주제	2. 저체중 (필수)
교육대상	저체중인 영아 및 유아 보호자는 필수 모든 영아 및 유아 보호자에게 권장
교육내용	1 소개 및 개관: 2 저체중의 원인 및 문제점 3 저체중의 예방/관리를 위한 식생활 □ Activity(보호자): • (개인활동 및 토의) 확인해 보세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 엄마의 결심 서약 □ Activity(4-5세 영유아): • 맛있는 밥상을 차려볼까요?, • 맛있는 간식을 골라볼까요? (음식 사진으로 상차리기)
중앙배포 교육자료	· 주요 영양문제별 교육 kit(교안 + 파워포인트 자료 + 소책자(리플렛) + activity 자료)

주제	3. 비만 (필수)
교육대상	비만인 영아 및 유아 보호자는 필수 모든 영아 및 유아 보호자에게 권장
교육내용	1 소개 및 개관: 2. 비만의 원인 및 문제점 3 어린이 비만예방/관리의 유의점 4. 비만 예방을 위한 식생활 및 영양신호등 □ Activity: • 비만관련 OX 퀴즈 • 엄마의 결심 서약 • 비만 예방을 위한 영양신호등
중앙배포 교육자료	· 주요 영양문제별 교육 kit(교안 + 파워포인트 자료 + 소책자(리플렛) + activity 자료)

주제	4. 편식 (필수)
교육대상	모든 영아 및 유아 보호자
교육내용	1 소개 및 개관: 편식이란? 2 편식의 원인 및 문제점 3 편식,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편식하는 아이의 올바른 식사법 □ Activity(보호자): • 소그룹토의: 이야기카드 이용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 엄마의 결심 서약 • 비만 예방을 위한 영양신호등 □ Activity(4-5세 유아): • 친구들아~ 우리한번 먹어보자. '내가 먹어본 식품에 동그라미(O) 해 보세요'
중앙배포 교육자료	· 주요 영양문제별 교육 kit (교안 + 파워포인트 자료 + 소책자(리플렛) + activity 자료)

□ 임신부 식생활/ 영양관리

주제	임신부 1. 임신 시 변화-"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선택)
교육대상	사업대상인 임신부
교육내용	 소개 및 개관 엄마와 아기의 몸의 변화에 대하여 임신 중 체중변화 (임신 중 체중변화 내용은 필수) 끝맺음
중앙배포 교육자료	· 파워포인트 자료

주제	임신부 2. 임신부 식생활 지침 (필수)
교육대상	사업대상인 임신부
교육내용	 임신부 식생활 지침이란? 임신부 식생활 지침 항목별 내용알기 끝맺음 ※ Activity: 실천하기 어려운 점 및 해결방안 경험 공유를 위한 소그룹 토의 ※ 몇 회 반복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장함.
중앙배포 교육자료	· 파워포인트 자료· 소책자· 냉장고 부착용 자석

주제	임신부 3. 임신 중 식생활/영양관리 (필수)
교육대상	사업대상인 임신부
교육내용	1. 소개 및 개관 2. 임신 중 영양필요량 3. 임신 중 건강한 식생활 4. 임신 중 증상 5. 끝맺음 ※ 개인 상담을 통해 개인별 문제 파악 ※ 빈혈예방은 별도 자료 참조
중앙배포 교육자료	・파워포인트 자료 ・임신부 상담용 체크리스트 ※ 참고자료: 명지대학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영양플러스사업 상담 지침서≻임신부

주제	임신부 4. 임신부 중 위험요인 (필수)
교육대상	사업대상인 임신부
교육내용	1. 소개 및 개관 2. 알코올 섭취의 문제점 3. 흡연의 피해 4. 임신 시 영양보충제 복용의 주의점 5. 끝맺음 ※ 개인 상담을 통해 개인별 문제 파악
중앙배포 교육자료	 ・파워포인트 자료 ・임신부 상담용 체크리스트 ※ 참고자료: 명지대학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영양플러스사업 상담지침서>─임신부

주제	임신부 5. 모유수유 (필수)
교육대상	사업대상인 임신부
교육내용	1. 소개 및 개관 2. 모유수유의 이점 3. 모유수유 자세 4. 모유수유의 실패요인 파악과 모유수유 성공법 5. 끝맺음 ※ 교육 시 마다 수유계획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반복하고, 상담을 병행하여 강조되어야 하는 내용임.
중앙배포 교육자료	· 파워포인트 자료 및 매뉴얼 ·리플렛 (도안) ※ 전문가 초청 교육을 병행하고, 지속적 연계체계를 갖추는 것이 권장됨.

주제	임신부 6. 산후조리 이렇게 해요 (선택)
교육대상	사업대상인 임신부
교육내용	 소개 및 개관 1주에서 8주 동안의 산후조리 산후 조리 시 주의점 끝맺음
중앙배포 교육자료	· 파워포인트 자료

□ 출산부 및 영아 식생활/ 영양관리

주제	출산·수유부 및 영아 1. 수유부 및 영아 식생활 지침 (필수)
교육대상	사업대상인 출산수유부 및 영아 보호자
교육내용	 4생활 지침이란? 수유부 식생활 지침 항목별 내용알기 영아 식생활 지침 항목별 내용알기 끝맺음 Activity: 실천하기 어려운 점 및 해결방안 경험 공유를 위한 소그룹 토의 몇 회 반복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장함.
중앙배포 교육자료	・파워포인트 자료 ・소책자 ・냉장고 부착용 자석

주제	출산·수유부 및 영아 2. 모유수유 (필수)
교육대상	사업대상인 출산수유부 및 영아보호자
교육내용	1. 소개 및 개관 2. 모유수유의 이점 3. 모유수유 자세 4. 모유수유의 실패요인 파악과 모유수유 성공법 5. 끝맺음
중앙배포 교육자료	 파워포인트 자료 및 매뉴얼 리플렛 (도안) * 전문가 초청 교육을 병행하고, 모유수유 과정의 문제에 대한 상담을 위해 지속적 연계체계를 갖추는 것이 권장됨.

주제	출산·수유부 및 영아 3. 이유보충식 도입 원칙 - "우리 아이 무엇을 얼마나 먹일까?"(필수)
교육대상	사업대상인 출산수유부 및 영아 보호자
교육내용	1. 소개 및 개관 2. 이유보충식의 중요성 3. 이유보충식 언제 시작하나요? 4. 이유보충식 무엇을 주어야 하나요? 5. 이유보충식 어떻게 주어야 하나요? 6. 이유보충식-"훈련"으로서의 의미 7. 이유보충식에서 부모의 역할 8. 끝맺음 ※ 개인상담 병행 권장 ※ 빈혈예방 및 관리는 별도 자료 이용
중앙배포 교육자료	 · 파워포인트 자료 · 상담용 소책자 "건강한 아이를 위한 현명한 엄마되기" · 상담용 체크리스트 ※ 참고자료: 명지대학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영양플러스사업 상담지침서>-임신부 ※ 약 2-3회에 나누어 교육

주제	출산·수유부 및 영아 4. 이유보충식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필수)
교육대상	사업대상인 영아 보호자
교육내용	1. 소개 및 개관 2. 이유보충식 쉽게 만드는 방법 3. 월령별 이유보충식 만들기 · 준비기(4-5개월) · 중기(8~10개월) · 후기(10~12개월) · 완료기(12개월 이후) 4 이유보충식 만들 때 주의할 점 5. 끝맺음
중앙배포 교육자료	 ・파워포인트 자료 ・상담용 소책자 "건강한 아이를 위한 현명한 엄마되기" ・이유식 일기장 ※ 이유식 조리 시연교육 등의 방법을 병행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유아 식생활/영양관리

주제	유아 1. 어린이 식생활 지침 (필수)
교육대상	유아 보호자
교육내용	 4생활 지침이란? 어린이 식생활 지침 항목별 내용알기 끝맺음 Activity: 실천하기 어려운 점 및 해결방안 경험 공유를 위한 소그룹 토의 몇 회 반복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장함.
중앙배포 교육자료	・파워포인트 자료 ・소책자 ・냉장고 부착용 자석

주제	유아 2. 유아 영양 (필수)
교육대상	유아 보호자
교육내용	 소개 및 개관 어린이 성장곡선 우리아이 영양권장량 다양한 식품을 먹여요. 끝맺음 변혈, 저체중, 비만 내용은 별도 자료 이용
중앙배포 교육자료	· 파워포인트 자료 · 상담용 소책자 "건강한 아이를 위한 현명한 엄마되기" 12-24개월, 2-5세

주제	유아 3. 우리 아이 간식으로 무엇이 좋을까? (필수)
교육대상	유아 보호자
교육내용	1. 소개 및 개관2. 간식의 필요성3. 간식 줄 때 주의점4. 간식으로 좋은 식품5. 끝맺음
중앙배포 교육자료	· 파워포인트 자료 · 상담용 소책자 "건강한 아이를 위한 현명한 엄마되기" 12-24개월, 2-5세

주제	유아 4. 우리 아이 좋은 식습관 만들기 (필수)
교육대상	유아 보호자
교육내용	1. 소개 및 개관 2. 까다롭게 먹는 우리 아이 / 편식 3. 부모가 지켜야 할 점 4. 아침식사하기 5. 끝맺음 ※ 편식관련 내용은 별도 자료 이용
중앙배포 교육자료	· 파워포인트 자료

주제	유아 5. 치아 관리 (선택)
교육대상	유아 및 유아보호자
교육내용	 소개 및 개관 치아가 났어요. 충치는 왜 생길까요? 올바른 양치질 "즐거운 양치시간!" 엄마, 아빠와 함께 해요. 끝맺음
중앙배포 교육자료	· 파워포인트 자료 ※ 전문가 초청 교육으로 대체가능

□ 4-5세 유아 대상 교육

주제	4-5세 유아 대상 교육
교육내용 (예시)	 식품 이름과 유래 알기 식사구성탑 알기 식품위생 - 손 씻기 기타(간식, 편식, 식사예절 등) 보건소 보유 자료를 이용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함.

나. 영양교육 도구·자료

- 1) 중앙 배포자료
 - 가) 각 보건소에서는 중앙에서 제공하는 교육 자료를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이를 수정·보완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음.
 - 나) 중앙에서 배포하는 영양교육 자료에는 파워포인트 자료, 소책자, activity 자료, 마그넷, 상담용 시트지 등이 포함됨.

분류	제목						
	영양플러스사업 참여 방법						
	보충식품을 이용한 음식						
	식품위생관리						
	식생활지침(임신수유부용, 영아용, 어린이영)						
3 43 - 43 -	영아 영양관리-이유식						
파워포인트	영아 이유식 만들기						
	유아 영양관리						
	임신부 영양관리1						
	임신부 영양관리2						
	모유수유						
	편식						
교육kit	빈혈(성인/어린이)						
(교안 + 파워포인트+	저체중						
소책자+ 리플렛+ activity북)	비만						
activity 4)	식사구성안						
	영양플러스사업 설명 소책자						
	식생활 지침						
	우리아기의 수유 일기장						
	우리아기의 이유식 일기장						
	건강한 아이를 위한 현명한 엄마되기(0-3개월)						
소책자	건강한 아이를 위한 현명한 엄마되기(4-5개월)						
	건강한 아이를 위한 현명한 엄마되기(6-7개월)						
	건강한 아이를 위한 현명한 엄마되기(8-9개월)						
	건강한 아이를 위한 현명한 엄마되기(10-11개월)						
	건강한 아이를 위한 현명한 엄마되기(12-24개월)						
	건강한 아이를 위한 현명한 엄마되기(이유식가이드)						
	건강한 아이를 위한 현명한 엄마되기(2-5세)						

분류	제목
마그넷	식생활지침(임신수유부, 영아, 어린이)
- Fr ユ 첫 	보충식품의 안전한 보관 및 이용 방법
	사업설명자료(베트남어, 영어, 중국어, 따갈로그어, 캄보디아어)
외국인	식생활 지침(베트남어, 영어, 중국어, 따갈로그어, 캄보디아어)
교육자료	사업서식-신청서식, 설문지, 대상자서명용지(베트남어, 영어, 중국어,
(PDF파일)	따갈로그어, 캄보디아어)
, , , ,	5종 교육 kit 중 리플렛-빈혈, 저체중, 비만, 편식, 식사구성안
	(베트남어, 영어, 중국어, 따갈로그어, 캄보디아어)
	영유아 성장곡선
	대상자 상담용 체크리스트(영아용 6종, 유아용 2종, 임신부용, 출산부용)
시트지	대상별 식품섭취조사지(이유식 기록지, 수유기록지, 유아 및 임산부의
	식품섭취기록지)
	대상자 서명용지
	영양플러스 디자인 표준 규정집
	영양플러스 사업운영지침(담당자용)
	영양플러스 트레이닝 매뉴얼(담당자용)
	영양플러스 관리프로그램 매뉴얼-인쇄본 및 동영상(담당자용)
	웹베이스 영양평가프로그램(담당자용)
	영양플러스 홍보 동영상
	사업홍보 포스터
기타	Activity book
	보충식품배송박스 부착용 스티커
	보충식품 포장봉투(감자, 당근용) 보충식품 100배 활용하기
	모중식품 100배 철중하기 밥상요리놀이
	기타 홍보물 - 일회용밴드(빈혈검사 후 유아용), 출석스티커, 스티커
	기다 영조를 = 일러 6 전=(전 발급가 다 마 다 6), 월 다 = 여기, 드리기 스토리북, 장바구니, 지퍼백, 팩실, 우유주머니, 탁상용 레시피북,
	으오러다, 이사 (이), 아이지, 다른, 이 에 (이), 이 이 에 (이)다. 영양플러스 마그넷, 뱃지 등

가) 중앙배포자료는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http://phi.mw.go.kr)의 영양플러스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으며 회원가입 후 커뮤니티-'영양플러스' 가입을 통해 다운받을 수 있음

2) 보건소 개발 자료

- 가) 중앙배포 교육자료를 바탕으로 교육하되 필수 교육내용을 포함하는 한, 기존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자료 및 새로 개발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음.
- 나) 각 보건소에서 자료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내용으로 구성

되도록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대상자 영양문제의 해소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함.

- 다)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등에 내용 검토를 의뢰할 수 있음.
- 라) 교육 자료의 내용 인용 및 이미지 사용 시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 마) 개발된 자료는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함.



3. 타 사업 등과의 연계

가. 의료기관에의 연계

- 1) 대상자 중 심한 빈혈이나 질환 혹은 장애가 있는 경우 등 건강 및 영양상의 위험도가 높아 의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이 현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 및 의사에 소개하여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2) 이를 위해 본 사업의 대상자를 소개할 수 있는 보건소 내·외의 의사 및 의료 인력과 사전에 협의할 것을 권장함.
- 3) 연계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보관하여야 하며 이후의 진료 및 처치 진행상황에 대한 기록도 가능한 한 확보하도록 함.

나. 타 기관 및 타 사업과의 연계

- 1)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타 기관 혹은 타 사업과 적극적인 연계체계를 형성하도록 함.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 초기 및 사업 수행 중 업무협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할 것을 권장함.
- 2) 본 사업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연계의 사례는 다음과 같음.

- 가) 사업 홍보를 위한 타 기관과의 연계: 시·군·구청, 관내 소아과 및 산부인과,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사(기초생활수급자 파악 및 대상자 추천), 지역 신문사 및 방송사 등
- 나) 보건소 내 타 사업을 통한 사업 홍보 및 대상자 추천
- 다) 영양교육 특수주제를 위한 전문가 활용: 모유수유, 구강교육, 임산부 운동, 유아체조, 아토피·식품알레르기 등
- 라) 영양교육을 위한 관련 사업과의 연계: 모자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등
- 마) 영양교육 및 상담을 위한 연계: 지역 내 대학 등
- 바) 가정방문교육을 위한 타 사업 및 타 기관과의 연계
 - 방문보건사업과의 연계
 - 지역 내 대학과의 연계: 방문 보조 인력으로 활용
 -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와의 연계
- 사) 이 외에 기타 다양한 연계방안을 개발할 수 있음.
- 아) 연계 내용에 대한 기록을 남기도록 함.

Ⅳ. 보충식품의 공급



1. 보충식품 패키지

가. 보충식품패키지의 종류

- 1) 다음과 같은 6가지의 보충식품패키지 중 각 대상자에게 해당되는 식품 패키지를 제공함.
 - 식품패키지 1: 영아용, 0-5 개월
 - 식품패키지 2: 영아용, 6-12 개월
 - 식품패키지 3: 유아용, 만1세-만6세미만
 - 식품패키지 4: 임신부, 혼합수유부
 - ※ 단, 혼합수유부의 경우 출산 후 7개월부터 보충식품은 우유만 지급함.
 - 식품패키지 5: 출산부(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출산 후 여성)
 - 식품패키지 6: 완전모유수유부(완전 모유수유를 실시하는 수유부)
- 2) 식품패키지는 수유형태 등에 따라 표 10과 같이 세분될 수 있음.

표 10. 식품패키지 세부 분류

패키지 종류	보충식품 패키지 대상	상세분류
		혼합수유
식품패키지 1	영아, 생후 0-5개월	조제유
		완전모유수유
		식품, 혼합수유
		식품, 조제유
식품패키지 2	영아, 생후 6-12개월	식품, 모유수유
'국품페기시 2 		시판분말이유식, 혼합수유
		시판분말이유식, 조제유
		시판분말이유식, 모유수유
식품패키지 3	유아, 만1세-만6세미만	
식품패키지 4	임신부, 혼합수유부	모든 식품(임신부 및 출산후 6개월까지의 혼합수유부)
		우유만(출산 후 7개월 이후 혼합수유부)
시프레키기 5	출산부,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식품패키지 5	출산 후 여성(출산 후 6개월까지)	
식품패키지 6	완전모유수유부	
-1 to -11/1/1 U	(출산 후 12개월 까지)	

나. 보충식품패키지 적용 세부사항

- 1) 임신부가 출산한 경우 식품패키지 적용방법
- 가) 출산 후 6주까지는 임신부로서의 자격이 유지되므로 식품패키지 4를 유지
- 나) 출산 후 6주 이후 대상자격이 유지되면 수유방법에 따라 식품패키지 제공 (표 11 참조)
 - ※ 완전모유수유를 실시하는 경우, 출산 즉시 완전모유수유부의 패키지로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음. 단, 출산 후 6주 이후에는 출산수유부로서의 대상자격이 있어야 함. 자격재평가 원칙은 대상자관리-자격재평가(p46) 참조.

표 11. 출산부 식품패키지 적용방법

	대상유형					
출산직후 수유형태	임신	출산・수유부				
	임신중	출산후 6주까지	자격재평가 이후			
완전모유수유	식품패키지 4	식품패키지 6	식품캐피지 6			
혼합수유	혼합수유 식품패키지 4		식품패키지 4			
조제유 식품패키지 4		식품패키지 4	식품패키기 5			

- 2) 어머니가 임신기에 대상자이었거나 사업대상자격이 있었지만 대기자로 있어 자동으로 대상이 된 완전모유수유 영아의 경우
 - 생후 6개월까지는 공급되는 식품은 없음.
 - ※ 단, 대상자로 등록하여 영아의 부모·보호자에 대한 영양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야 함.
- 3) 미숙아 혹은 성장발육이 느린 영유아의 식품패키지
- 가) 영아 중 미숙아의 경우 역연령방식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 혹은 성장발육이 느린 영유아에게 실제 연령과 다른 패키지를 처방할 것인지 여부는 영양사와의 상담에 의해 결정함.
 - ※ 이 경우 대상자의 성장발육 상태를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의사의 소견서를 받거나 의사와의 상담을 실시

다. 관리영양소별 주요 급원식품

1) 각 식품패키지의 관리영양소별 주요 급원식품은 표 12와 같음.

표 12. 식품 패키지 내 관리 영양소 별 해당식품

관리영양소	식품패키지 1 (영아, 0-5월)	식품패키지 2 (영아, 6-12월)	식품패키지 3 (유아, 만1세-만6세미만)	식품패키지 4 (임신·수유부 ³)	식품패키지 5 (출산부)	식품패키지 6 (완전모유수유)
에너지	조제분유 ¹⁾	조제분유 ¹⁾ , 쌀, 감자	쌀, 감자	쌀, 감자	쌀, 감자	쌀, 감자
단백질	조제분유 ¹⁾	조제분유 ¹⁾ , 달걀노른자 ²⁾	달걀, 우유, 검정콩	달걀, 우유, 검정콩	달걀, 우유, 검정콩	달걀, 우유, 검정콩, 참치통조림
칼슘	조제분유 ¹⁾	조제분유 ¹⁾	우유, 검정콩	우유, 미역, 검정콩	우유, 미역, 검정콩	우유, 미역, 검정콩
철	조제분유 ¹⁾	조제분유 ¹⁾ , 댤걀노른자 ²⁾	달걀, 검정콩	달걀, 검정콩	달걀, 검정콩	달걀, 검정콩
비타민 A	조제분유 ¹⁾	조제분유 ¹⁾ , 당근	김, 당근	김, 당근	김, 당근	김, 당근, 귤
리보플라빈	조제분유 ¹⁾	조제분유 ¹⁾ ,	우유, 달걀	우유, 달걀	우유, 달걀	우유, 달걀
나이아신	조제분유 ¹⁾	조제분유 ¹⁾ ,	검정콩	검정콩	검정콩	검정콩, 참치통조림
비타민 C	조제분유 ¹⁾	조제분유 ¹⁾ , 감자	감자	감자	감자	감자 귤/오렌지주스

- 1) 모유수유를 우선적으로 권장하며, 조제유 필요량에 따라, 제품에 표기 된 권장 섭취량의 1/2까지 제공함.
- 2) 전란을 지급하되, 영아에게는 노른자만 먹이도록 교육함.
- 3) 혼합수유부의 경우 출산 후 7개월째부터 보충식품은 우유만 공급.

2) 식품별 대체식품

- 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의된 대체식품을 이용하여 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음.
- 나) 각 식품별로 정해진 대체식품을 이용할 수 있으나, 한 식품패키지 내에서

두 가지 이상의 식품에 대해 동일한 대체식품을 중복 적용하지 않음.

※ 예) 유아용 '패키지 3'의 경우 검정콩과 김의 대체식품으로 시리얼을 중복 적용하지 않도록 함.

표 13. 식품별 대체식품 및 적용 시 유의사항

식품	대체 식품	대체식품 적용
쌀	보리	- 쌀을 잡곡으로 대체할 경우,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공급양이 감소함
<i>'</i> 但	현미	- 영아용 식품패키지 2에서는 대체 불가
감자	국수	- 감자의 가격이 비싼 계절(봄 등)에는 대신 지급할 수 있음 - 영아용 식품패키지 2에서는 대체 불가
位へ	고구마	- 고구마는 가격이 저렴한 제철에 한해 공급할 수 있음 - 영아용 식품패키지 2에서는 대체 불가
	시리얼	- 대상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대체 가능
검정콩	참치통조림	- 완전모유수유부 패키지 6의 경우 기본패키지에 참치통조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체 불가
	붉은 팥	-
당근	애호박 혹은 돼지호박(서양호박)	- 애호박/돼지호박은 가격이 저렴한 제철에 한해 공급할 수 있음
김	-	- 김과 미역은 비타민 A, B ₁₂ 섭취를 위해 중요한 필수 공급 식품임
미역	-	- 단, 어촌 지역 등 지역적으로 김, 미역이 흔한 경우 일부 잡곡이나 시리얼 등으로 추가 대체 가능
吨	오렌지주스	- 가을, 겨울 등 가격이 저렴한 계절에는 귤을 공급함 - 봄, 여름 등 귤의 가격이 비싼 계절에는 100% 오렌지 농축과즙 주스를 공급할 수 있음
영아용 생식품 (이유식 재료식품) 대체	분말이유식	- 가능한 한 대체하지 않음. 꼭 필요한 경우 쌀, 감자, 당근, 달걀 대신 시판분말이유식을 기준량의 1/2 범위 내에서 공급할 수 있음. 이 경우 쌀, 감자, 당근, 달걀은 공급되지 않음.

라. 식품별 제공량

1) 식품패키지에 따른 식품별 제공량의 1인 1일 환산치는 표 14와 같음.

표 14. 식품패키지별 식품 제공량(1인 1일 환산치)

식품명	식품패키지 1 (영아, 0-5월)	식품패키지 2 (영아, 6-12월)	식품패키지 3 (유아, 만1세-만6세미만)	식품패키지 4 (임신·수유부 ⁴)	식품패키지 5 (출산부)	식품패키지 6 (완전모유수유)
조제분유 ¹⁾	필요량의 1/2까지	필요량의 1/2까지				
쌀		45g	45g	90g	90g	90g
감자		25g	25g	50g	50g	50g
달걀 ²⁾		50g(노른자) ³⁾	50g	50g	50g	50g
당근		18g	18g	35g	35g	35g
우유			400mℓ	400 mℓ	200mℓ	4 00mℓ
검정콩			10g	15g	15g	15g
김			3g	3g	3g	3g
미역				2.5g	2.5g	2.5g
참치통조림						30g
귤/오렌지주스						귤 중 1개 주스 200㎡

- 1) 모유수유를 우선적으로 권장하며, 필요량에 따라, 제품에 표기 된 권장 섭취량의 1/2까지 제공함.
- 2) 달걀 50g은 달걀 1개로 계산하여 공급함.
- 3) 전란을 지급하되, 영아는 노른자만 먹도록 교육함.
- 4) 혼합수유부의 경우 출산 후 7개월째부터 보충식품은 우유만 제공.

2) 식품패키지에 따른 대체식품별 제공량의 1인 1일 환산치는 표 15와 같음. 표 15. 식품패키지별 대체식품 제공량(1인 1일 환산치)

식품명	대체식품명	식품패키지 1 (영아, 0-5월)	식품패키지 2 (영아, 6-12월)	식품패키지 3 (유아, 만1세-만6세미만)	식품패키지 4 (임신· 수유부)	식품패키지 5 (출산부)	식품패키지 6 (완전모 유수유)
쌀	현미		_1)	30g	45g	45g	45g
· 但	보리		_1)	30g	45g	45g	45g
71-71	국수		_1)	100g/주	200g/주	200g/주	200g/주
감자	고구마		_1)	25g	50g	50g	50g
	시리얼			30g	30g	30g	30g
검정콩	참치통조림			10g	15g	15g	_2)
	붉은 팥			10g	10g	10g	10g
당근	애호박 또는 서양호박		18g	18g	35g	35g	35g
영아용 생식품 대체	이유식 (분말)		필요한 경우 하루표준량의 1/2이하				

- 1) 영아에서는 대체 불가
- 2) 패키지 6에서는 참치통조림이 기본 패키지 식품이므로 검정콩의 대체 적용 불가

표 16. 보충식품별 1개월 제공량

□ 식품패키지별 식품 1개월 제공량(1인 1개월 환산치)

식품명	식품패키지 1 (영아, 0-5월)	식품패키지 2 (영아, 6-12월)	식품패키지 3 (유아, 만1세-만6세미만)	식품패키지 4 (임신· 수유부)	식품패키지 5 (출산부)	식품패키지 6 (완전모유수유)
조제분유	필요량의 1/2이내	필요량의 1/2이내				
쌀		1.4kg	1.4kg	2.7kg	2.7kg	2.7kg
감자		750g	750g	1.5kg	1.5kg	1.5kg
달걀		30개(노른자)	30개	30개	30개	30개
당근		540g	540g	1kg	1kg	1kg
우유			200mℓ x 60	200mℓ x 60	200mℓ x 30	200mℓ x 60
검정콩			300g	450g	450g	450g
김			90g	90g	90g	90g
미역				75g	75g	75g
참치통조림						900g
귤/오렌지주스						귤 중 30개/ 주스 6L

□ 식품패키지별 대체식품 1개월 제공량(1인 1개월 환산치)

식품명	대체식품명	식품패키지 1 (영아,0-5월)	식품패키지 2 (영아,6-12월)	식품패키지 3 (유아, 만1세-만6세미만)	식품패키지 4 (임신· 수유부)	식품패키지 5 (출산부)	식품패키지 6 (완전모유수유)
쌀	현미		-	900g	1.4kg	1.4kg	1.4kg
· · 包	보리		-	900g	1.4kg	1.4kg	1.4kg
フレフ	국수		-	400g	800g	800g	800g
감자 고	고구마		-	750g	1.5kg	1.5kg	1.5kg
	시리얼			900g	900g	900g	900g
검정콩	참치 통조림			300g	450g	450g	-
	붉은 팥			300g	300g	300g	300g
당근	애호박 (서양호박)		540g	540g	1kg	1kg	1kg
영아용 생식품 대체	이유식 (분말)		필요한 경우 기준량의 1/2이내				

- 3) 이 제공량은 한국인의 영양권장량에 수록된 '식사구성안'의 식사분량과 가공 식품 영양표시를 위한 기초 자료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개발한 '식품 표시 참고량 및 1회 분량' 자료를 활용하고, 각 대상 연령군의 평균적 영양 섭취상태에 근거하여 관련 영양문제를 보완하는 수준으로 도출된 것임.
- 4) 식품배송을 위한 제품 포장 단위의 선택
- 가) 전달체계 및 저장기간을 고려하여 각 식품의 배달주기를 결정하며, 식품 배달 주기에 따라 1회 배달 분량을 계산함.
- 나) 1회 배달 분량이 결정되면 실제 유통되고 있는 식품의 포장단위 중 제공 되어야 하는 총량에 가장 가까우면서도 허용량을 15%이상 초과하지 않는 분량으로 제공함.
 - ※ 단, 시판되는 포장단위의 크기로 인해 분량을 맞추기 곤란한 경우나 작은 포장단위의 가격의 합이 오히려 더 높아 큰 포장을 선택함으로써 가격이 더 절약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5) 식품 공급량의 조정

- 가) 1달은 일괄적으로 30일분으로 계산하거나, 실제 해당 월의 날짜 수를 반영 하여 지급할 수 있음
- 나)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공하여야 하는 날짜 수를 임의로 줄여서 지급할 수 없음.
 - ※ 대상자가 식품 제공일 수를 줄여서 공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대상자 서명용지 추가협의사항에 서면 요청 문서 확보
- 다) 가정방문이나 상담에서, 제공된 식품 중 일부에 대해 그 양을 대상자가 전량 섭취하지 못해 버리게 되는 경우
 - ① 일차적으로는 이로 인한 영양상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섭취량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교육
 -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식품이 남아 버리게 되는 경우나 본인이 양의 감소를 원하는 경우 그 양을 일시적으로 줄여서 지급할

수 있음(서면요청문서 확보).

- ③ 이 경우, 일정기간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전량을 지급할 수 있음.
- 라) 위 다)의 경우와 같이 제공된 식품 중 일부를 줄여서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정해진 대체 식품 범위 외의 다른 식품으로 대체하여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 ※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등으로 일부식품을 줄이거나 제외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마. 식품 배송 주기

- 1) 저장기간을 고려하여 각 식품의 배달 주기를 결정함. 식품별 배송주기는 다음과 같음.
 - 가) 달걀, 감자, 당근, 귤, 우유: 월 2회 이상으로 나누어 배송
 - ※ 대체식품으로 포함되어 있는 고구마, 애호박(서양호박)포함
- 나) 기타 식품: 월 1회 배송
- 2) 유통기한이 확보되고 신선한 제품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배달 주기가 길어 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3) 퇴록 예정 대상자 중 월 1회 배송과 2회 배송 사이에 퇴록하는 경우, 해당 월의 패키지 배송분량을 모두 공급할 것을 권장함.



2. 식품별 관리기준

가. 조제분유(식품패키지 1, 2)

- 1) 모유수유 촉진을 위한 방침
 - 가) 모유수유를 촉진시키기 위해, 모유수유의 장점을 설명하여 모유수유를 최대한 권유함.
 - ※ 모유수유의 경우 수혜기간이 산후 12개월로 길고, 완전모유수유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식품공급이 이루어짐을 알려주어야 함.
- 2) 조제분유 공급 관련사항
- 가) 수유방법을 파악하여, 완전모유수유·혼합수유·조제유 섭취 여부에 따라 개인별 조제분유 공급량을 결정함.
 - ※ 완전모유수유아에게는 조제분유를 공급하지 않음.
- 나) 모유수유의 권장을 위해 조제유는 분유회사에서 제시하는 표준섭취분량의 1/2 이하를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즉, 조제유아인 경우 분유 회사에서 제시하는 하루 표준량의 1/2이하, 혼합수유아는 하루 표준량의 약 1/4이하를 공급함.
- 다) 본 사업의 수혜로 영아가 이전에 섭취하던 제품과 다른 조제분유를 받게 되는 경우
 - 처음에는 새로운 분유를 기존의 분유에 소량 섞는 것으로 시작하여 점차 배합 비율을 늘려감으로써, 새로운 분유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두도록 교육하여야 함.
 - 이상 반응을 보이는 경우 공급을 일시 중단하고 일주일 후에 다시 소량을 시도하도록 하며, 계속해서 이상 반응을 보이는 경우 해당 보건소로 보고하도록 함.

- 라) 특수분유를 필요로 하는 대상은 제외할 수 있음.
 - 이러한 대상의 포함 여부는 보건소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이러한 대상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의료기관 등에 연계하여야 함.

나. 시판분말이유식(식품패키지 2)

- 1) 시판분말이유식 공급 방침
- 가) 시판분말이유식은 공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꼭 필요한 대상의 경우에만 쌀, 감자, 달걀 및 당근 대신 공급.
- 2) 시판분말이유식 공급 관련사항
- 가) 시판분말이유식은 회사에서 제시하는 하루표준량의 1/2 이하(대략 월 2캔 이하)로 공급
- 나)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한, 제공량에 대한 세부적 기준은 보건소별로 조정할 수 있음.
- 3) 시판분말이유식 관련 대상자 교육사항
 - 가) 시판분말이유식은 가정에서 만드는 이유보충식에 첨가하여 영양소를 보충하는 보충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교육하여야 함.
 - 나) 본 사업의 수혜로 영아가 시판분말이유식을 처음으로 섭취하게 되거나 기존에 섭취하던 제품과 다른 시판분말이유식을 받게 되는 경우
 - 처음에는 한 티스푼에서 시작하여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지 살피면서 점차 양을 늘려가도록 교육함.
 - ※ 적응 기간 중에는 양을 줄여서 공급할 수 있음
 - 다) 시판분말이유식은 여러 가지 재료가 섞인 제품이므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교육하여야 함.

- 이상 반응을 보이는 경우 공급을 일시 중단하고, 일주일 후에 다시
 소량을 시도하도록 함.
- 계속해서 이상 반응을 보이는 경우 공급을 중단하고 해당 보건소로 보고하도록 하며 쌀·달걀·당근·감자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함.

다. 조제분유 및 시판분말이유식 공통사항

1) 제품 선정

- 가) 조제분유의 회사 및 제품의 선정은 보건소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나) 가능한 인지도와 선호도가 높은 회사의 제품이며 질이 좋으면서 가격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도록 함. 그러나 최저가격인 제품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다) 질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대상자에게 공급하여야 할 1회 공급량과 유사한 포장단위를 제공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음.
- 라) 조제분유의 회사 및 제품은 대상자 개인별 선호도에 맞추지 않고 다수의 선호도를 감안하여 일괄적으로 한 개 혹은 몇 개의 제품으로 한정하여 공급 할 수 있음

2) 공급 관련사항

- 가) 1달에 1회의 빈도로 대상자에게 배달할 수 있으며, 대상자가 유통기한이 넘었거나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지 않은 제품을 받지 않도록, 가능한 신선한 제품으로 공급 하여야 함.
- 나) 개봉 후의 유효기한도 확인하도록 하여, 유효기간 경과 시에는 즉시 이를 폐기하도록 교육함.
- 다) 대상자가 유통업체에서 직접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음. 제품 종류로의 교환이 불가피한 경우 보건소 담당자를 통하여 교환이 이루어 지도록 함.

라. 우유

1) 우유 종류 선택

- 가) 시유나 멸균우유 중 선택할 수 있음.
 - 시유의 경우 약 2-3일에 1회, 혹은 매일 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멸균우유의 경우 유통기간이 길더라도 1달에 2회 이상으로 나누어 공급함으로써, 지나치게 많은 양의 우유를 한꺼번에 가정에 보관하여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 함.
- 나) 읍·면지역 등 대상자 가구가 넓게 분포되어있는 경우에는 멸균우유를 공급하는 것이 권장됨.
- 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특수우유가 아닌 일반우유를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보건소의 방침에 따라 일반우유 섭취가 불가능한 대상에게 특수
 우유 혹은 두유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음. 이 경우 대상자로부터
 이러한 필요 상황에 대한 증명서류를 확보함.

2) 제품 선정

- 가) 우유 제조회사나 제품은 보건소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나) 가능한 인지도가 높은 회사의 제품으로, 질이 좋으면서 가격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최저가격의 제품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다) 보건소 별로 우유는 회사 혹은 대리점과 직접 계약을 하거나, 유통 업체와 계약을 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 3) 섭취량이 낮은 경우 공급량의 조정
- 가) 대상자가 공급한 우유를 다 섭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일차적으로는 섭취량을 늘릴 수 있도록 교육함.

-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식품이 남아 버리게 되는 경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그 양을 일시적으로 줄여서 지급할 수 있음.
- 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전량을 지급할 수 있음.
- 라) 우유 대신 다른 식품으로 대체하여 지급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음.
- 4) 우유관련 대상자 교육 사항
- 가) 시유는 배달 후 냉장보관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섭취하지 않도록 교육함.
- 나) 멸균우유도 개봉 후에는 냉장보관하고, 제품의 유통기한 및 개봉 후 유통 기한을 확인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섭취하지 않도록 교육함.

마. 달걀

1) 제품 선정

- 가) 달걀의 원산지, 회사 및 제품은 보건소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나) 질이 좋으면서 가격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최저가격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다) 질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대상자에게 공급하여야 할 1회 공급량과 유사한 포장단위를 제공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음.

2) 유통기한

- 가) 유통기한을 감안하여 대상자가 유통기한을 넘기지 않고 섭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배달주기를 선택함.
- 나) 최소한 배달 주기만큼의 유통기간이 확보된, 신선한 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함.
- 3) 달걀 공급관련 대상자 교육사항
- 가) 수령 즉시 유통기한을 확인하도록 함.
- 나) 반드시 냉장 보관하도록 하며, 이용 중에도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오래된 달걀을 섭취하지 않도록 교육함.

다) 영아의 경우(식품패키지 2) 반드시 달걀노른자만 섭취하도록 교육함.

바. 당근 · 감자 및 귤

- 1) 당근 및 귤은 채소와 과일의 섭취 권장 측면에서 공급됨.
- 2) 제품 선정
 - 가) 당근과 감자 및 과일의 원산지는 보건소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나) 질이 좋으면서 가격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최저가격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다) 가능하다면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는 것이 권장됨.
- 3) 대체식품
- 가) 감자의 가격이 비싼 계절이나 집에서 감자를 키우는 가정이 많아 감자가 선호되지 않는 지역 등의 경우에는 감자 대신 국수로 대체할 수 있음.
 - ※ 국수로 대체하는 경우 식품패키지2(6-12개월)의 영아에게는 국수를 지급하지 않음.
- 나) 완전모유수유를 하는 대상자에게만 공급되는 과일(귤)은, 봄, 가을 등 그 값이 비싼 계절에는 100% 오렌지 농축과즙 주스로 대체하여 공급 할 수 있음.
- 다) 검정콩은 대상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시리얼로 대체할 수 있음.
 - ※ 단, 시리얼은 설탕 함량이 높지 않으면서 철 함량이 100kcal 당 1.0mg 이상 강화된 제품을 선택하도록 함.
- 4) 대상자에게 적절한 보관방법을 교육함.

사. 기타 식품

1) 기타식품이라 함은 쌀, 검정콩, 김, 미역, 참치통조림, 오렌지주스를 말함.

2) 제품 선정

- 가) 원산지, 회사 및 제품은 보건소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나) 질이 좋으면서 가격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최저가격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다) 질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대상자에게 공급하여야 할 1회 공급량과 유사한 포장단위를 제공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음.
- 라) 김의 경우 조미되지 않은 김을 공급하는 것이 권장됨. 또한 보관 시 눅눅해 지지 않도록 적절한 포장단위를 선택하고, 대상자에게 보관방법을 교육하여야 함.
- 3) 배달주기 및 기타 공급관련 사항
- 가) 기타 식품은 1달에 1회의 주기로 대상자에게 배달할 수 있음.
- 나) 대상자가 유통기한이 넘었거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을 받지 않도록, 최소한 배달주기 이상의 유통기한이 확보된 신선한 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함.
- 4) 대상자 교육사항
- 가) 적절한 보관 및 이용방법 교육
- 나) 타 식품과 함께 보충식품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



3. 보충식품의 검수방법

가. 보충식품 검수 주기

1) 식품공급업체별로 매월 1회 이상, 식품배송 준비 과정에 사업 담당자가 방문하여 배달 식품의 검수를 실시하여야 함.

나. 보충식품 검수방법

- 1) 식품검수: 식품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다음 사항 검수
- 가) 공산품의 식품별 유통기한 및 포장상태 확인
- 나) 공산품 및 생식품의 식품 별 중량 검수
- 다) 생식품인 감자, 당근, 달걀의 품질 검수
 - ① 달걀: 껍데기 상태, 접시에 깨뜨렸을 때 흰자·노른자 높이 등
 - ② 감자: 모양, 크기, 외상, 자른 단면 검수
 - ③ 당근: 겉표면, 외상, 향기, 굵기, 자른 단면
- 라) 식품 보관 상태 확인(냉장온도, 위생상태 등)
- 2) 배송차량 확인
- 가) 배송 식품 운송 전 차량 내부 온도측정
- 나) 배송 중 식품보관 온도 측정
- 3) 매장조사
- 가) 매장 검수: 가격 조사, 상품 질 비교
- 나) 식품공급업체 제공 납품단가와 매장 시세가를 조사하여 비교 후 차이 발생 시 조치
- 4) 검수서 작성
- 가) 발주수량, 품질, 포장, 규격 상태 등의 검수서 작성



🧻 4. 보충식품의 전달방법

가. 보충식품 전달방법

- 1) 보충식품은 가정배달방식이나 직접분배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즉, 지역특성에 따라 보충식품을 가정에 배달하는 방법과, 식품공급업체나 보건소 및 직장 등에서 대상자가 직접 식품을 수령하는 방식 중 하나를 대상자가 선택하도록 할 수 있음.
- 2) 가정배달방식의 경우 유통업체 혹은 각 식품공급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식품공급업체에서 가정으로 배달하도록 함.
- 3) 휴가철, 산후 조리 등으로 집을 비워 배달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상자가 식품공급업체나 보건소 등에 가서 물건을 수령하도록 할 수 있음.
- 4) 대상자에게 1회의 사전 통지 후 2회 이상 사후 방문에 의해서도 배달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직접 식품공급업체 혹은 보건소에서 수령함.
 - ※ 단, 이 경우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였다는 기록과 재방문 날짜를 남겨서 방문 사실 을 알리도록 함.

나. 보충식품 수령 및 교환

1) 수령 확인증

- 가) 각 대상자에게 정확히 배달되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식품 공급업체는 반드시 대상자로부터 수령확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보건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함.
- 나) 대상자가 식품공급업체나 보건소 등에서 물건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수령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수령확인증을 받아야 함.

2) 식품 확인 및 교환

- 가) 배달 시 대상자로 하여금 식품의 종류와 양, 물품의 이상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나) 식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교환하여야 하며, 이를 교환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식품공급업체와의 계약 내용에 포함시켜야 함.
- 다) 물품에 하자가 있어 동일한 물품으로 교환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상자가 상점에서 다른 물건으로 바꾸어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 라) 해당 월 혹은 정해진 기간에 식품을 다 섭취하지 못한 경우 유통기한에 유의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반드시 폐기하도록 교육함.
- 3) 대상자 등록서명용지의 보충식품 관리내용
- 가) 대상자에게는 대상자 등록서명용지에 명시된 다음의 보충식품 관리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대상자는 이에 확인 서명하여야 함.

П.	보충식품패키지 관련 사항
	나/내(가 보호 중인) 아이에게 처방되는 보충식품 패키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보충식품만 먹는다고 하여 영양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보충식품을 다른 식품과 함께 다양하게 이용 하여야 영양위험이 개선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보충식품의 안전한 수령과 변질 예방을 위해, 보충식품 배달기사와의 약속시간을 지켜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약속된 시간에 배달기사가 도착하였으나 대상자가 이를 2회 이상 지키지 않은 경우 식품공급업체를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여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보충식품은 본인 혹은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며, 수령 즉시 검수하고 확인 서명을 하여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보충식품 검수 시에는 1. 종류와 수량 확인, 2. 유통기한 확인, 3. 식품의 상태(신선도)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야 교환이 가능함을 알고 있습니다. 당일에 연락을 하지 않아 수령 당시의 상태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교환이 불가능함을 알고 있습니다.
	보충식품은 올바른 보관방법에 따라 바르게 보관하여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부주의로 식품이 변질· 파손된 경우에는 교환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보충식품을 임의로 다른 식품이나 물건으로 교환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것은 범법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보충식품의 제품 선정 및 분량은 보건복지부의 사업운영지침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며, 일정 원칙·범위 내의 식품만 공급 가능하므로, 대상자가 다른 식품이나, 공급 가능한 범위 밖의 다른 제품을 원할 경우, 그러한 요구가 수용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충식품 중 대상자가 원하지 않는 식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식품을 제외하고 식품패키지가 처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식품패키지 이용 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u>12개월 미만 영아</u> 의 경우 달걀 흰자는 알레르기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식품패키지 2에서 제공되는 <u>달걀 중</u> <u>노른자만 섭취</u> 하여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영아의 경우 보충식품 중 이전에 섭취하지 않았던 식품을 줄 때에는 <u>소량으로 시작</u> 하여 서서히 양을 늘려 가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혼합수유 및 조제유수유 영아의 경우 분유가 이전에 먹던 제품과 다르다면, <u>기존 제품과 혼합하여 서서히</u> 그 <u>비율을 증가</u> 시켜가며 적응기간을 가져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보충 식품은 가능한 한 공급받은 해당 월에 섭취하도록 하며, <u>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폐기</u> 하여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다. 위생관리를 위한 확인서

1) 식품공급업체의 식품 배송 및 대상자의 식품 수령과 보관과정에서 식품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업체 및 대상자 모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함.

2) 식품공급업체로부터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받아 보관하여야 함.

식품공급업체 확인서

본 식품공급업체()는 귀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영양 플러스사업의 보충식품 배송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식품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식품의 관리소홀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배송 시점에 식품에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이상이 없는 동일한 식품으로 교환 제공하도록 조치하고, 보건소에 연락하겠습니다.

소속	직급
담당자	_ (인)

○○ 보건소장 귀하



5. 식품공급업체의 선정 및 관리

가. 식품공급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 1) 식품공급업체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각 시·도 및 시·군·구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자율적으로 실시함.
 - 가) 본 사업 업무 수행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선정방법 선택 및 필요한 조건 설정
 - 나) 각 시·도 별로 일괄 선정할 것을 권장
 - ※ 이 경우에도 시군구에 따라 시·도에서 선정한 식품공급업체 외 타 식품공급업체와의 별도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약 체결 가능
 - 다) 계약 시, 배송될 물품에 대한 단가계약 체결 권장

2) 식품공급업체와의 계약 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서 작성.

구분	내용
물품가격	1. 제품 종류 및 가격
계약기간 및 대상 범위	1. 차기 계약 이전까지 유효하도록 설정 2. 계약기간적용 기준일 명확히 설정(발주시점 기준/납품일 기준 등) 3. 대상자 추가 모집 시 배달가구 추가 가능성
발주	1. 발주방법 2. 발주시기 3. 발주 주기 등
자부담료 수령	1. 대상자의 자부담료 수령관련 사항
검수	1. 물품규격 (지침 명시 내용) 2. 검수방법, 검수 시기 및 주기, 업체 준비사항 3. 검수 후 조치
배송	1. 배송 시 유의사항 2. 배송방법: 배송 중 식품보관온도 유지방법, 배송위탁 허용여부 등 3. 배송직원의 서비스 태도 4. 대상자에 대한 사전 연락 및 부재 시 처리방법 5. 배송완료 확인방법
업체 소재지 및 기타 조건	1. 식품공급업체의 실제 소재지 및 기타 조건 상 배송에 문제가 없는지 고려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 가능 2. 냉동, 냉장 차량 보유여부
불성실 이행 시 조치사항 및 기타	1. 배송누락, 지연, 오배송 등 불성실 이행 및 시정요구 불이행 시의 조치사항(예;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귀속 등) 2. 배달원에 대한 교육 3. 기타 지자체에서 필요한 사항

나. 식품공급업체 관리

- 1) 위생관리를 위한 식품공급업체 확인서를 받아 보관하여야 함.
- 2) 배달원이 대상자에게 불친절하게 대함으로서 대상자가 불쾌감을 갖는 일이 없도록, 식품공급업체와의 계약 시 이를 분명히 하여야 함.

- 3) 식품공급업체의 배송원에 대한 관리
- 가) 식품공급업체에서는 배송원에 대해 정기적인 서비스 및 친절 교육을 실시
- 나) 본 사업에 투입되는 신규직원에 대하여 사업에 대한 교육 및 서비스 교육을 실시
- 다) 배송원에 대해 매뉴얼을 배포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교육



6. 보충식품 관련 기타사항

가. 예외적 적용

- 1) 정의된 보충식품 및 대체 식품외의 식품으로 대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 보충식품의 종류나 배송주기 등의 규정과 관련하여, 지역 특성으로 인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추진함.
- 2) 도서지역, 농ㆍ어촌지역 및 도농복합지역 식품패키지 구성의 예
- 가) 생식품 중 이를 키우는 가정이 많아 선호되지 않은 지역 또는 섬이나 식품 배송이 힘든 지역의 경우 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체 식품 내에서 패키지 구성변경이 가능함(농·어촌지역 식품패키지 구성의 예는 표 17 참조).
 - ※ 지역·가정에서 많이 생성되는 식품을 제외하기 위해 다른 식품 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경우, 기본 패키지의 식품을 가정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함.
- 나) 정해진 대체식품 범위 내에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가격과 영양소 구성이 비슷한 대체식품으로 패키지를 구성하여야 함.
- 다) 각 식품별로 정해진 대체식품을 이용할 수 있으나, 한 식품패키지 내에서 두 개 이상의 식품에 대해 동일한 대체식품을 중복 적용하지 않음.

- ※ 예) 유아용 '패키지 3'의 경우 검정콩과 김의 대체식품으로 시리얼을 중복 적용하지 않도록 함.
- 라) 가능한 한 각 보건소에서는 각 대상구분 별 패키지의 내용을 통일하도록 함.

표 17. 농ㆍ어촌지역 식품패키지 구성의 예

시프머	식푿	등패키지 3 (유	우아)	식품패키지 6 (완전모유수유)		
식품명	농촌지역	어촌지역	농.어촌 복합지역	농촌지역	어촌지역	농.어촌 복합지역
쌀	쌀 (혹은 보리, 현미)	쌀 (혹은 보리, 현미)	쌀 (혹은 보리, 현미)	쌀(혹은 보리, 현미)	쌀 (혹은 보리, 현미)	쌀(혹은 보리, 현미)
감자	국수	감자	국수	국수	감자	국수
달걀	달걀	달걀	달걀	달걀	달걀	달걀
당근	당근	당근	당근	당근	당근	당근
우유	우유	우유	우유	우유	우유	우유
검정콩	시리얼(또는 참치통조림)	검정콩	참치통조림	시리얼	검정콩	검정콩
김	김	시리얼	시리얼	김	시리얼	시리얼
미역				미역	미역	미역
참치통조림				참치통조림	참치통조림	참치통조림
귤/오렌지 주스				귤	귤	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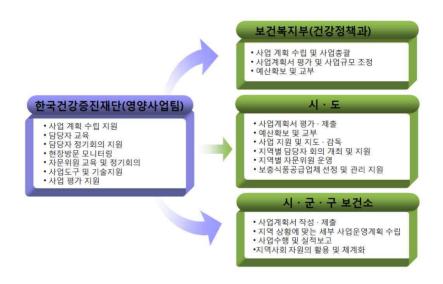
[※] 위 구성은 단순한 예시일 뿐 특별히 권장되는 내용이 아니며, 정해진 대체식품 내에서 변경 가능함.

Ⅲ. 예산 및 행정



1.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수행기관 간의 추진체계도



나. 사업수행기관 및 담당업무

- 1)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 가) 영양플러스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 나) 영양플러스사업 소요예산 확보
- 다) 영양플러스사업 지침 시달 및 국고배정
- 라) 사업지원 및 관리를 위한 한국건강증진재단(영양사업팀) 예산배정
- 마) 사업에 관한 지도 · 감독
- 2) 한국건강증진재단(영양사업팀)
- 가) 영양플러스 사업 지침 개발 지원
- 나) 보건소에서의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 지원
- 다) 사업도구 개발 및 보급: 사업관리 서식, 교육자료 및 사업관리프로그램
- 라) 담당자 교육 및 회의 실시
- 마) 사업데이터 취합 및 분석
- 바) 권역별 자문위원 교육 및 관리
- 3) 시 · 도
- 가) 시ㆍ군ㆍ구 보건소에 사업지침 전달 및 예산배정
- 나) 시ㆍ군ㆍ구의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 및 지도ㆍ감독
- 다) 사업계획서 취합, 1차 평가 및 제출
- 라) 지역별 자문위원단 운영
 - ※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마) 지역별 담당자 회의 개최 및 지원
- 바) 보충식품 공급업체 선정 및 관리 지원
- 사) 시·도 실적보고서 제출
- 4) 시・군・구 보건소
- 가) 보건소의 사업계획 수립
- 나)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다) 보충식품 공급 및 영양교육 실시

- 라) 타 사업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
- 마) 정기적 영양평가 및 관리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입력
- 바) 담당자 교육ㆍ회의 참석 및 진행상황 월례 보고
- 사) 사업운영관련 의견 제시



2. 사업수행 보건소의 인력

가. 전담영양사 수

- 1)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반드시 다음과 같은 대상자 수 대비 적정 규모의 전담영양사가 확보되어야 하며, 지자체에서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함.
 - 가) 전담영양사 규모 확보 원칙
 - 사업 대상자 수가 100명 및 그 이하인 경우 전담영양사 최소 1인 확보
 - 사업 대상자 수 최초 100명에서부터 100명 증가 시 마다 사업 전담 영양사 1인 추가 확보
 - 나) 대상자 수 대비 적정 전담영양사 규모
 - 대상자 수 199명 이하: 전담영양사 수 2명 이상
 - 대상자 수 200-299명: 전담영양사 수 3명 이상
 - 대상자 수 300-399명: 전담영양사 수 4명 이상
 - 대상자 수 400-499명: 전담영양사 수 5명 이상
 - ※ 대상자 수 100명 증가분 마다 전담영양사 수 1명 증가

나. 전담영양사 자격

1) 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에는 사업의 계획 및 총괄, 대상자 선정, 영양교육, 영양평가, 데이터관리 등을 담당할 능력을 갖춘 인력이 확보되어야 함.

2) 전담영양사의 확보

- 가) 위 전담영양사 수에서 규정한 수의 전담영양사를 확보하여야 함.
 - ※ 위 전담영양사 수에서 전담영양사 1인이라 함은 이 사업만을 전담 하는 영양사를 의미함.
- 나) 단, 전담영양사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그 중 1인에 한해 비 전담인력을 허용할 수 있음.
 - ※ 이 경우 비 전담영양사는 총 근무시간의 50% 이상은 본 사업에 할애하는 경우에 한함.
- 3) 본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최소한 1인 이상의 정규직 혹은 정규계약직 영양사를 사업 담당자로 채용하여야 함.
- 4) 영양교육과 영양상담, 식품섭취조사 및 이에 따른 영양소 섭취량 산출과 영양위험요인 판정은 반드시 전담영양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함.

다. 근무 조건

- 1) 사업 전담영양사로서 본 사업을 위해 국비 또는 지방비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영양사에게는 4대 보험료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급여는 예산 상정해진 기준 단가(월 150만원 이상/연 1,950만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 2) 전담영양사에게는 4대 보험료(본인부담 50%, 기관부담 50%)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 4대 보험료, 퇴직금 및 제 수당은 별도 예산으로 부담할 수 있음
- 3) 전담영양사가 연장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기간제·계약직 영양사에 대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지자체는 이를 부담하여야 함.
- 4) 주휴수당, 월차수당, 기말수당, 주말근무수당, 명절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제 수당 및 활동비, 식대비 등을 지급할 수 있음

- 5) 지자체의 자율에 따라 연가를 지급할 수 있음
- 6) 사업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담영양사를 2년 미만 사용하고 해고하는 사례를 자제하고, 같은 담당자가 연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영양플러스 사업 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

- 영양플러스 사업은 최저생계비 대비 200%미만의 임산부 및 영양 위험요인을 가진 대상으로 영양교육·상담 및 필수 영양소를 공급 하는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민간 시장에서는 공급이 어려운 서비스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시행령 제 3조 2항 제 1호에 따른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봄이 타당함. <노동부 공문 고용차별개선정책과 -469호(2009.6.23)>
- ※ 위 노동부 공문은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설정한 것임. 이에 근거하여,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담영양사의 연속 고용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7) 지자체에서는 정규직·정규계약직 담당자 확보 및 지자체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담당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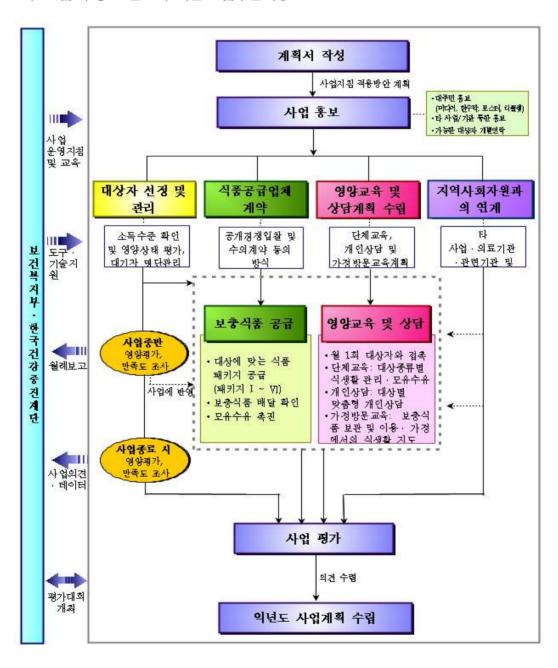
라. 전담영양사 채용 보고

- 1) 사업 전담영양사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모집·선정함.
- 2) 인력 신규 채용 등 인력 변동 사항은 월별보고에 포함하여 보건복지부(건강 정책과)에 보고하여야 함.



3. 사업수행 보건소의 역할

가. 사업 수행 보건소의 역할(사업추진내용)



나. 사업 수행 보건소의 기타 역할

- 1) 사업 지침에 따라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 계획 수립 및 보고
- 2) 사업 지침에 따른 사업 수행
- 3) 사업 데이터 입력·관리 및 정기적 진행현황 보고
- 4) 사업과정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과 해당지역에서의 효과적인 사업 수행방안 모색

다. 담당자 교육 및 훈련

- 1) 세부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가) 담당자 교육 및 사업설명회
 - 목적: 전체적인 사업의 목표 및 내용 설명을 통해 사업 기획 및 인력 활용에 도움
 - 교육대상: 보건소장 및 시·도 담당자
- 나) 담당자 직무교육
 - 목적: 전담인력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영양플러스사업의 내용 및 수행 방법에 대한 이해와 능력을 습득
 - 교육대상: 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 담당자 및 전담 영양사
 - ※ 신규 담당자교육 / 경력 담당자교육 / 소그룹 교육으로 구성
- 다) 식품공급업체 교육
 - 목적: 사업의 보충식품제공의 목적과 식품관리 및 서비스 교육
 - 교육대상: 식품업체 사장 및 배달 직원

- 2) 사업담당자는 교육·회의 참석을 통해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사업을 담당하는 타 보건소와의 의견과 정보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함.
- 3) 해당 보건소 및 지자체는 사업담당자(기간제 근로자 포함)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함.



4. 예산

가. 시ㆍ도 사업비

- 1) 시 · 도 사업 운영비
- 가) 시·도에서는 관할 시·군·구별로 교부할 국고보조금에서 보건소마다 100,000원 이내로 시·도 사업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지방비 (50%)를 확보해야 함.
 - ※ 예) 서울특별시 시·도 사업운영비
 - 국비 : 서울특별시 25개 보건소×200,000원×50% = 2,500,000원
 - 지방비 : 서울특별시 25개 보건소×200,000원×50% = 2,500,000원
- 나) 시·도 사업운영비는 지역자문진 운영, 자문회의, 모니터링, 사업홍보, 여비 등 기타 동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음.

나. 보건소 사업비

- 1) 개요
- 가) 사업비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국비 50%와 지방비 50%로 구성됨.
- 나) 사업비는 각 보건소별 요구 및 수용 가능한 대상자 규모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함.
- 다) 예산 규모 결정을 위해 보건소별 사업계획서 작성 시 대상자 규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시·도 및 보건복지부의 검토를 거쳐 대상자 규모를 조정 하여 최종적인 대상자 수 및 예산이 결정됨.

- 라) 해당연도 사업비의 불용액이 많거나, 사업담당인력을 축소하여 채용한 경우 다음 연도 예산 배정 시 사업비를 차등적용 할 수 있음.
- 마) 보건소별 사업비 산출기준은 표 18과 같음.

표 18. 2011년도 사업수행보건소의 사업비 산출기준 및 전용기준

구 분	금 액	전용기준
□ 인건비 ○ 모든 사업 수행 보건소	 전담영양사 1인당 총 19,500,000원 월 1,500,000원, 13개월분 ※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 및 퇴직금 포함 	전용불가 ※ <u>부득이한 경우</u> 보건복지부 승인 필요
□ 직접비		
 보충식품비 보건소별 식품 선정 내용과 대상자 구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보충식품비 단가: 1인당 월 62,000원 ○ 최저생계비 대비 120%미만 - 대상자 1인당 62,000원(국비지원) ○ 최저생계비 대비 120%~200%미만 - 대상자 1인당 55,800원(국비지원) - 대상자 1인당 6,200원(수혜대상자 자부담) 	10%이내 <u>※ 보 층 식 품 비</u> 전용 시, 기 계획된 대상자 수 준수
여비 및 기타 운영비 여비, 회의비, 인쇄비, 강사료, 검사재료비, 장비구입비, 차량 임대·유지비, 시도자문위원 회의비·자문비, 교육자료 제작비, 회의준비비 등	○ 대상자 1인당 약 60,000원	20%이내
□ 담당자 교육비○ 사업 담당자 교육비	○ 국비교부액: 보건소 당 349,000원 ※ 349,000원×2명×1개소×50% (지자체비 포함 총 698,000원)	-

2) 인건비

- 가) 인건비의 국비 지원은 대상자 수가 100인 이하인 경우에는 1인(1인의 50%) 까지, 100인을 초과할 경우 2인 까지임(2인의 50%).
 - ※ 상기 기준은 국비지원기준이며, 2인을 초과하는 그 외 담당인력의 인건비는 100% 지자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 나) 각 보건소별 대상자 수 계획에 따른 최소인력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자체 에서는 이를 위해 필요한 추가 인건비를 확보하여야 함.
- 다) 2011년 사업 수행 보건소에 대한 인건비 지원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임.
- 라) 사업 전담영양사로서 본 사업을 위해 국비 또는 지방비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전담영양사에게는 월 150만원 이상(연 1,950만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 ※ 인건비, 4대 보험료, 퇴직금 및 제 수당관련 기준은 '2. 사업 수행보건소의 인력(p105)'의 근무조건 참조

3) 여비 및 기타 운영비

- 가) 여비: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에게 공무원 여비기준에 따라 가정방문교육 및 중앙·지역교육 참석 등에 필요한 여비를 지급하여야 함.
 - ※ 지자체 규정에 따라 여비가 인건비 목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경우, 여비를 인건비 목으로 전용하여 지급 가능함. 단, 출장 시 인건비 규정 외에 추가로 여비를 지급.
- 나) 장비구입비: 사업담당자용 컴퓨터, 빈혈검사기기 및 관련 소모품, 신장계, 체중계, 대상자 파일 보관용 서류함(잠금장치). 단, 전적으로 본 사업에 이용되는 경우에 한함.
- 다) 가정방문교육용 차량 임대료 및 유지비
 - ※ 차량리스: 경승용차(조달청 가격)
- 라) 자문위원 기술지원비(자문비)

4) 교육비

가) 중앙교육 참여를 위한 2011년도 담당자 중앙교육비는 시·군·구에서 한국 건강증진재단(영양사업팀)으로 일괄 납부함.

다. 보건소 사업예산 관련 기타 사항

- 1)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전용이 불가함. 부득이한 경우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2) 목간 전용이 필요한 경우 보충식품비는 10%, 여비 및 기타운영비는 20% 이내의 범위에서 내부 결재를 받아 증감하여 사용할 수 있음.
 - ※ 단, 보충식품비 전용 시 각 보건소별 계획된 대상자 수 준수
- 3)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가정방문교육을 위해 반드시 본 사업 전담 차량을 확보하고 그 유지비용을 지원하여야 함.
- 4) 지원액(매칭펀드 포함)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도의 지방비를 확보하여 집행할 수 있음.
- 5) 자치단체에서는 이 외에 사업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함.



5. **사업보고**

가. 사업실적 보고(시·도)

- 1) 각 시·도에서는 예산사용 내역 및 사업수행내역을 연 2회(6/30, 12/31)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및 한국건강증진재단(영양사업팀)에 제출하여야 함
 - 예산 집행현황, 자문위원 현황, 자문위원회 실시현황, 사업지원 및 지도· 감독 실시 현황

나. 사업실적 보고(시·군·구)

- 1) 사업 수행 보건소에서는 정기적으로 사업실적을 시·도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에서는 이를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및 한국건강증진재단(영양사업팀)에 제출하여야 함.
- 2) 사업실적보고 주기 및 내용
- 가) 사업실적보고의 주기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월별 보고	분기별 보고	10월말 보고	기타	제출일	
□ 사업담당자 현황		0	0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월말보고	· 월별 보고	
□ 예산 집행현황	0		0		-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시·도로 제출	
□ 기타 사업현황					∘ 분기별 보고 - 3,6,9,12월 말기준으로 작성	
- 대상자 현황	0		0		하여 익월 5일까지 시·도로 제출	
- 소득수준별 대상자 현황		0	0		◦10월말 보고	
- 자부담 대상자 현황		0	0		- 10월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시·도로 제출	
- 보충식품패키지별 대상자 수		0	0		○ 인력 변동 수시 보고	
- 보충식품 패키지별 단가 및 식품별 단가		0	0	1회 입력 <i>후,</i> 변동 있는	-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익월 5일까지 시·도로 제출	
- 업체계약정보		0	0	경우만	 ※ 시・도에서는 시・군・구 보고내용을 취합하여 익월	
- 영양교육실시 현황	0	0	0		10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및 한국건강	
- 사업홍보방법			0		증진재단(영양사업팀) 으로 제출	
- 사업운영관련 특이사항, 질의 및 건의사항		0	0			

- 3) 실적보고 방법
- 가) 실적보고 양식에 따라 시·도를 통해 제출
 - ※ 서식부분 참고(별도 엑셀파일 서식 제공)

다. 사업 데이터 관리

- 1) 각 보건소에서는 영양플러스사업 관리프로그램에 대상자 관리내역 등 사업 관련 사항을 정확히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함.
- 2) 영양플러스사업 관리프로그램 이용 및 데이터 제출 기준은 다음과 같음.

구분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 사용 보건소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시스템 미사용 보건소
데이터입력 관리프로그램	영양플러스 관리프로그램	wic 3.0 프로그램 (컴퓨터 개별 설치용)
영양섭취량 산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개발 영양솔루션 (웹기반)	한국영양학회 개발 CANPro3.0 프로그램
데이터 최종 취합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입력 ※'11.10.31까지 입력완료	사업데이터(mdb화일)제출 <u>※'11.10.31까지 제출</u>
기타사항	 ※ 최종 데이터 제출 외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수행 중에 데이터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각 보건소에서는 입력한 데이터를 기한 내에 제출 하여야 함 ※ 제출 전 사업데이터가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검토 	

IV. 기타사항



🖊 1. 사업지침의 적용

가. 사업지침의 적용시점

1) 개정된 건강보험료에 의한 소득기준 및 기타 사업지침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나. 지침적용의 예외

- 1) 사업지침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와 다른 내용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필히 보건복지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함.
- 2) 2011년 사업지침 개정 전 사업 참여를 시작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연도별 최저생계비 개정에 따른 대상자 선정 가구소득 기준 변동 내역 등 변동내역을 자격재평가 시점까지 유보하고 기존의 자격을 유지함.



2. 해당 시·도 및 보건소의 사업지원

가. 인력지원 및 기타

- 1) 해당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사업운영지침에 명시된 전담영양사 수 및 전담 영양사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사업운영지침의 규정에 위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함.
- 2) 사업 수행을 위해 시·도 담당자 및 보건소장은 다른 기관·팀과의 업무 연계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함.

나. 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 1) 보건소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사무실, 교육장, 상담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사업에 필요한 기타 시설과 설비를 마련하여야 함.
 - 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기본 시설, 장비 및 물품은 다음과 같음
 - 기본시설 및 장비내역

장비 및 시설

교육실, 상담실

교육을 위한 장비: 노트북 컴퓨터, 빔프로젝터, 마이크 시설 등

대상자 관리 전용 PC 및 프린터기

담당자 사무용 책상 및 의자

방문차량

대상자 파일 보관 캐비넷(잠금장치)

대상자 상담 및 관리를 위한 전화기

체중계, 신장계

ㅇ 기본물품내역

분류	물품명
비품	휴대용 헤모글로빈 측정기 사혈기
소모품	해모글로빈 큐벳 채혈침(lancet) 소독액, 소독솜, 소독거즈 반창고, 밴드, 면봉 기타 소모품 및 필요 약품 교육자료 및 도구(영양상담용 식품모형 등)

- 기타 권장사항: 방문교육용 영양플러스 가운 및 가방 등
- 나) 안전한 교육이 되도록 하기 위한 사전 장소 점검 사항
 - ① 교육장에는 유아가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칠 수 있는 방해물이 없도록 함.
 - ② 창문 주변에는 딛고 올라설만한 물건이 비치되어 있지 않도록 함.
 - ③ 날카로운 물건(칼, 송곳, 가위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함.
 - ④ 모든 비품 및 놀잇감은 청결하게 관리하고, 모든 놀잇감에는 날카로운 부분이나 모서리, 가시, 갈라진 곳, 삼킬 우려가 있는 작은 부속품이 없도록 함.
 - ⑤ 바닥은 미끄럽지 않아야 함. 미끄럼 방지장치가 있는 경우 파손된 곳이 없도록 함.
- 2) 본 사업은 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G4C)의 이용허가를 받은 사업이므로, 해당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3) 해당 시·도에서는 시·군·구가 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함.
- 4) 보건지소는 해당 보건소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 해당 보건소의 업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함.



3. **개인정보 보호**

가.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 1) 대상자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해 대상자 등록 시 등록서명 용지에 있는 개인 정보의 활용 동의서를 확보하여야 함.
- 2) 업무 수행의 명확한 목적과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수집 하여야 함.
- 3) 대상자 관리를 위한 서식에 대한 모든 정보는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보건소에서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관리함.
- 4) 서식의 안전과 비밀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서식의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함. 단, 연구 또는 특수한 목적으로 문서의 열람이 필요한 경우는 영양플러스사업 책임자의 허가를 받아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열람하여야 함.
- 5)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Ⅶ. 질의 및 답변



🚺 1. 대상자 선정과 관리

내용 분류	질문 및 답변
대상자 선정	Q. 실제로는 관내에 거주하나 주민등록상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대상 자격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반장의 증명서나 가구방문 등으로 거주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대상자 선정	Q. 등본상에 기재된 가구원 수와 건강보험증에 올라와 있는 가구원 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두 가지 중 어느 자료를 기준으로 가구원 수를 계산해야 하나요? A. 가구원 수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및 직계존비속 (대상자 및 배우자 기준)으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2촌의 범위에 속하지 않은 자가 해당 가구의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이 증명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에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경우 포함된 모든 가구원의 소득을 합하여 소득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라면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가구원 수를 근거하여 판단하도록 합니다.
대상자 선정	 Q. 대상 자격기간 만료로 2-3개월 밖에 참여를 못하는 대상자에 대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A. 유아와 출산・수유부는 2-3개월 밖에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기간이 되면 자격이 종료됩니다. 영아와 임신부는 영양위험요인이 있으면 유아와 출산수유부로 전환되어 계속 자격이 유지됩니다. 유아의 경우, 대상자격은 생후 72개월 미만까지가 자격유지기간이나, 약 6개월간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대상자 선정 시 66개월 이하의 유아로 한정하여 선정할수 있습니다.

내용 분류	질문 및 답변
대상자 선정	Q. 대상자 선정 시 빈혈 검사의 결과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나요? A. 영양평가 항목 중 빈혈, 저제충 등 '영양의학적 위험요인'은 '식생활 위험요인'보다 우선순위가 높으므로 빈혈 검사의 결과만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상자를 신속하게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혹은 신청자/대기자가 많아 위험도가 높은 대상만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라도 4가지의 영양위험요인 평가(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조사, 기타예외조항조사 등)는 모두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자 교육·상담이 이루어져야하며 그 결과의 데이터는 반드시 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합니다.특히, 24시간 회상법을 통한 영양섭취상태 조사는 대상자의 섭취 실태 파악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이므로 반드시 조사되어야 하고 데이터의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상자격	Q. 영아의 경우(0-5개월) 완전모유수유를 하면 대상자가 되어도 식품 패키지로 공급할 것이 없는데도 대상자 자격을 갖는 건가요? A. 네 그렇습니다. 식품패키지로 공급할 내용은 없지만 영아는 대상자격이 있으므로, 보호자는 영양교육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생후 6개월이 되어 식품패키지 2로 전환되면 쌀, 달걀, 당근 및 감자를 공급 합니다. 대신 완전모유수유를 하는 영아의 어머니(완전모유수유부)는 더 많은 식품이 지원되며, 사업에도 더 오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격	Q. 대상자로 참여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타 지역에서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가 해당지역으로 이사 온 후 영양플러스사업의 참여를 신청한 경우, 해당보건소에서는 공문을 통해 이사 전 지역의 보건소로 대상자 관련 서류를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관련서류를 송부하여 이사 온 대상자가 즉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이때 대상자는 기타 자부담 적용을 비롯한 모든 규정은 이전 후 지역의 사업운영 원칙을 따르도록 합니다. 참고로 예산상의 이유로 이전된 대상자를 즉시 참여하도록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전된 대상자를 대기자의 최우선 순위로 배정합니다. 이러한 대상의 경우에도 대기 기간 중 해가 바뀌어 소득을 다시 판정하여야 하는 시점이 된다면 소득재판정을 실시합니다.

2. 소득 기준

내용분류	질문 및 답변
소득기준	Q. 건강보험료로 판정한 경우와, 기타 서류로 판정한 경우 소득기준의 판정결과가 달라진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초생활보장수급증명이나 차상위 증명을 제외하고는, 건강보험료를 이용한 소득판 정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기타의 자료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참고자료로 이용합니다. 단, 위의 서류로 판정되지 않으나 사업 참여가 필요한 긴급한 대상자의 경우, 시군구청장이나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 혹은 보건소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 대상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Q. 사업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많으나 예산상 다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업지침상의 소득기준인 최저생계비 대비 200%보다 기준을 낮추어 적용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이 더 낮은 대상에게 더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침 상에서 대기자 관리를 위한 우선순위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이면서 영양위험이 있는 경우 우선순위 1순위에 해당하며, 기타 대상의 경우에 대해 우선순위 2-7을 적용하되, 같은 우선순위 내에서 추가 우선순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이 더 낮은 대상에 추가로 우선순위를 두거나, 같은 우선순위 안에서 유아 중 1-2세의 유아에게 더 높은 순위를 부여하거나,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미혼모가정, 3인이상 다자녀 가정, 다문화가정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법 등이고려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Q. 대상자 중 임신부의 수가 적어 선정의 어려움이 있는데 임신부의 경우에 소득기준을 완화할 수 없나요? A. 소득기준은 대상에 따라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소득기준은 그대로 지켜서 적용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Q. 대상자로 참여한 임신부가 출산한 영아가 자동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소득 재심사가 필요한가요? A. 이와 같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영아의 경우에는 동록 당시에 반드시 소득재심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마의 자격재평가 시점에 맞추어 소득재심사를 실시합니다. 즉, 엄마가 임신부로써의 참여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출산부로 구분변화하여 자격이 지속되는 경우, 엄마의 자격재평가 시점이 되었을 때 소득재심사를 실시하면 됩니다.



3. 대상자격유지 및 대상구분변화

내용분류	질문 및 답변
대상구분	 Q. 자격인정 기준에서 사업 참여 6개월 이전에 대상구분이 전환되는 대상의 경우 구분변화 시점에서 반드시 자격재평가를 하여야 하나요? A. 영아에서 유아로, 임신부에서 출산수유부로 전환시 자격재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환되는 시점까지의 사업 참여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았으면 자격재평가를 6개월 이후까지 유보할 수 있습니다
대상구분	Q. 엄마가 임신 중 대상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지만 대기자 명단에 있었고 아이는 현재 완전모유수유로 2개월입니다. 어머니와 아이에게 현재 발견되는 영양위험 요인이 없는 경우에, 영아가 자동으로 대상이 되니, 모유수유를 하는 어머니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A. 영아만 우선순위 3순위로 생후 6개월까지만 대상자격을 얻습니다. 영아가 현재의 영양위험요인은 없고, 어머니의 임신 중 조건 때문에 자동으로 대상이 된 경우이므로, 모유수유를 한다고 해도 이로 인해 다시 어머니가 대상자격을 얻지는 못 합니다
대상구분	Q. 엄마가 임신부로서 사업 참여 하다가 출산 후 완전모유수유를 실시하는 경우, 엄마의 자격재평가에서 위험요인이 발견되지 않으면 영아는 어떻게 되나요? A. 완전모유수유부로 전환 뒤 엄마나 영아 중 한 쪽에 빈혈이나 저체중 등 영양의학적 위험요인 있으면, 엄마 영아 모두 2순위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엄마에게 영양위 험요인 없으면 엄마는 자격이 종료되고, 영아만 3순위로 생후 6개월까지 자격을 인정 받습니다. 영아가 생후 6개월 이전에 자격재평가를 실시하여 영양위험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면 영아는 사업 참여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대상구분	Q. 임신부로 등록이 되었는데 유산이 된 경우에 자격을 유지시키나요? A. 영양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으므로, 출산부로 전환하여 유산일로부터 6개월까지 자격을 유지합니다. 단, 영양교육에 있어서는 출산부와 영아가 묶여 있으므로, 내용을 선별하여 영양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내용분류	질문 및 답변
대상구분	Q. 완전모유수유부로 등록했다가 혼합수유나 출산부로 바꾸어달라는 경우에는 어떡해야 하나요? A. 교육을 통해 모유수유를 지속하도록 최대한 설득하여야 하며, 혼합수유나 출산부로 바뀌면, 대상기간은 완전모유수유부의 절반의 기간인 6개월까지만 인정된다는 점을 알도록 교육합니다. 출산 후 6개월 이후의 대상자라면, 이러한 경우 엄마는 즉시 자격이 종료됩니다.
대상구분	 Q. 대상자 구분전환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영양평가 및 지식태도 측정 시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A. 대상자 구분전환 (영아→ 유아, 혹은 임신부→ 출산부)이 있는 경우 자격전환 시점에서 자격재평가를 실시해야 하나, 참여개시 후 6개월이 되지 않은 대상자는 평가를 유보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의할 것은, 지식태도 측정은 영아로서의 전, 후 그리고 유아로서의 전, 후가 모두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영양평가는 유보하더라도, 지식태도 설문지는 대상구분 변화 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즉 전환시점에서 영아 사후, 유아 사전평가를 모두 실시합니다.) 단, 영아로서의 자격참여가 1-2개월밖에 되지 않는 경우는, 처음부터 유아용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유아로서의 사전, 사후 설문지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영아설문지로 사전 조사를, 유아설문지로 사후조사를 하는 경우, 비교를 할 수 없어 분석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4. 식품패키지 관련

내용분류	질문 및 답변
식품 패키지	Q. 대상자가 특별한 이유로 인해 특수분유를 먹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상자에서 제외시켜야 하나요? A. 대상에서 제외하여도 무방하며, 보건소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대상자를 의료기관에게 소개하여야 합니다.
식품 패키지	Q. 대상자가 패키지 식품을 다른 가족과 나누어 먹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패키지 식품은 해당 대상자가 섭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상자가 패키지 식품을 대부분 섭취하도록 식사구성안 교육 등을 통해 식사계획을 하도록 하고 실천하게 하도록 합니다.
식품 패키지	Q. 지급되는 식품 중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그 식품만 제외하고 공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나머지 식품의 제공량을 조정하여 지급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대체식품 외의 다른 식품으로 바꾸어 공급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며, 이 경우 해당 식품을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체식품 범주에 속하면서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는 제품이 있다면, 보건소에 따라 이러한 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식품 패키지	Q. 12개월 유아로 패키지 3 지급대상이나, 아기의 발달저하로 이유식 섭취가 불가능하여 패키지 2 등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발달 저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등을 통해 아이의 상태를 진단하여 효과적인 대상자 관리가 되도록 합니다.
식품배달	Q. 우유 공급에 있어 매일배송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아파트 지역이 아닌 일부 외곽 지역 가구에 대하여는 업체의 매일 배송에 어려움이 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A. 시유의 경우 2·3일에 한번 배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더 큰 포장단위의 우유를 공급할 수 있으므로 가격 절감의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습니다. 또 배송이 어려운 지역이라면 멸균우유를 공급할 것을 권장합니다.

내용분류	질문 및 답변
식품배달	Q. 보충식품 중 우유가 현재 지침에 200ml로 표기되어 있으나, 시중에 주로 180~185ml가 시판되고 있습니다. 입찰 시 200ml로 입찰을 보았지만 통상적으로 180~185ml가 배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책은 없으신가요? A. 현재로는, 보충식품의 1일 공급량을 바탕으로 한달 제공량을 계산하여 공급하는 것이므로, 우유의 경우 185ml를 공급하고 있다면, 한 달 총 량을 맞추도록 한 달에 제공하는 총 개수를 늘려서 공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침에서는 대상에 따라 1일 400ml, 혹은 200ml의 양을 제시하고 있으나, 200ml짜리 상품을 공급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한 양을 제공하면 되는 것이므로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500ml, 1000ml 등의 포장단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식품배달	 Q. 배송업체에서 월 2회 배송(당근, 달걀 등)의 부담을 호소하고 있고 추가 1회의 배송을 하는 것은 배송비용의 낭비라고 생각 되는데 배송 횟수를 줄이면 안 되나요? A. 당근과 달걀, 감자 및 귤은 1개월분을 한꺼번에 배달할 수는 없으며, 배송간격의 원칙을 지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식품의 종류나 배송주기 등의 규정과 관련하여 지역 특성으로 인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및 한국건강증진재단(영양사업팀)과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식품배달	Q. 배송 시 수혜 대상자와 연락 등 만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A. 대상자에게 배송날짜를 미리 알려주면 도움이 됩니다. 일부 읍면 지역의 경우 특정일자에 보건지소 등에 대상자가 방문하여 교육도 받고 식품을 받아가는 형태를 병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5. 영양 교육

내용분류	질문 및 답변
단체교육	Q. 여러 내용이 해당되는 가구의 대상자는 어떻게 교육해야 하나요? A. 한 가구에 여러 대상자가 함께 있는 경우 들어야 하는 교육의 내용도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건소의 상황에 따라 교육과 상담의 조합방법과 분반계획을 수립합니다. 관할지역이 넓고 대상자의 보건소 방문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하루에 모든 대상의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계획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정방문	Q. 가정방문교육 시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예약하고 방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하고 연락이 두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시에 교육 미출석으로 간주하여도 되나요? A. 이러한 세부 사항은 보건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을 적용하는 경우 사전에 이러한 원칙을 대상자들이 이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정환경이 어려운 대상의 경우 가정방문을 꺼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대상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하여야 합니다.
교육방법	 Q. 농촌 지역의 경우 농번기 때는 대상자들이 농사일이 너무 바빠서 보건소에 와서 영양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 합니다. 이런 경우에 영양교육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A. 대상자가 영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 보건소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농사일을 끝내고 저녁 시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시간을 편성하거나, 농번기 시기에 맞춰 가정방문을 하여 개인 상담 등을 실시할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지면교육이나, 전화상담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기타	Q.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에서는 간혹 정신지체 등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상으로는 교육도 연속해서 3회 이상 받지 않으면 자격이 탈락될 수 있다고 하니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원칙상 특별한 이유 없이 교육에 3회 이상 불참할 경우 대상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참석할 수 있는 다른 보호자가 있다면 그 보호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보호자에 대한 교육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합니다. 자격 지속 여부는 대상자 및 보건소의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계속해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식품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여 본 사업 참여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면, 자격을 취소하고 타 사업이나 의료 기관 등에 연계할 수 있습니다.



<u>6</u> 6. **영양 평가**

내용분류	질문 및 답변
빈혈 검사	Q. 대상자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너무 낮을 경우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하나요? A. 보건소 내, 혹은 가까운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도록 연결해 줍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소개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병원에 가도록 하면 스스로 병원을 찾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대상자를 의료기관에 연계하여 주도록 합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모두 기록으로 남기도록 합니다.
섭취량	Q. 한 가족에서 엄마와 영아는 위험요인이 있어 대상자가 되는데, 유아는 위험요인에 걸리는 것이 없는 경우, 탈락시켜야 하나요? 한 가족에서 식습관이 좋지 않는 것이라면 같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아무 영양위험이 없으면 같은 가족이라고 해도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의무사항은 아니나, 영양교육은 유아보호자용 영양교육의 내용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설문지	Q. 식품패키지 1에서 식품패키지 2로 넘어가는 전환자도 모든 서류(지식태도 설문지, 보충 식품 의견 조사, 만족도 조사)를 받아야 할까요? A. 식품패키지가 변화될 때 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패키지는 달라져도 출생 후 12개월까지의 기간은 영아로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양평가	Q. 임신부가 출산 후 6주까지가 대상기간이나, 출산 후 6주 시점에 영양평가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를 실시해야 하나요? A. 이 경우 출산 후 10주까지 자격재평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재평가 기간에 의료기관에서의 검사한 혈중 헤모글로빈이나 신체계측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영양평가	Q. 자격재평가 시 대상 구분 변화로 인해 우선순위가 달라질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우선순위는 대상자 선정 시 모든 대상을 수용할 수 없을 때 적용하는 것이며, 이미 서비스가 개시된 대상에 대해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우선순위를 재적용하여 퇴록 처리하지 않습니다. 자격재평가 결과 영양위험요인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상구분 변화에 의해 우선순위가 변화되어도, 그와 관계없이 자격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내용분류	질문 및 답변
영양평가	Q. 임신부로 등록 후 유산된 대상자인 경우에도 출산수유부와 같이 유산 후 6주 이내에 자격유지 평가가 필요한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격재평가는 생략합니다. 단, 영양상태 관리를 위해출산부로 전환된 초기에 중간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권장됩니다.
영양평가	Q. 사업 종료 평가의 결과 영양위험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대상자격 만료 기간까지 사업에 참여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관계없이 프로그램을 졸업하게 됩니다. 단, 평가 결과 영양위험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 경우 1회(6개월간)에 한해 영양교육에는 참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영양평가	Q. 수유부와 영아의 영양위험요인 보유 여부 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A. 수유부나 영아 둘 중 한쪽만 영양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의 결과가 영양위험요인이 있다고 판정되면 한쪽의 평가 결과를 모두에게 적용하여 수유부와 영아 모두 영양 위험요인을 가진 것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임신 중 대상자격이 있어 자동으로 대상 자격이 부여된 우선순위 3인 영아는 현재 모유수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아가 영양평가를 받아 영양위험요인을 판정한 것이 아니므로, 이로 인해 엄마가 자동으로 대상자격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즉, 이 경우 엄마의 영양평가의 결과 영양위험요인이 없다고 판정되면 엄마는 사업을 졸업하게 됩니다.



7. 데이터 관리

내용분류	질문 및 답변
데이터 관리	Q. 9월 4일 ~ 9월 6일 3일간 추가 모집자를 선정하여 9월부터 식품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양위험도 조사를 사업기간 중 2회만 실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데이터를 사업 전·중·후의 3회를 얻지 못합니다. 이들의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A. 사업 전후 데이터는 모든 대상자에 대해 조사되어야 하나 사업 참여기간이 짧은 경우는 사업 중반의 영양평가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사업 중 영양 평가는, 평가 간격이 약 3개월 정도가 되도록 권장하므로, 사업기간 약 6개월 이상의 대상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고 해도, 대상자의 상황파악을 통해 상담에 참고하고자 중간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관리	Q. 접수 시에는 임신부였으나 사업 전(식품지급전)에 출산한 경우 대상구분 및 데이터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대상구분이 출산부로 변화된 것으로 기록하고, 자격재평가는 필요하지 않으며, 사업 종료 시 데이터와 비교가 가능한 데이터를 확보합니다. 서비스개시일이 접수한 날로 부터 3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상담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참여 개시 시점에 출산부로서의 사업 전 영양평가를 실시할 것이 권장됩니다.



🤏 8. 기타

내용분류	질문 및 답변
담당자 회의 및 교육	Q. 담당자회의 및 교육 참석 시 보건소에서 자주 출장을 간다며 싫어하여 출장 허락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자 교육 및 회의가 꼭 필요한가요? A. 사업 및 대상자 교육에 대해 정보를 나누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선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영양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교육 및 의견 교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본 사업에서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담당자 회의 및 교육에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합니다.

₩. 관련 서식

<필수서식>

- 1. 대상자 신청 관련양식
 - ※ 신청 접수 시에는 필요한 일부 항목만 조사하여도 무방함
 - ※ 확정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업 시작 시점까지 모든 항목이 조사되도록 함
 - 1) 대상자 가구정보 (필수): 신청자 작성 가능
 - 2) 대상자 개인화일 (필수): 신청자 작성 가능
 - 3) 대상자 개인화일-영양평가 (선택): 담당자 작성
 - 관리프로그램 입력을 위한 참고자료
 - 서식에 포함된 내용조사는 필수이나, 본 서식 사용은 선택사항
 - 관리프로그램에는 모두 입력되어야 함.
 - 4) 식품섭취조사표 (선택)
- 2. 대상자 등록서명: 선정된 대상자에 대해 확인 및 서명
- 3. 보충식품 공급업체 확인서
- 4. 영양지식 및 태도 조사 문항
 - ※ 사업 전 및 사업종료 시 조사
 - 1) 영아보호자용
 - 2) 유아보호자용
 - 3) 임신부용
- 5. 사업 만족도 조사 문항

<선택서식>

- 6. 대상자 신청 관련 기타 양식
 - ※ 대기자 접수증, 이주 대상자 연계양식 등
- 7. 대상자 관리양식
 - ※ 대상자 영양평가 및 대상자격 변경 기록
 - ※ 담당자 작성 (관리프로그램 입력을 위한 참고자료)
- 8. 사업관리양식: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 참고로 함

서식 1. 대상자 신청 관련 양식(필수)

영양플러스사업 참여 신청서

대상자 가구 성모 #1									
※신청자는 굵은 선 안의 내용만 작성합니다.									
시・도명	<u> </u>			보건소명					
가구 ID									
세대주명	!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			
세대주 최종학력	□ 초졸	□ 중졸	□ 고졸		대졸	□ 대학원졸	Ī		
집 주소						((우편번호:	-)	
기타 주소 (필요한 경약									
집 전화번	<u> ত</u>			휴대폰 1					
직장전화반	<u>†</u>			휴대폰 2					
이메일주 <u>:</u>	소			신청일	녆	월.	일		
사업 참여	념를 원하는 가구 원	4		※사업참여(희	망) 가구원 중	나이가 많은 시	나람부터 작	성	
가구원번호	이름	생년월일			대상자유형				
01				□임신부	·(P) □출산 ⁴	누유부(W) □]영아(I) [□유아(C)	
02				□임신부	□임신부(P) □출산수유부(W) □영아(I) □유아(C)				
03				□임신부	-(P) □출산 ²	` 유부(W) □]영아(I) [□유아(C)	
04				□임신부	-(P) □출산 ^스	` 유부(W) □]영아(I) [□유아(C)	
총 사업참 가구원		명			상종류구분 당자 작성	(예) 임신부+영	아가구=PI		

#2

영양플러스사업 참여 신청서

대상	지	가	7	정부
	/NF			

※신청자는 굵은 선 안의 내용만 작성합니다.

17 -							
기구 ID ※ 담당자 작성							
10 1 10							
총 가족수						명 (태아포함)	
소 득구 분	□ 기초생활수	구급대상		차상위		□ 기 타	
모・부자 가정여부	□ 모자가정	j _ 7	부자가정	□ 조	부모가정	□ 해당없음	
건강보험료 납부액 (본	인부담금)		직장가입	자 가구의	 경우		
가구원 1 (□직장 □지]역) 월	원	40-1		·종 1:	O)	
가구원 2 (□직장 □지]역) 월	원	─ 보유자 ─(보유대수:		평가액 -조 2:	원)	
가구원 3 (□직장 □지]역) 월	원	<u>一</u> (エ开네干・ 	• •	。 2. 평가액	원)	
합계 □직장 □ 지 ※ 담당자 작성 월	시역 □혼합(직정	+지역) 원	종합부동	등산세 🗆] 납부대상자	□ 납부제외자	
참여 중인 기타 보건소	사업		수혜 중인	<u> 기타</u> 복지	/지원 사업		
1. 2. 3.			□ 산모 · □ 기타 □ 기타	1:	-미 지원사업		
	 위와 7	 같이 영양플러스	 스사업 참여를	신청하며,			
	위의 내	용이 사실과 디	h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작성란							
가족수 및 주거 확인을	위한 방법		기타 소득	라면 참고	자료 (선택사형	<u>;</u> t)	
□ 주민등록 등본			□ 국민기	초생활수급다	상 증명		
□ G4C □ 기타 (\		급대상 증명			
,		,	□ 소득금 □ 근로소	액증명원 득원천징수부	나 사보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 월금명	세서	, _		
※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	험료 포함 확인 (필	<u>l</u> 수)		임금발행서 조면 ware	그리된 사이다	n 0	
□ 건강보험카드/사본 ※ 거가ㅂ허ㄹ 화이·다으	주 태 1 <i>(</i> 피스)				증명할 수 없는 7 사회복지사 추		
	※ 건강보험료 확인: 다음 중 택 1 (필수) □ 시군구청장/읍면동 사회복지사 추천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증명						
,	□ 월급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포함) □ 자동차 보험증권						
□ 통장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포함)		□ 기타()	
소득기준판정			적합		□ 부적합		
보충식품비 자부담 대성	상여부 판정		자부담 대상		□ 자부담	제외	
특이사항:							

영양플러스사업 참여 신청서

대상자 개인 파잌 [영유아용]

			네경사 개	16 -	12 [0]	1 4101				
※신청자는 쿨	수은 선 인	<u>:의 내용만</u>	작성합니	<u>다. </u>						
대상자 ID										
이름					성별 □	급 □여	국적			
주민등록번호	_				생년	월일				
신청일					신청 시 (연령/월령	녕 [만]	년		개월
보호자명	※ 어머니기	l 있는 경우 어디	머니 이름		보호 주민등	•				
보호자 최종학력	□ 초졸	□ 중졸	□ 고졸				 학원졸			
대상자와의 관계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형 <i>7</i>	세 □친척	□기타()
주요 육아담당지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형 <i>7</i>	세 □친척	□기타()
보호자(임신부 . ☞ ('예'인 경우				한 적	이 있나요		□ 예 년도)		아니오 참여 중	
영아 (12개월	미만)- 건경	강 · 영양상태	및 식생활	관련	문항					
수유형태	완전모유수-	유 🗌 혼합수	누유 □ 조제	유			모유수유기간 ^선 모유수유기간			개월 개월
	 나 체중은 일	 얼마였습니까?	?		cm kg					
이유식을 먹고	있나요?	□ 예 ☞ ('예'인	,	몇 개월	아니오 일에 이유? 이유식은		가했나요? 만 (먹나요? ()) 개월)회	
하루 수유 횟수	-와 양은 일	얼마나 되나요	2?		()회 (하루 총)ml			l
일반우유(시유)	를 먹고 있	나요?			_ 예		□ 아니오			
어머니가 임신 자격이 있었나.		참여하였거니	나, 사업참여		□ 예 □ 아니오					
[영아 중 모유 * 판정되었나요?		버니가 영양불	블랑으로		□ 예 □ 아니오					
영아 및 유아	- 앓고 있·	는 질환 및 건	건강관련 특(기사형	당이 있으	면 써주	세요			
※ 담당자 작성린	<u> </u> 입니다 (ㅈ	· 격판정 이후	작성)							
자격판정일 서비스개시일					접수	자				
최초자격분류	□ 대상자	· □ 부 ²	<u></u> 적합 [□ 대:	 기자					
신청 시 대상자 구분		2개월 미만)	□ 유아		우선:	순위		3 🗆 4 [5 🗆	6 🗆 7
식품패키지 구분	□ 1 □	2 3 [□ 4 □ 5	□ 6	영아 (상세국		□ 모유 □		조제유	

영양플러스사업 참여 신청서

대상자 개인 파일 [임신부 및 출산·수유부용]

※신청자는 굵은 선 안의 내용만 작성합니다.

대상자 ID								
이 름					국 적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신청일					신청 시 연령	만		세
최종학력	□ 초	·졸 🗆 🗎	중졸	□ 고졸	□ 대졸	□ 대	학원졸	
출산(예정)일		k.	1		월	일		
임신 주수	만		7	<u> </u>	출산 후 개월	수 만		개월
임신 전 체중				kg	수유형태 (출산수유부민		모유수유 🗌 유	혼합수유
	-II m I A I	세취 기과 드	1분					
건강 · 영양상 [임신부] 조산,			_	처선기현()·			
있나요?	· · i 🗀 , i i	L, M/11691			7 20 069	□ 예	□ 아니오	<u>)</u>
[임신부/출산 • · 증명서제출	수유부]	현재 쌍생아	이상을 임	심신/ 출 산	하였나요? □	□ 예	□ 아니오)
[출산·수유부]	아기의	출생 시 신정	방 및 체중	은 얼마?	년나요?		cm	kg
[모유수유부] 양	형아가 영	양불량으로 귀	판정되었 ^し	나요?		의	□ 아니오)
임신 중 철분도	ᅼ충제를	복용하였습니	까?				에	□ 아니오
☞('예' 인 7			년 월	일 부터		년 월 역	일까지	
임신 중 술을 '				1 4 0 - 1)		4 는) -) - F	_ 예 _ 이 4 커 4) V	□ 아니오
[- [[] (예 인 경	,				□ 3회 이상 월 ·, 소주, 양주, 포			□두 1외 이상 잔
앓고 있는 질환				•		., .,		-
※ 담당자 작성린	·입니다 (;	자격판정 이후	작성)					
자격판정일	<u>ы т т х</u>		10/		저스키			
서비스개시일					· 접수자			
최초자격분류	□ 대성	사 🗆	부적합	□ 대	기자			
신청 시 대상자	나 구분	□ 임신부	□ 출신	ナ・수유부	우선순위		3 🗆 3	□ 5 □ 6 □ 7
식품패키지-			2 🗆 3	3 🗆 4	□ 5 □ 6	□우유(4	l-2 혼합수유부 <i>,</i>	, 산후 6개월 이상)
임신부가 사업 출산한 경	참여 중 우	출생 시 영어 출산상태:	,	는산 □-) cm 유산 □ 사산		중 (□ 선천성기형) kg □ 기타문제

대상자 개인 파일 - 영양위험평가 [담당자용]

※관리프로그램에서 일부 항목은 자동 계산되므로, 기본사항과 측정치만 기록해도 무방합니다.

대상자 ID			평가일	<u> </u>				
대상자 이름			평가일 등 대상자 구		□P □W □I □C			
영양평가목적	□ 초기대상자판	-정 □ 자격재된	 판정	□ 사업	중평가 □ 사업종료시평가			
위험요인 분류	측정항목	체중			ВМІ	신장별체중		
	측정치	cm		kg				
영양의학적 요인-신체계측	백분위수							
	영양의학적 위험판정	□위험 □비위험	□위험 □	비위험	□위험	□비위험	□위험 □비위험	
영양의학적	헤모글로빈 농도	g/dl		 위험	□비위	<u></u> 헌	본인(보호자) 서명	
요인-빈혈	11222	<i>\otilde{\otide{\otilde{\otilde{\otilde{\otilde{\otilde{\otilde{\otilde{\otilde{\otilde{\otilde{\otide{\otilde{\otilde{\otilde{\otilde{\otilde{\otilde{\otilde{\otilde{\otide{\otilde{\otilde{\otilde{\otilde{\otilde{\otide{\otilde{\otide{\o</i>		П	L , , ,	Р .		
판정기준			지침침	나조 				
영양의학적 요인	종합 판정	대상자격 기준에	적 합	()	부적합 ()	
				1				
판정일자	1			I				
2021		분석 도구	1	□영양 	솔루션	□Can-Pro	o3.0 □기타 	
그룹망	병()	아이디(솔루션 남의 평가		o3.0 □기타)	
) 프로			일(o3.0 □기타) 인 위험판정	
그룹망	측정항목(□에너지 □ □철분 □	아이디(부적합 영양소에 v]단백질 □칼슘) 프로/표시)	그램 싱 판 정 기		일()	
기름명의 보류의 기를	측정항목(□에너지 □ □철분 □	아이디(부적합 영양소에 v]단백질 □칼슘) 프로 / 표시) ^금	그램		일(식생활요() 인 위험판정	

대상자 개인 파일 - 영양위험평가(예외조항) [담당자용]

※담당자가 작성합니다.

대상자 ID		
위험요인 분류	측정항목	영양의학적 위험판정
예외조항1	[임신부] 이전에 조산, 사산, 유산, 저체중아 혹은 선천성 기형아 출산 경험이 있나요?	□예(위험) □아니오(비위험)
(영양의학적)		□예(위험) □아니오(비위험)
	□ 증명서제출확인	
※자격재평가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출산·수유부] 저체중아를 출산하였나요?(2.5kg 미만)	□예(위험) □아니오(비위험)
	[영아] 저체중아로 출생하였나요?(2.5kg 미만)	□예(위험) □아니오(비위험)
	[영아 3개월 미만] 이유식을 먹고 있나요?	□예(위험) 아니오(비위험)
	[영아 6개월 이상] 이유식을 먹고 있나요?	□예(비위험) 아니오(위험)
예외조항2 (식생활요인)	[영아] 몇 개월에 이유식을 시작했나요?	□만 3개월미만, 혹은 6개월 이상(위험) □만 3-6개월 사이 (비위험)
(70246)	[영아] 수유횟수는 하루에 몇 번인가요?()회 → 수유횟수가 월령에 비해 너무 적은가요?	□예(위험) 아니오(비위험)
	[영아, 12개월 미만] 일반우유(시유)를 먹고 있나요?	□예(위험) 아니오(비위험)
기타예외조항	[영아] 어머니가 임신 중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사업참여 자격이 있었나요? ※이 경우 영아는 우선순위 3군으로 적용	□예(위험) □아니오(비위험)
	[영아, 모유수유아] 어머니가 영양불량으로 판정되었나요? ※이 경우 영아는 어머니와 같은 우선순위군으로 적용	□예(위험) □아니오(비위험)
※자격재평가시에는 학 적용하지 않음	[수유부] 영아가 영양불량으로 판정되었나요? ※이 경우 수유부는 영아와 같은 우선순위군으로 적용	□예(위험) □아니오(비위험)
	[기타요인]	□예(위험) □아니오(비위험)
기타 예외조항 판정	대상자격 기준에 적 합 () 부적합 ()
	영양위험 종합판정 (예외조항 포함)	
적	합 () 부적합 ()

식품패키지 구분					
1. 영아용 0-5개월 2. 영아용 6-12개월 3. 유아용 만1세-만6세미만 4. 임신, 수유부용	판정일	우선순위	식품패키지 판정	수유방법 (식품패키지 I, II의 경우)	시판이유식 공급여부 (식품패키지 II의 경우)
5.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출산후 여성용6. 완전 모유수유를 실시하는 수유부용				모유, 혼합, 분유	비공급, 공급
4-2. 우유(혼합수유부, 출산후6개월 이상)				모유, 혼합, 분유	비공급, 공급
특이사항					

		식품섭취:	조사표 [영아용]			
성명:	(남, 여) 생년	<u> 1</u> 월일:		ID:		
날짜:	면담지	ļ:	분석도	근구: □영양솔루	년 □Can-Pro3.0) □기타
	▼ 주의사항● 하루동안 먹은 모든 것을 기록해주세요● 어제 먹은 내용이 평상시 식사패턴과 크게 다르다면 다른 날을 선택해주세요.					
 ※ 영아는 밤중 수유를 합니까? □ 예 □ 가끔 □ 아니오 ※ 영아는 식구들과 함께 식사합니까? □ 자주 □ 가끔 □ 아니오 ※ 영아는 정해진 자리에서 식사합니까? □ 예 (□ 아기용식탁 □ 상) □ 아니오 ※ 다음 중 이유식에 도입한 식품군은? 선택한 식품군에서 주로 요리에 사용하는 식품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식품군 도입	여부 이유	식에 도입한 4	식품 (모두 표시)	이유식 조리	시 자주 사용하는	: 식품
곡류군 0	, × 🗆 쌀	□ 잡곡 □ 점	감자 □ 고구마			
채소군 ○] 시금치 □ 버섯			
	, × □ 사괴		바나나 🗆 귤			
	, × □ ヱプ × □ ヨヱ	│] 달걀 🗌 두부 			
		: □ ㅜㅠ ㄴ ·유 □ 버터				
※ 식품 중 알레르기나 G				⊥ □ 아니오		
(예라고 답한 경우) 있				_ · · ·		
수유구분 시긴	소요시	<u>가</u> (조제유)	상표 (조제유)	제품명	섭취량(ml)	비고
모유/조제 (시	분)					
모유/조제 (시	분)					
모유/조제 (시	분)					
모유/조제 (시	분)					
모유/조제 (시	분)					
모유/조제 (시	분)					
모유/조제 (시	분)					
모유/조제 (시	분)					
모유/조제 (시	분)					
모유/조제 (시	분)					
이유 (시간) 음식(명 재	료명	목측량(섭	섭취량)	음식상태	비고
(시 분)					□ 미음 □ 죽 □ 진밥 □ 밥 □ 주스	
(시 분)					□ 미음 □ 죽 □ 진밥 □ 밥 □ 주스	
(시 분)					□ 미음 □ 죽 □ 진밥 □ 밥 □ 주스	
(시 분)					□ 미음 □ 죽 □ 진밥 □ 밥	

				식품섭	취조사표 [임신출(산부 및 유아용]		
날	짜: 상구분:		유아(1-5세)	면담자: □ 임신전기(1-1		ID : _ 분석도구: □영양솔 (13-26주) □ 임신후: 수유부	루션 □Can-Pro3.0	
*	주의사 • 하루 • 어제	항 동안 먹은	· 먹은 모든 것 · 내용이 평상	l을 기록해주세! 시 식사패턴과 3	요 크게 다르다면 다른	날을 선택해주세요.		
*	평소 ह	루 계	세 끼 식사를 ⁻	규칙적으로 하십 니까?	니까? □ 예 하루에	□ 예 □ 아니오 □ 아니오 회, 1호 회, 1회	J	
*	출생 /	시 영		산한 경우) cm	체중 (선천성기형 🗆 기타) kg)
	식사구	분	음식명	재료명	-	목측량(섭취량)	식사장소	비고
(간 식 시	분)						
	아 침							
(시	분)						
(간 식 시	분)						
(점 심 시	분)						
(간 식 시	분)						
(저 녁 시	분)						
(간 식 시	분)						

	식품	뚝섭취조사 평	가지(유아 임	신출산부용)-[담당자 작성		
*	· (선택)식품섭취 조사를 바탕 <u>:</u>	으로 대상자 싱	남시 이용				
성망	명:(남,	여) 생년월일:	:		ID:		
날찌	자:	면담자	÷	분석도·	구: □영양솔루션	□Can-Pro3.0	□기타
*	식품군별 섭취 상태						
		□ 곡류 '	 및 전분류			과일류	
	아침(아침 간식 포함)				□ 우유 및		
		□ 유지,	견과 및 당취	류 			
					□ 채소 및		
	점심(점심 간식 포함)				□ 우유 및	유제품	
			견과 및 당투 미 저보르			 키이ㄹ	
	저녁(저녁 간식 포함)	1			□ 채소 및 □ 우유 및		
	/\\\\\\\\\\\\\\\\\\\\\\\\\\\\\\\\\\\\	.,	さし, 필필 견과 및 당투			11 / 11 12	
	적절성 및 평가 : □ 적			<u>'</u>			
	평가	내용 :					
*	주요 관리 영양소별 섭취	취 상태					
	에너지 섭취량은 적절힌		<u></u> 예	□ 아니오			
	비타민A 섭취량은 적절			□ 아니오			
	단백질 섭취량은 적절힌	<u></u> 上가?	여	□ 아니오			
	나이아신 섭취량은 적절	보한가?	□ 예	□ 아니오			
	칼슘 섭취량은 적절한기	} ?	□ 혜	□ 아니오			
	철 섭취량은 적절한가?		□ 예	□ 아니오			
	리보플라빈 섭취량은 적	절한가?	<u></u> 예	□ 아니오			
*	기타 식습관 평가						
	식사 장소나 시간은 적건	절한가?		에	□ 아니오		
	끼니를 거르지 않고 규칙	칙적인 식사들	를 했는가?	□ 예	□ 아니오		
	간식의 양과 형태는 적	절한가?		에	□ 아니오		
*	식습관 관련 특이사항 !	및 상담 내용	<u>}</u>				

서식2. 대상자 등록 서명 용지(필수)

영양 플러스⁺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양플러스사업에서는 영양교육과 보충식품, 정기적 영양평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귀하 및 귀하의 자녀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영양플러스사업의 참여를 위해서는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알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는 보충식품의 잘못된 보관과 이용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해를 방지하고, 대상자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해 효과적인 사업이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읽고 확인 표시(√)를 한 후 서명을 하시면 대상자 등록이 완료됩니다. 본 사업을 위해 취득한 개인정보는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

시 • 도명:	보건소명:		ID:
으로 잘못된 정보 관련한 모든 비용 영양플러스사업 에서 혜택을 받는 연락처나 주소가	수혜 자격여부 판정을 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을 반환하고 그 외 불참여는 거주지 관할 1 경우 보충식품의 제공변경되는 경우 즉시 [편] 아이가 개선하여야	숨겨서 수혜자 판이익도 받을 수 있 개 보건소에서만 기과 관련된 모든 비용 당당자에게 알려야 할 영양문제가 무역	나능하며, 동시에 2개 이상의 보건소 용을 반환하여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함을 알고 있습니다.
□ 보충식품만 먹는 다양하게 이용하 □ 보충식품의 안전 알고 있습니다. 시 않은 경우 업체를	인) 아이에게 제공되는 다고 하여 영양문제가 여야 영양위험이 개선 한 한 수령과 변질 예방을 가전에 약속된 시간에 비 한 방문하여 직접 수령해	해결되는 것이 아 될 수 있음을 알고 · 위해 보충식품 배 내달기사가 도착하였 하여야 함을 알고 있	달기사와의 약속시간을 지켜야 함을 으나 대상자가 이를 2회 이상 지키지
문제가 있는 경약 당일에 연락을 하 있습니다.	² 즉시 보건소 담당지 사지 않아 수령 당시의	·에게 연락을 하여(상태를 알 수 없는	l, 3. 식품의 상태(신선도)를 확인하고, 야 교환이 가능함을 알고 있습니다. · 경우에는 교환이 불가능함을 알고
식품이 변질/파손 □ 보충식품을 임의.	된 경우에는 교환이 되	되지 않음을 알고 있 으로 교환하거나 E	을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부주의로 습니다. 판매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것은 범법
□ 보충식품의 제품 범위 내의 식품민 원하더라도 그러한	선정 및 분량은 보건복 공급 가능하므로, 대한 와 요구는 수용될 수 없	복지부의 사업운영지 상자가 다른 식품이 음을 알고 있습니다.	기침에 따라 이루어지며 일정 원칙· 나 공급 가능한 범위의 다른 제품을 따라서, 보충식품 중 대상자가 원하지 가 처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 식품패키지 이용 시 다음과 ○ 12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제공되는 달걀 중 노른자면 ○ 영아의 경우 보충식품 중 서서히 양을 늘려가야 함을 ○ 혼합수유 및 조제유수유 영 혼합하여 서서히 그 비율을 ○ 보충 식품은 가능한 한 공 하여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달걀흰자는 알레 난 섭취하여야 함 이전에 섭취하지 을 알고 있습니다 당아의 경우 분유 을 증가시켜가며 당급받은 해당 월	르기 발생 ⁹ 을 알고 있습 않았던 식품 : 가 이전에 ⁹ 적응기간을	위험이 높으도 습니다. 품을 줄 때에 먹던 제품과 가져야 함을	므로, 식품피는 소량으로 다르다면, 알고 있습	로 시조 기존 제 하니다.	t하여 베품과
III. 영양교육 관련사항 ☐ 영양교육과 상담을 위한 담으면 이 성당을 취하여야 함을 알고 이 있습니다. ☐ 충분히 수차에 걸쳐 공지되었 취소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	있습니다. 교육이 가장 중의 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 요소이.	므로, 반드시	영양교육	·상담	에 참여
Ⅳ. 기타 사항 대상자의 영양위험 해소를 된 함을 알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사업에 참여하여 '졸업' 하게 됨을 알고 있습니다. [기타 추가 협의사항] 위의 사담당자 간에 다음과 같이 협	영양위험요인이 니다. 나항 외에 보충식	해소되거나 품 공급 및	자격인정기	간이 종료	되면 /	나업에서
추가 협의 내용 :						
				년	월	일
	담당자 서명 _		대상지	자 서명		
본 사업과 관련하여 측정된 영양 이용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 되지 않으며, 사업 참여 자격여부 목적으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역	우라도 주민등록! 판정, 보충식품배:	번호나 세부· 송 및 본 사(주소, 전화번 업의 발전을 [:]	호 등의 개 위한 연구	인정보 및 분석 까?	.는 유출 너 이외의
	짐없이 대상자에 월 일		•			
위의 내용을 년	충분히 숙지하였 월 을	•	참여 중 위의 대상자 서명		<u>-</u> 수하것	냈습니다.

서식 3. 보충식품 공급업체 확인서(필수)

식품공급업체 확인서

본 식품공급업체()는 귀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영양
플러스사업의 보충식품 배송업무틑	를 담당함에 있어, 식품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식품의 관리소홀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배송 시점에
식품에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이상이 없는 동일한 식품으로
교환 제공하도록 조치하고, 보건소	의 연락하겠습니다.

소속	직급
담당자	_ (인)

○○ 보건소장 귀하

서식 4-1. 영아보호자용 영양지식 및 태도 설문지(필수)

영양플러스사업 - 영아(12개월이하) 보호자용 설문지 1-

11 EB H214B		대상자 성명 :		(°	연령	세)	
시 . 포워	시·도명 보건소명			(대상자와의	 관계)	
		조 사 일 :	년	월 일 (/	사업참여 전, 중,	- 종료)	
		조 사 원 :		서명			
※ 이 설문을 작성하기 전까지 교육에 참여한 횟수는?							_회
※ 사업 중과 사업 후의 응답자는 사업 전의 응답자와 동일인이어야 함.							
※ 설문지 1을 수거한 후에 설문지 2로 진행합니다.							

A.	다음의 사항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O,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X로 대답해 주십시오.	
1.	생후 6개월까지는 모유만으로도 영아의 충분한 영양공급이 가능하다()
2.	일반우유(생우유)는 생 후 12개월이 지나서 먹이는 것이 좋다()
3.	모유에는 모유만 갖는 면역물질이 있어 아기의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4.	모유에는 영양소가 부족하므로 조제분유를 먹이는 것이 아기의 건강을 위해 더 바람직하다.	
	()
5.	생후 6개월이 되면 가능한 한 빨리 모유수유를 중단하는 것이 좋다()
6.	이유보충식으로 생후 4-6개월경에 쌀을 갈아 조리한 미음을 이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
7.	이유보충식 진행에서 달걀은 노른자보다 흰자를 먼저 주는 것이 좋다()
8.	이유보충식을 준비할 때에는 아기가 잘 먹도록 간을 적당히 하여 준다()
9.	이유보충식을 먹일 때 아기가 설사를 하거나 두드러기 반응을 보여도 곧 익숙해질 것이므로 계속	속
	주는 것이 좋다()
10	. 이유보충식을 먹일 때는 아기가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젖병에 넣어서 먹이는 것이 좋다.	
	()

영양플러스사업 - 영아(12개월이하) 보호자용 설문지 2 -

B. 다음의 사항에 대해 당신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단, 아직 이유식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안의 글을 보고 생각을 답해주세요

		1	2	3	4	5	6	0
	문 항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약간 아닌 편이 다	약간 그런 편이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해당 없음
1	모유수유를 하는 것이 모체와 아기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2	아기가 잠잘 때 젖(병)을 물고 자지 않도록 노력한다(노력할 것이다)							
3	시판 이유보충식 보다는 가정에서 만든 이유보충식을 먹이려고 노력한다(노력할 것이다)							
4	이유보충식으로 새로운 음식을 시도할 때는 한번에 한 가지씩 소량을 주어 반응을 살피려고 노력한다(노력할 것이다)							
5	아기의 성장 단계에 맞추어 이유보충식을 진행하려고 노력한다(노력할 것이다)							
6	이유보충식을 젖병이 아닌 숟가락으로 먹이도록 노력한다(노력할 것이다)							
7	음식을 흘리더라도 아기가 스스로 먹도록 격려한다(격려할 것이다)							
8	이유보충식에 간을 하지 않는다(않을 것이다)							
9	이유보충식을 만들 때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을 사용하여 위생적으로 조리하려고 노력한다(노력할 것이다)							
10	이유기부터 다양한 식품을 소개하여 편식을 예방하고 좋은 식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일생의 건강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서식 4-2. 유아보호자용 영양지식 및 태도 설문지(필수)

영양플러스사업 - 유아(만1세-만6세미만) 보호자용 설문지1 -

시·도명	보건소명

대상자 성명 :			(연령	세)
응답자 성명 :		(대상기	사와의 관계)
조 사 일 :	년	월	일(사업참여 전	, 중, 종료)
조 사 원 :			서명	

- ·※ 이 설문을 작성하기 전까지 교육에 참여한 횟수는 _______회
- ※ 사업 중과 사업 후의 응답자는 사업 전의 응답자와 동일인이어야 함.
- ※ 설문지 1을 수거한 후에 설문지 2로 진행합니다.

A. 다음의 사항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O,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X로 대답해 주십시오.
1. 어린이의 경우 세 끼 식사만 잘 먹으면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
2. 성장기 어린이에게는 곡류와 채소보다는 고기나 생선 위주의 식사가 필요하다.
()
3. 어린이의 성장과 건강을 위해 하루에 우유를 두 컵 이상은 마셔야 한다()
4. 어린이의 적절한 성장을 위해 매일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중의 적어도 한 가지는 먹이는 것이
좋다
5. 채소와 과일은 모두 같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종류를 먹일 필요는 없다
()
6. 과자와 음료수는 어린이의 간식으로 적당한 식품이다()
7. 어린이의 빈혈 예방을 위해 권장되는 식품은 살코기와 달걀 등이다()
8. 어린이가 끼니를 거르면 다음 끼니에 과식을 하게 되어 비만이 될 수도 있다()
9. 아토피성 피부염을 가진 아이들에게는 우유는 절대 주어서는 안 된다()
10. 성장기 어린이에게 건강한 뼈의 성장을 위해서는 철의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영양플러스사업 - 유아(만1세-만6세미만) 보호자용 설문지2 -

B. 다음의 사항에 대해 당신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0
	문 항	전혀 아니 다	아니다	약간 아닌 편이 다	약간 그런 편이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해당 없음
1	어린 시절에 좋은 식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아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2	아이가 여러 가지 채소를 매끼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							
3	아이가 우유를 하루 2컵 이상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한다.							
4	아이의 매 끼 식사에 곡류, 채소류 및 단백질 식품(고기, 생선, 달걀, 콩제품)을 포함시켜 균형 있는 식사가 되도록 배려한다.							
5	아이가 가능한 한 밖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권하는 편이다.							
6	아이가 세 끼 식사와 간식을 규칙적으로 하도록 배려한다.							
7	아이가 다양한 음식을 접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8	아이의 간식으로 과자류나 탄산음료, 가당음료 보다는 과일이나 우유와 같은 영양소가 풍부한 간식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							
9	아이가 식구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10	식사 전에 아이가 손을 깨끗이 씻도록 가르친다.							

서식 4-3. 임산부용 영양지식 및 태도 설문지(필수)

영양플러스사업 - 임산부용 설문지 1-

시·도명	보건소명	

대상자 성명 :			(연령	세)
응답자 성명 :		((대상자와의 관계)
조 사 일 :	년	월	일(사업참여 전, 중, 종료)	
조 사 원 :			서명	

- ※ 이 설문을 작성하기 전까지 교육에 참여한 횟수는? ______회
- ※ 사업 중과 사업 후의 응답자는 사업 전의 응답자와 동일인이어야 함.
- ※ 설문지 1을 수거한 후에 설문지 2로 진행합니다.

A. 다음의 사항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O,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X로 대답해 주십시오.	
1. 임신부에게 권장되는 칼슘의 양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루에 우유 1컵을 마시면 된다.	
()
2. 임신·수유부의 빈혈예방을 위해 권장되는 식품은 살코기와 달걀 등이다. ······()
3. 채소와 과일은 모두 같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한 두가지만 섭취하면 된다()
4. 임신 중 1-2잔의 술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만 많이 마실 경우 유산이나 기형아 출산 등을 가져올	올
수 있다()
5. 엄마와 아기의 튼튼한 뼈와 치아를 위해서는 칼슘의 섭취가 중요하다()
6. 임신 중 적절한 체중 증가는 10-14kg 정도이다. ·····()
7. 임신 중 운동을 할 경우 유산의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로 피하여야 한다()
8. 모유 수유는 엄마의 체중 및 체형관리에는 방해가 되지만 아기의 건강에는 도움이 된다.	
)
9. 조제분유에는 모유보다 면역물질이 더 많이 들어있다()
10. 임신 중 적절한 양의 식사와 운동으로 적절한 체중증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임신중독증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영양플러스사업 - 임산부용 설문지 2 -

B. 다음의 사항에 대해 당신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0
	문 항	전혀 아니 다	아니다	약간 아닌 편이 다	약간 그런 편이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해당 없음
1	모유수유를 하는 것이 자신과 아기의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2	자신과 아기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려고 노력한다.							
3	하루에 우유를 3컵 이상 마시려고 노력한다.							
4	매끼 식사에 곡류, 채소류 및 단백질 식품(고기, 생선, 달걀, 콩제품)을 함께 섭취하여 균형 있는 식사가 되도록 노력한다.							
5	가능한 한 짠 음식을 피하고 싱겁게 먹으려고 노력한다.							
6	술을 절대로 마시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7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 홍차, 콜라 등을 적게 마시려고 노력한다.							
8	적당한 활동량을 유지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려고 노력한다.							
9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식품을 가능한 한 적게 먹으려고 노력한다.							
10	나는 끼니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도록 노력한다.							

서식 5. 만족도 조사 문항(필수)

(세 1 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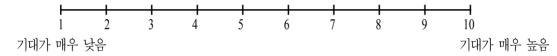
영양플러스사업

시·도명	보건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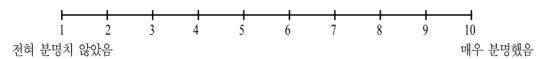
대상자 성명 :			(연령	세)
응답자 성명 :			(대상자와의 관계)
조 사 일 :	년	월	일 (사업참여 중	·, 종료)
조 사 원 :			서명	

※ 각 문항은 10점 만점으로 하여 1에서 10까지의 숫자 중 선택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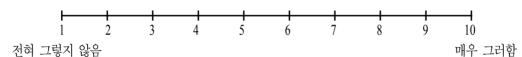
1. 사업에 참여하기 전, 사업의 전반적인 질이 어떠할 것이라고 기대하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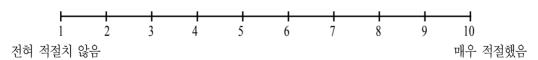
2. 본 사업의 수혜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대상자 선정이 분명한 기준에 의해 이루졌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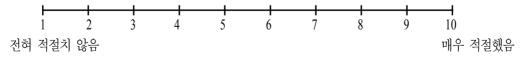
3. 본 사업의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사업에 참여되도록 배려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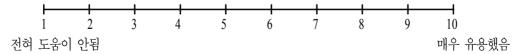
4. 보충식품의 공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충식품의 공급이 적절한 시간주기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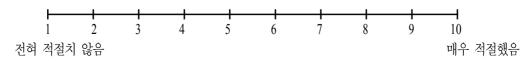
5 보충식품의 양과 내용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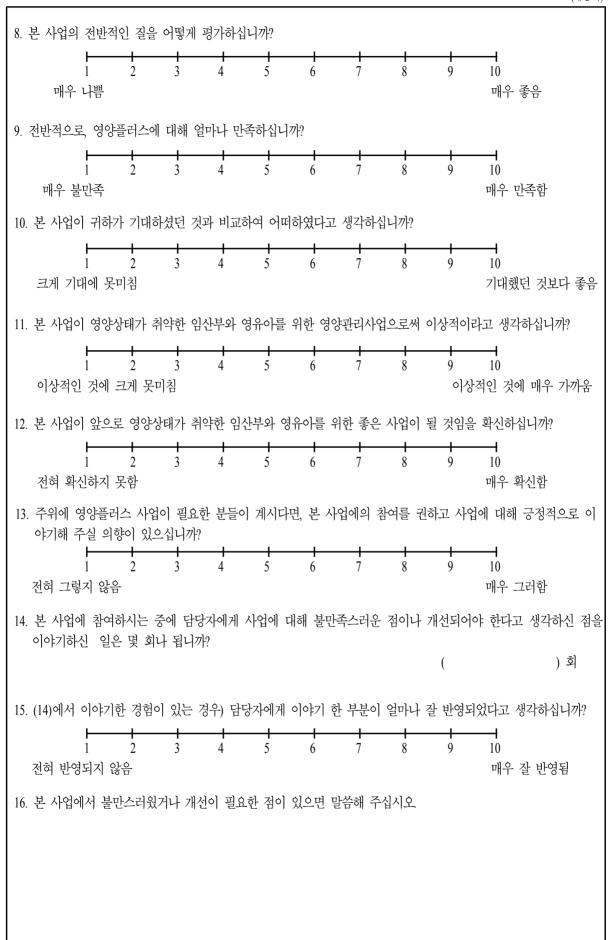
6. 영양교육의 내용이 얼마나 유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7. 영양교육의 방식이나 내용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2 쪽)



서식6 . 대상자 신청 관련 기타양식(선택)

영양플러스사업 대기자	접수승(신청자 년	한관용)
접수번호(대기자 접수 ID):	기존 대기자 수	음:명
이름:	□임신부 □출	산수유부 □영아 □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참여 신청에 감사드리며, 즉분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본 사업에서는 대기자 중자로 등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등록 가능한 시점이	- 영양위험도에 따른 정	해진 우선순위 순으로 대상
<유의사항>		
 대기기간 중 연령기준 등 대상 자격요건이 상속 대기기간이 끝나고 대상자 접수 시 소득심수 영양평가결과 영양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핀 	나와 영양평가를 실시 혀	내야 합니다.
신청일 : 20	신청자: 담당자:	(, , , , , , , , , , , , , , , , , , ,
0 0	○ 보 건 소 장	
~절취		
영양플러스사업 대기자	접수증 (담당자 .	보관용)
접수번호(대기자 접수 ID):	기존 대기자 수:	명
이름:	□임신부 □출산	수유부 □영아 □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참여 신청에 감사드리며, 즉-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본 사업에서는 대기자 중 자로 등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등록 가능한 시점이 <유의사항>	- 영양위험도에 따른 정	해진 우선순위 순으로 대상
<뉴의사양> 대기기간 중 연령기준 등 대상 자격요건이 상속 대기기간이 끝나고 대상자 접수 시 소득심원 영양평가 결과 영양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되었다. 	나와 영양평가를 실시하	내야 합니다.
신청일 : 20	신청자: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0 0	○ 보 건 소 장	
* 참여신청서 가구정보양식 등 첨부하여 보관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연계 요청서

※신청자는	를 굵은 선 안의	내용만 작성	합니다.						
시ㆍ도명	!			보건소망	1				
성명	※ 해당 가구 주	요 연락자		이주 예정	일		년	월	일
연락처 (집 또는 직장)				휴대폰		(대표가구원의			
연계 사유)			
연계 대신) 가구원								
가구원번호	이름	대	상자구분	식품패키지 처방	자부딩	남여부	최초 서비스개시	. 일	총참여 기간
01		□임신부(P) □영아(I)	□출산수유부(W) □유아(C)						
02		□임신부(P) □영아(I)	□출산수유부(W) □유아(C)						
03		□임신부(P) □영아(I)	□출산수유부(W) □유아(C)						
04		□임신부(P) □영아(I)	□출산수유부(W) □유아(C)						
	특이사항								
대상자 연계 요청 위 대상자가 귀 보건소에서 우리 지역으로 이주함에 따라 영양플러스사업 연계를 위해 아래 자료 송부를 요청하오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가구 및 대상자 기본 정보 대상자 영양평가 및 구분변화 기록 대상자 영양 교육 및 상담 기록 영양지식 및 태도 조사지 등 설문조사내용 기타 대상자 관련 기록 ○ ○ ○ 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 담당자 : 전 화 :									
	○ ○ ○ 보건소장								

실제 거주	지 확인서
	대상자 세대주
본인은 위 가구의 실제 거주지가 (주소 임을 확인합니다. 본인에 의한 위 가구의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격 여부를 판정하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연락처)(실거주 확인자)(인) 담당자(인)

서식 7. 대상자 관리 양식(선택)

대상자 개인 파일-영양평가 및 구분변화 기록

1. 대상자 영양평가 기록

이름		대상자 ID					
구분	\square P \square W \square I \square C	구분변화 후 대상자 구분	□Р	\square W	□ I	□С	

판정 일자	측정 항목	신장	체중	ВМІ	신장별체중	헤모글로빈	식생활위험	영양평가목적
	측정치	cm	kg			g/dl		□초기대상자판정
월	백분위수							□자격재판정 □사업중평가
일	영양의학적 위험	□위험 □비위험	□위험 □비위험	□위험 □비위험	□위험 □비위험	□위험 □비위험	□위험 □비위험	□사업종료시평가
0.1	측정치	cm	kg			g/dl		□자격재판정
월	백분위수							□사업중평가
일	영양의학적 위험	□위험 □비위험	□위험 □비위험	□위험 □비위험	□위험 □비위험	□위험 □비위험	□위험 □비위험	□사업종료시평가
	측정치	cm	kg			g/dl		□자격재판정
월	백분위수							□사업중평가
일	영양의학적 위험	□위험 □비위험	□위험 □비위험	□위험 □비위험	□위험 □비위험	□위험 □비위험	□위험 □비위험	□사업종료시평가

[※] 판정기준은 지침 참고

2 대상자 구분변화 기록

Hd 7d L_LTT	변경	변경 후	디사그ㅂ	식품패키지		다음변경	다음변경
변경날짜	처리	자격분류	대상구분	패키지 번호	패키지 특이사항	예정일	예정사유
	□구분변화 □자격유지	□대상자			수유방법 :	월 일	
	□졸업	□졸업자			요청사항 :		□재평가
	□구분변화	□대상자			수유방법 :	월	□기간만료
	□자격유지 □졸업	□졸업자			요청사항 :	일	□구분변화 □재평가
	□구분변화 □자격유지	□대상자 □졸업자			수유방법 :	월 일	□구분변화
	□졸업	□= 뮤√[요청사항 :		□재평가

	개인별	보충식품 패키지 L	내역 카드(대상자 배포용)	
▷ 성명 :		_ (남, 여)	▷ ID :	
▷ 대상구분 :			▷ 보충식품 패키지 :	
▷ 대상자 특이사형	} :			
패키지 번호	해당 패키지(√)]	패키지 구성	식품 변경사항
1 (0-5개월)		□ 조제분유		
2 (6-12개월)			□ 감자 □ 달걀 □ 조제분유 □ 이유식	
3 (유아)] 감자·국수·고구마 □ 달걀 참치통조림·붉은팥 □ 김 □ 우유	
4 (임신부/혼합수유부)] 감자·국수·고구마 □ 달걀 참치통조림·붉은팥 □ 김 □ 우유	
4-2 (출산 후 7-12개월 까지 혼합수유부)		□ 우유		
5 (출산부)		□ 검정콩·씨리얼·] 감자·국수·고구마 □ 달걀 참치통조림·붉은팥 □ 김 □ 우유 □ 미역	
6(완전모유수유부)		□ 검정콩·씨리얼·불 □ 김 □ 우위 □ 참치통조림	□ 귤·오렌지주스	
	보충식품	변경(제외) 동	* F의서(담당자 보관용)	
이름 :		(남, 여)	ID:	
대상자 유형 :			식품패키지 :	
본인은 귀 보건소가 시행하는 영양플러스사업에서 제공받는 보충식품패키지 중 식품의 일부를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또는 제외) 하도록 협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식품 변경(제외) 1	내용 :			
식품 변경(제외) /	사유 :			
			대상자(보호자)	(인)
			rlrləl	(A)

영양플러스사업 영양교육 및 상담기록 [담당자용]

성명:	(남, 여)	ID :	
◇ 다른 영양교육 프로그① 현재 참여 중 ②◇ 참여하신 영양교육 프) 과거에 참여하였으니	한 현재는 참여하지 않음	③ 참여한 적 없음

교육일자	장소	교육 및 상담 내용	단체교육 실시여부	영양상담 실시여부	장소

영양플러스사업 상담일지[담당자용]

	상담 일자 :		. ▷ 상담지	}:	
▷	성명:	(남, 여)	▷ ID : _		·
	대상구분 : 영양평가 결과:		▷ 보충스	· 금패키지:	
	체중(kg)	신장(cm)	체질량지수(BMI)	혈중혜모글로빈 등	동도(g/ dl)
▷ 주.	요 상담내용:				
0 3	으요 영양 문제 :				
ж č	담용 check list 활용				
◎ ·?	상담 내용 :				
© co	omment :				
© ?	}담 결과 :				
▶ 교	육 처방 :		▶ 다음	상담 및 교육 일자:	

영양플러스사업 상담 처방 카드(대상자 배포용)

▷ 상담 일자 :		. ▷ 상담지	÷:
▷ 성명 :	(남, 여)	▷ ID : _	
▷ 대상구분 :▷ 영양평가 결과 :		▷ 보충식	품패키지 :
체중(kg)	신장(cm)	체질량지수(BMI)	혈중헤모글로빈 농도(g/dl)
◎ 주요 영양 문제 :			
◎ 상담 실천 목표 :			
◎ 상담 실천 내용 :			
▶ 교육 처방 :		▶ 다음 상담	및 교육 일자:

가정방문

영양플러스사업 영양교육 및 상담 처방 (대상자 배포용)

▷ 대상구분 :		▷ 보충식품패키지 :	▷ 보충식품패키지 :			
▷ 대상자	▷ 대상자 특이사항 :					
구분	일자	내용	장소			
소그룹/ 단체교육						
개인상담						

영양플러스사업 방문교육 (개인화일용)

가구띠		대상자대표 성명	
기구주성명		대상자대표 주민등록번호	
주소			
집전화번호		핸드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예/아니오	자부담대상	예/아니오

※ 대상자대표가 아래 대상구분에 해당되는 경우 기본정보

(영유아) 보호자명	(영아/출산수유부) 수유방법	완전모유수유/혼합수유/조제유
(임신부) 임신주수	(출산수유부) 출산후개월수	

가족 중 영양플러스사업 수혜자					
	ID	성명	대상구분	보충식품패키지명	연령
1					
2					
3					
4					

대상구분변경 및 패키지 구분변경기록

판정일	대상재D	대상구분	보충식품패키지	기타사항

영양플러스사업 방문교육 (식품보관 및 이용상황 기록지)			
가구ID			
대표가구원 성명		대표가구원ID	

식품명	가구 해당식품	주요확인사항	보관상황				
			양호	불량	불량사유	규칙적섭취	불규칙격
분유	○ , ×	개봉 후 사용기간					
ETT		기타					
쌀()	O,×	보관장소					
현미() 보리()		기타					
	O,×	냉장보관여부					
당근() 애호박()		신선도유지					
		기타					
	O,×	냉장보관여부					
애호박		신선도유지					
		기타					
71-1/	O,×	보관장소					
감자() 고구마()		신선도유지					
		기타					
	O,×	냉장보관여부					
달걀		유통기한					
		기타					
검정콩()	O,×	개봉 후 보관방법					
붉은 팥()		기타					

NEG	가구 해당식품	ふ のおいけだ		보괸			
식품명		주요확인사항	양호	불량	불량사유	규칙적섭취	불규칙?
김	○ , ×	개봉 후 보관방법					
	, , , ,	기타					
		명균우유 : 개봉 전 그늘진 서늘한 곳 보관 멸균우유					
우유	\bigcirc , \times	: 개봉 후 냉장보관					
		시유: 냉장보관					
		유통기한					
		기타					
미역	○ , ×	개봉 후 보관방법					
		기타					
오렌지주스	O , ×	개봉 후 냉장방법					
		기타					
	O , ×	개봉 후 보관용기					
참치통조림		개봉 후 냉장보관					
		기타 개봉 후 보관방법					
국수	\bigcirc , $ imes$	기타			_		
		개봉 후 보관방법					
씨리얼	\bigcirc , $ imes$	기타					
		냉장보관여부					
귤	○ , ×	신선도 유지					
_		기타					
		개봉 후 사용기간					
시판이유식	O , ×	기타			-		
				1	1		1

종합의견	추가방문필요 / 추가방문필요없음	영양사 추가상담	상담필요 / -
------	-------------------	----------	----------

시도명:	보건소명:	대상자명:	ID:
<보건소 보관>			
	대싱	가 졸업(퇴록) 혹	확인서
			러스사업의 대상자로 참여하여 보충 이유로 졸업(퇴록)하게 됨을 확인
참여시작일	<u>]</u> :	퇴록일:	
□ 영잉 □ 기긴 □ 이시 □ 소득 □ 영잉 □ 본인	· ·수준 향상 ፡교육 참여 및 보충식		
		년 월 일	
		: (/ : (/	
	0	○ ○ 보 건 소 장	

졸 업 장

이 름:

위 대상자는 영양플러스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 영양상태가 향상되어 졸업하게 됨을 축하드리며 이에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 영양상태 주요 변화 내용

사업전	사업후

년 월 일

○○보건소장

서식 8. 사업관리 양식 (선택)

영양플러스사업 식품배달 확인증(가구용)

식품 배달 확인증(1차)

대상자 성명	:
배달장소 :	
전화번호 :	

	보충식품패키지								
1 (0-5개월)	2 (6-12개월)	3 (1-5세)	4 (임신.수유부)	4-2 (출산 후 7-12개월까지 흔합수유부)	5 (출산부)	6 (완전모유 수유부)			
□ 조제분유 배달양:	□ 조제분유 배달양: □ 쌀 □ 달걀 □ 당근 /애호박 □ 감자 □ 이유식 배달양:	쌀 /보리 /현미 감자 /국수 /고구마 검정콩 /참치통조림 /불은팥 /씨리얼 김 달걀 아호박	쌀 /보리 /현미 감자 국수 /고구마 검정콩 /참치통조림 /불은팥 /씨리얼 □ 김 □ 막걀 □ 우유 □ 당근 /애호박	□ 予命	쌀 /보리 /현미 감자 /국수 /고구마 검정콩 /참치통조림 /불은팥 /씨리얼 김 □ 다역 □ 당근 /애호박	쌀 /보리 /현미 감자 /조수 /고구마 검정콩 /붉은팥 /씨리얼 김 의미역 말걀 당근 참치통조림 글 /오렌지쥬스			

	년	월	일
배달자 명 :			확인
수령자 명 :			확인
(수혜대상자와의 관	계:)

영양플러스사업 식품배달 확인증(가구용)

식품 배달 확인증(2차)

대상자 성명	:	
배달장소 :		
전화번호 :		

	보충식품패키지								
1 (0-5개월)	2 (6-12개월)	3 (1-5세)	4 (임신.수유부)	4-2 (출산 후 7-12개월까지 흔합수유부)	5 (출산부)	6 (완전모유 수유부)			
□ 하 아 하 집	□ 당근 /애호박 □ 감자	□ 당근 /애호박 □ 감자 /고구마 □ 달걀 □ 우유	□ 당근 /애호박 □ 감자 /고구마 □ 달걀 □ 우유	□ 우 유	□ 당근 /애호박□ 감자 /고구마□ 달걀□ 우유	□ 당근 /애호박 □ 감자 /고구마 □ 달걀 □ 우유			

			년	ᄋᆋ	일
	비	H달자 명 :			확인
	수	≐령자 명 :			확인
	(=	- 혜대상자와의	관계 :)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공급 수령확인증(전체리스트용)

년 월 일

수령인		니호기포에다나 1	보충식품	보충식품패키지	확인	
번호	대표가구원 가구원		보충식품배달장소	패키지	특이사항	서명

IX. 실적보고 양식

■ 시·도 실적보고서

- 1. 시 도별 예산집행 현황
- 2. 시 도별 자문위원 현황
- 3. 자문위원회 실시 현황
- 4. 사업지원 및 지도 감독 실시 현황

■ 시·군·구 실적보고서

- 1. 보건소 사업 담당 인력현황 및 정보
- 2. 예산 집행 현황
- 3. 수혜대상자 현황
- 4. 소득수준별 수혜대상자 현황
- 자부담대상자수
- 6. 보충식품 수혜대상자수 및 패키지별 단가
- 7. 월별 식품제공 현황
- 8. 1인당 패키지별 식품제공 수량
- 9. 업체 계약 정보
- 10. 영양교육을 위한 분반내용
- 11. 연간 영양교육 계획
- 12. 다음 월 영양교육 일정계획
- 13. 보건소 월별 영양교육 실시 현황
- 13-1. 보건소 월별 영양상담 실시 현황
- 14. 홍보시행 사항(해당 사항에 ㅇ표시)
- 15. **문제점 및 건의사항**

※ 엑셀 파일 서식 제공

■ 시・도 실적보고서

1. 시·도별 예산집행 현황

시도명 기준		일 항목		·민건강증진기 국고보조금50			지방비 확보액 (지방비50%)			지방비 확보액 (자체예산)	
	기준일		예산액	기금 집행액	집행 잔액	지방비 확보액	지방비 집행액	집행 잔액	지방비 확보액	지방비 집행액	
			(A)	(B)	C=A-B	(D)	(E)	F=D-E	(G)	(H)	l=
		총합계액									
		지역자문진 운영비									
		자문회의비									
		모니터링비									
		사업홍보비									
		여비									
		기타									

2. 시 ·도별 자문위원 현황

시·도명	소속	성명	주요 자문내용	Д

3	자문위	워히	신시	혀화
U.	7 Y 1 1			

일자	장소	참석인원(명)	주요내용

4. 사업지원 및 지도·감독 실시 현황

시·도명	보건소명	일자	참석자	지원 및 지

■ 시・군・구 실적보고서

1. 보건소 사업 담당 인력현황 및 정보

시. 드급	시·도명 보건소명	이름	사업 담당	직위	세부	영양사 여부	참여율	기금보	조인력	채용일			
 \dagger{\alpha_1.\pi_2}		VI 🗖		~i m	직급	(○,X)	(%)	인력	인원	(계약직에	사무실		
			부서			((),)	(/6)		22	한함)	ΛΙΤΕ		

2. 예산 집행 현황

					국	민건강증진	기금	지	방비 확도	브액	지	방비 확보액
		사업			(∃	국고보조금5	50%)	(지방비50%	6)	(자체예산)
시·도명	보건소명	참여	기준일	항목	예산액	기금	집행	지방비	지방비	집행	지방비	지방비
		시작 년도				집행액	잔액	확보액	집행액	잔액	확보액	집행액
					(A)	(B)	C=A-B	(D)	(E)	F=D-E	(G)	(H) I
				총								
				합계액							-	-
				보충								
				식품비								
				사업								
				운영비								
				인건비								
				교육비								
				기타								

3. 수혜대상자 현황

					현재까지	등록된 중	총 수혀						
					총등				상구분		÷0.70		현재 수
시·도명	보건소명	사업참여	2011 목표	월별	수혜대상	·자 수 T		등록수	-혜대성 T	자수	총외국인 등록자수	총퇴록자수	
VITE	포선도당	시작년도	대상자수	2 2	대상자수	가구수	영 아	유 아	임 신 부	출산 수유부	(누적수)	(누적수)	대상자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4. 소득수준별 수혜대상자 현황

				총 등록자 중 소득수준별 총등록자중 현재 수혀											
											총등록자				현재 수혀
					수혀	혜대상자 현	현황(누적	수)			소득수준팀	별		소	득수준별
		사업			임산부			영유아		수당	혜대상자함	현황		임산부	
		참여		(임신	· ,출산,수		((영아,유이			(합계)		(임선	· · · · · · · · · · · · · · · · · · ·	
시·도명	보건소명	 시작	월별		최저	최저		최저	최저		최저	최저		최저	최저
		년도		기초	생계비	생계비	기초	생계비	생계비	기초	생계비	생계비	기초	생계비	생계비
				생활	대비	대비	생활	대비	대비	생활	대비	대비	생활	대비	대비
				수급자	100	120	수급자	100	120	수급자	100	120-	수급자	100	120-
					-120%	-200%		-120%	-200%		-120%	200%		-120%	20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 자부담대상자수

		사업 참여		총 등록 수혜대상자 충	중 자부담 대상자 수		현재 수혜대상자 중 자
시·도명	보건소명	- 시작 년도	월별	임산부 (임신,출산,수유부)	영유아 (영아,유아)	합계	임산부 (임신,출산,수유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6. 보충식품 수혜대상자수 및 패키지별 단가

	보	사업		I					II							
시	_ - 건	참여	월		0174				이유스	니재료식품	공급		판이유식	공급		
도 명	건 소 명	A 어 시작 년도	超	구분	완전 모유 수유	혼합 수유	조제유	합 계	완전 모유 수유	혼합 수유	조제유	완전 모유 수유	혼합 수유	조제유	합 계	Ш
				인원수												
			1월	1인당 월단가	평균 단가			X								
				인원수												
			2월	1인당 월단가				X							X	
				인원수												
			3월	1인당												
				월단가												
			4 21	인원수												
			4월	1인당 월단가				X							\times	
				인원수												
			5월	1인당 월단가				X							X	
				인원수												
			6월	1인당 월단가				X							\times	
				인원수												
			7월	1인당												
				월단가				X								
				인원수												
			8월	1인당 월단가				X							X	
				인원수												
			9월	1인당												
				월단가				X								
			10	인원수												
			월	1인당 월단가				X								
			11	인원수												
			월	1인당				X								
				월단가 인원수												
			12 월	1인당												
				월단가												

7. 월별 식품제공 현황

시·도명	보건소명	번호	식품명	회사명/지역명	제품명	규격	단가(원)
		1	분유				
		2	분유				
		3	분유				
		4	이유식				
		5	이유식				
		6	이유식				
		7	쌀				
		8	현미				
		9	보리				
		10	감자				
		11	고구마				
		12	달걀				
		13	당근				
		14	애호박				
		15	우유				
		16	두유				
		17	검정콩				
		18	붉은 팥				
		19	김				
		20	미역				
		21	참치통조림				
		22	오렌지주스				
		23	국수				
		24	씨리얼				
		25	귤				
		26	배달료	배달료 책정 유형	ы	l송건별 가구당	

8. 1인당 보충식품패키지별 식품제공 수량

						1 (이다 ㅂㅊ	·식품패키지		프 ᅰ고 스	~라/레기포	1 Ш∙л⊦т	데프이의!	버ィ
							13 IS	· 금퍼게스	45 A.	<u>품 제중 T</u> 	-당(패기^	12.47	에 古의 결국	=
시·도명	보건	번호	식품명	단위	완전			이유스	 재료식품		시핀	l이유식 등	 공급	
1 ± 0	소명			Ţ	모유 수유	혼합 수유	조제유	완전 모유수유	혼합 수유	조제유	완전 모유수유	혼합 수유	조제유	
		1	분유	g										
		2	시판이유식	g										
		3	쌀	g										
		4	현미	g										
		5	보리	g										
		6	감자	g										
		7	고구마	g										
		8	달걀	개										
		9	당근	g										
		10	애호박	g										
		11	수	ml										
		12	두유	ml										
		13	검정콩	g										
		14	붉은 팥	g										
		15	김	g										
		16	미역	g										
		17	참치통조림	g										
		18	오렌지주스	ml										
		19	국수	g										
		20	씨리얼	g										
		21	귤	개										

9. 업체 계약 정보

시·도명	보건소명	업체선정 진행상황	업체명	계약 개시일	계약 종료일	총계약 기간	보충식품 공급 개시일
		업체선정 못함/ 계약진행중/ 계약완료					

10. 영양교육을 위한 분반내용

시·도명	보건소명	교육반 이름	교육반 설명	

11. 연간 영양교육 계획

시·도명	보건소명	월	내 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2. 다음 월(실적보고 제출일 기준 다음월) 영양교육 일정계획

주	날짜	월	화	수	목	금	
1주							
' -							
2주							
3주							
37							
4주							
4 +							
5주							
7	기타사항						

13. 보건소 월별 영양교육 실시 현황

시·도명	보건소명	교육 형태	월별	교육 횟수	대상자수	가구수	대상구분 (전대상자/영아/유아/ 임신부/출산수유부)	
		영양교육 완료자 합계					_	
		단체교육						
		개인상담						
		가정방문교육						
		가정방문 - 보충식품 배송시 동행						
		우편						
		전화						
		SMS						
		기타 (카페, 홈페이지 게재)						

13-1. 보건소 월별 영양상담 실시 현황(상담 사례)

시·도명	보건소명	다문화 가정여부	월별	대상구분	분류	연령	사례 (대상자의 상태 또는 영양문제	상담 니

14. 홍보시행 사항(해당사항에 ○표시)

		내 용								
시·도명	보건소명	기초생활수급자 개별연락	홈페이지	신문	방송	포스터	현수막	리플렛	타사업 에서의 소개	

^{*} 홍보자료 이미지 첨부

15. 문제점 및 건의사항(사업운영 관련 특이사항, 질의 및 건의사항)

시·도명	보건소명	사업 운영의 문제점	특이 진행사항	건의사항